

2014년도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 정기학술대회

-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

2014년 8월 29일

Property-ization: The Process by which Financial Corporate Power and its money creation mechanism have risen -----	김종철
정부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상호작용 관계가 성장경로에 미치는 효과: 포스트 케인지언 거시동학모형 분석 -----	고민창/이상헌
칼레츠키언 투자이론 : 화폐·금융 변수의 도입 -----	조복현
피케티의 새로운 점과 오래된 점: 사상/이론사적인 조망 -----	홍훈
지니계수의 확장 및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 원인 분석 ---	김태환
신고전적 자유주의: 하이에크와 롤즈의 비판적 종합? -----	조필규/황재홍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비율 -----	류동민/주상영
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비판 -----	김공희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	서환주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	홍장표

한/국/사/회/경/제/학/회

Korea Social & Economic Studies Association

2014년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 정기학술대회 일정

■주제: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일시: 2014년 8월 29일(금) 오전 10시~ 오후 6시 30분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202호

오전 9:30~10:00: 등록

오전 10:00~10:10: 개회사 및 인사말

제1부 자본주의 금융체계와 경제성장 (오전 10:10~12:30)

사회자: 김정주(한양대)

발표주제: **Property-ization**: The Process by which Financial Corporate Power and its money creation mechanism have risen

발표자: 김종철(美콜럼비아대)

토론자: 미정

발표주제: 美연준의 기준금리체계 변경 계획: 현안과 가려진 쟁점

발표자: 송종운(경상대)

토론자: 홍수완(감사원)

발표주제: 정부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상호작용 관계가 성장경로에 미치는 효과: 포스트 케인지언 거시동학모형 분석

발표자: 고민창(원광대)/ 이상현(고려대)

토론자: 민병길(경기개발연구원)

발표주제: 칼레츠키언 투자이론 : 화폐·금융 변수의 도입

발표자: 조복현(한밭대)

토론자: 이상현(고려대)

오후 12:30~2:00 점심 및 휴식

제2부 사회적 불평등과 새로운 경제사상의 모색 (오후 2:00~3:40)

사회자: 박만섭(고려대)

발표주제: 피케티의 새로운 점과 오래된 점: 사상/이론사적인 조망

발표자: 홍훈(연세대)

토론자: 김공회(당인리정책발전연구소)

발표주제: 지니계수의 확장 및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 원인 분석

발표자: 김태환(연세대)

토론자: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

발표주제: 신고전적 자유주의: 하이에크와 롤즈의 비판적 종합?

발표자: 조필규(한밭대)/황재홍(목원대)

토론자: 성장원(고려대, 철학)

오후 3:40~4:00: 휴식

제3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성장체제의 전환 (오후 4:00~6:30)

사회자: 이채연(전남대)

발표주제: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비율

발표자: 류동민(충남대)/주상영(건국대)

토론자: 박승호(경상대)

발표주제: 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비판

발표자: 김공회(당인리정책발전연구소)

토론자: 이정구(경상대)

발표주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발표자: 서환주(한양대)

토론자: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주제: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발표자: 홍장표(부경대)

토론자: 유철규(성공회대)

칼레츠키언 투자이론 : 화폐·금융변수의 도입

조복현(한밭대)

국문초록

칼레츠키는 화폐 및 금융요소가 투자결정과 지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또한 이자율이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에 앞서 은행제도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부채가 증가할수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험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이론을 전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버리고 실제이윤과 저축과 같은 요소로 대체했다. 따라서 칼레츠키의 투자이론에는 화폐 및 금융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가 무시했던 화폐 및 금융적 요소를 다시 포함하는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결정과 경기순환 이론에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하게 되면, 칼레츠키가 추구했던 자동적인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황의 말에 발생하는 불규칙적이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금융위기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은 칼레츠키언 성장모형에서의 경기순환과 성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도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 Kalecki, investment theory, financial crisis, business cycle

JEL Code: E3, E5, G1

I. 머리말

칼레츠키는 투자결정과 조달, 그리고 경기순환 과정을 설명하면서 화폐 및 금융 변수를 자주 언급했다. 그는 투자함수와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자율, 은행의 대출의지, 위험 증가, 기업가 자본 등의 화폐와 금융변수를 고려했다. 그렇지만, 딘스키(Dymski)가 주장하듯이, “칼레츠키의 성숙한 저작 속에서는 화폐적 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저작 속에 그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들을 아주 인색하게 다루고 있다” (Dymski, 1996). 따라서 “칼레츠키는 화폐 및 금융시스템의 체계적 분석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Sawyer, 2001)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칼레츠키는 여러 이유로 인해 투자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화폐 및 금융변수를 무시하고 제쳐놓았다.

이 논문은 칼레츠키가 투자이론 및 경기순환 메커니즘 설명에서 무시했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다시 복원하여 새롭게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가 이들 화폐 및 금융변수를 무시했던 이유는 투자지출의 자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기변동의 상대적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였다 (Kalecki, 1990, p. 66). 그러나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한칼레츠키의 투자이론이 경기순환의 규칙성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론은 경기순환의 붐과 붐괴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기업의 과도한 투자, 과도한 투자조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나친 부채, 그에 따른 투자의 감소와 이윤의 저하,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부채규모가 큰 기업의 파산과 전반적인 금융위기 등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칼레츠키의 투자결정함수 및 경기순환 메커니즘 설명에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해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함으로써 과도한 투자와 지나친 부채의 형성과 그 결과 나타나는 기업의 파산과 금융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칼레츠키가 그의 처음의 투자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명에서 화폐 및 금융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했는지 추적한다. 제3절에서는 칼레츠키의 투자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 발전과정에서 그가 제거했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다시 복원하여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제 4절에서는 이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과 경제의 지속적 팽창 조건을 이용하여 경기순환과정에서 투자결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팽창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경기가 어떻게 전화하는지의 그 메커니즘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파산과 금융위기, 그리고 경기침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II. 칼레츠키 투자이론의 발전과 화폐·금융 변수의 제거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결정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논의 과정에서 은행제도의 대출의지, 단기 및 장기 이자율, 위험 증가, 기업가 자본 등의 화폐 및 금융변수를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경기변동의 상대적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Kalecki, 1990, p. 66), 이들 요소를 버리고, 실질이윤과 고정자본 등의 실질변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의 변동은 “기본적 요소들의 순환적 변화에 의해 모두 결정된다”(전제서, p. 66) 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로페즈와 모트(Lopez and Mot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칼레츠키는 맑시스트 전통 - 경제학은 ‘자본주의 운동의 내적 법칙’을 설명해야만 한다고 하는 전통- 내에서 자라왔다. ... 그는 왜 자본주의 경제가 확장적 재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장기 성장이 추세 주위의 주기적 운동과 함께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싶어 했다” (Lopez and Mott, 1999). 우리는 이 절에서 칼레츠키가 처음에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했으며, 그가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왜 그것들을 제거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1. 은행제도와 이자율

칼레츠키는 1932년 논문에서 경기순환은 투자활동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자증가, 특히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증가는 ‘은행제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신용인플레이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Kalecki, 1990, p. 148). 자본가는 번영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의 현재이윤으로부터 소비지출을 빼고 난 저축금액보다 더 큰 투자지출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활동은 이전의 단순히 이윤이 아니라, 투자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번영기에는 투자의 기대수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칼레츠키는 이 경우에 저축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투자자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화폐창출에 의해 조달된다고 주장한다. 상업은행은 자본가의 추가적인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며 그들의 감소된 준비금은 중앙은행에 대한 재할인 수요의 증대를 통해 보충한다는 것이다.¹⁾ 상업은행은 또한 자본가의 투자의사 결정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대출이자율을 낮추어 신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²⁾ 따라서 칼레츠키는 “신용 인플레이션 없이는 투자활동의 변동도 없고, 따라서 주요한 경기변동도 없다. 경기변동은 신용 인플레이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Kalecki, 1990, p. 148)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신용수요를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대출이자율을 낮출 수도 높일 수도 있는, 또 이를 통해 투자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제

1) 이와 관련해 칼레츠키는 기업가가 그들의 신용을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Kalecki, 1990, p. 151), 이는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러한 직접 조달이 가능했던 것 같다.

2) 물론, 칼레츠키는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자율 보다는 투자의 기대수익성이 보다 더 결정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황기에는 더욱 그렇다. 공황기에는 기대수익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투자의사를 결정하게 하는데 유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무시했다. 칼레츠키는 1933년 논문에서는, 은행제도를 통한 투자조달과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의 정상적 플로우(normal flow)와 생산량의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의 추가적 플로우(additional flow) 사이를 구분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전자의 경우에는, 자본가가 추가적인 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어떤 자본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투자를 위해 그의 예금 계정으로부터 인출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빌릴 때, 다른 자본가는 같은 기간 동안 위의 자본가가 투자를 위해 지출한 것과 같은 금액을 얻는다. 그리고 이 자본가는 그 금액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정에 입금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자본가의 지출은 다른 자본가의 이윤으로 전환되어 이 이윤이 다시 은행에 예금의 형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Kalecki, 1990, p. 80). 그렇게 되면, 자본가 전체의 관점에서 또는 은행제도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부채나 추가적인 신용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칼레츠키는 1935년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화폐시장의 기술적 측면, 즉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변화를 무시한다면, 이러한 지출은 ‘스스로 조달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순환은 스스로 종결될 것이다” (Kalecki, 1990, p. 137). 여기서 은행제도는, 자본가의 신용수요에 대해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수동적이고 수용적일 뿐이다.³⁾ 칼레츠키는 이러한 투자지출과 은행에 대한 예금 또는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화폐의 정상적 플로우를 고려함으로써, 그의 투자이론과 경기순환 설명에서 은행제도의 적극적 역할을 제거한 것이다.⁴⁾

그러나 두 번째 화폐 플로우, 즉 칼레츠키가 화폐시장의 기술적 측면으로 고려했던 화폐 플로우는 은행제도를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용공급의 통제자로 만든다. 은행제도는 그들의 재무상태(balance sheet)나 대출의지에 따라 신용공급의 제

3) 칼레츠키의 이러한 결론은 그의 화폐경제학이 독일 화폐이론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프로우스키(Toporowski)는 “독일 화폐이론의 전통이 칼레츠키로 하여금 자본가의 지출이 경제의 화폐유통을 결정하며, 신용과 화폐정책은 단순히 은행제도의 수지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과 화폐정책이 화폐의 유통(량)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은행제도는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4) 이 문제와 관련해, 아시마코풀러스(Asimakopoulous, 1983)는 승수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투자주문이 스스로 조달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칼레츠키의 순환이 스스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은행신용을 통해 투자조달이 이루어질 때 승수의 작동이 완전하게 일어나고 또 처음의 신용과 동일한 금액의 은행 채무 상환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칼레츠키는 은행제도의 유통적 포지션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승수의 완전한 작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주목을 기울이지 않았다” (Asimakopoulous, 1983, pp. 455-456). 그러나 크레겔(Kregel, 1989)은 이러한 아시마코풀러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만약 부채와 신용이 자본가 계급 내에서 서로 상쇄된다면, 소득이 또한 그 건설기간 동안에 자본가 계급 내에서 발생한다. 즉, 칼레츠키 승수의 작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필요하다. 그것은 특정 기간 내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화폐도 시간도 불필요하다” (Kregel, 1989, p. 197). 이러한 아시마코풀러스와 크레겔 사이의 논의에 대해 메조리(Messori, 1991)는 자금조달의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면서 논의에 개입한다. 즉, 자금조달에는 투자조달과 생산조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자본계 수요 증가에 사용하기 위한 화폐플로우의 조달을 말하며, 후자는 운영자본의 구매에 필요한 화폐신대의 조달을 의미한다. 이어서 메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칼레츠키는 투자조달에만 집중함으로써 생산조달은 경시했다”. 그리고 아시마코풀러스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케인 시언 승수의 완전한 작동에 필요한 시간간격은 칼레츠키의 조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Messori, 1991, p. 312).

공 여부나 크기를 결정한다. 칼레츠키가 1932년 논문에서 언급했던 신용 수요의 수용을 통해 발생하는 신용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이 화폐 플로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화폐 플로우와 관련해, 칼레츠키는 추가적 화폐 플로우를 불러 일으키는 신용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 첫 번째 이유는 투자주문(I)과 자본생산(A) 사이의 차이(I-A)를 위한 투자준비금이다. 자본재 생산을 위한 지출 A는 실현된 이윤의 형태로 은행에 되돌아오고,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 조달된다’. 그러나 I-A는 신용인플레이션에 의해 창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 이유는 총생산과 물가의 상승에 기인하는 유통화폐의 증가를 위한 것이다. 생산의 증가와 물가의 상승은 추가적인 유통화폐를 요구한다. 이러한 수요도 또한 은행제도의 신용인플레이션에 의해 이해 창출되어야만 한다 (Kalecki, 1990, pp. 80-81). 물론, 투자준비금과 유통화폐의 수요 증가는 은행계정의 일반예금으로부터 투자준비금과 유통화폐 항목의 특정 목적 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충족될 수도 있다. 즉, 추가적인 은행신용의 증가 없이 단지 기존 은행부채의 구성변화를 통해서 조달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자 준비금과 유통화폐는 은행제도의 신용 공급 팽창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한다.⁵⁾ 많은 경우에 투자 준비금과 유통화폐의 증가는 예금과 신용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을 수반한다. 경기상승기에 이자율은 상승하고, 경기하강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한다 (Kalecki, 1990, p. 97). 이렇게 되면, 은행제도의 신용창출에 대한 의지와 신용에 대한 이자율은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역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레츠키는 다음의 두 가지 전제 하에서 그의 투자이론을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 이들 요소들을 제거했다. 첫 번째 전제는 은행제도가 이자율을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함으로써 신용인플레이션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은행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함으로써 그에 반응한다. 그러나 그 이자율은 투자의 증가에 방해가 될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칼레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기상승의 전제조건은 이자율이 현금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서 너무 높게 상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Kalecki, 1990, p. 191). 두 번째 전제는 이자율은 경기순환을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고, 따라서 이자율은 총수익성에 비례하여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레츠키는 이자율을 총이윤의 증가함수로 간주했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투자결정 함수에서 총이윤으로 대체하여 제거할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자율을 수익성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조잡한 접근이라 할지라도,⁶⁾ 총수익성에 비해 이자율은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차적 중요성만을 갖는다” (Kalecki, 1990, pp. 97-98). 이러한 주장을 통해 칼레츠키는 이자율을 수익성의 근사 값으로 고려했으며, 또 수익

5) 칼레츠키는 이러한 두 번째의 신용인플레이션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신용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Kalecki, 1990, p. 97-98).

6) 칼레츠키가 이러한 전제를 조잡한 접근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이러한 전제에 대해 두 가지 가정을 했기 때문이다. 즉, 이자율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는 없다는 것이 그 가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성에 비해 이차적 중요성만을 갖는 변수로 고려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투자결정 함수에서 이자율 변수를 제거했다. 이러한 제거는 다음과 같이, 투자방정식 (1)로부터 식 (2)로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Kalecki, 1990, p. 97).

$$\frac{I}{K} = f\left(\frac{P}{K}, i\right) \dots\dots\dots (1)$$

$$\frac{I}{K} = f\left(\frac{P}{K}\right) \dots\dots\dots (2)$$

(여기서, I 는 투자, K 는 자본장비, P 는 이윤, i 는 이자율)

2.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

고전과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칼레츠키는 1937년의 논문에서 투자의 양을 최적으로 제한하고 결정하는 것은 한계이윤율의 감소가 아니라,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이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에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규모의 불경제와 불완전 경쟁 때문에 투자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이윤율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이와 다르게 생각했다. 먼저, 규모의 불경제는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공장이 최적 규모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증가 없이 여러 공장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계이윤율은 투자증가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는 불완전 경쟁 문제도 부정했는데, 불완전 경쟁은 어느 특정 분야에 투자되는 자본의 양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투자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분산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에 의해 투자 총량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Kalecki, 1990, p. 286-287).

이제, 칼레츠키는 고전과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위험 증가의 한계율이 투자되는 자본의 양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따라서 이것이 최적 투자자본의 양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위험 증가는 투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지불 후의 기업가 소득(entrepreneur's income)이 감소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손실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약 손실이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으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위험증가는 투자와 부채 증가에 수반하는 한 기업 또는 한 투자프로젝트의 파산 가능성의 위험이다. 이제 칼레츠키는 기업가에게 최적 이윤을 가져다주는 최적 자본량은 “한계이윤율이 이자율과 한계 위험증가율의 합계와 서로 같게 되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Kalecki, 1990, p. 288).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계 이윤율은 투입되는 자본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이자율 또한 투입되는 자본의 증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따라서 투자되어야 할 자본의 최적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위험 증가, 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한계 위험증가율이다.

칼레츠키는 최적 자본량의 결정에 있어서 위험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

것을 금융약정(financial commitment)과 관련시켰다. 기업이 지게 되는 위험부담은 총 금융약정 즉 과거와 현재의 약정총액의 크기에 비례한다. 사실 금융약정은 자본장비와 투자주문의 합계에서 기업가 자본을 뺀 크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본장비와 투자주문이 클수록, 기업가 자본이 작을수록 금융약정은 커진다. 그렇다면, 위험증가는 자본장비와 투자주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기업가 자본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어쨌든, 기업의 금융약정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부담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칼레츠키는 1939년에 발간된 『경기변동이론』(*The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에서 이러한 위험증가와 금융약정의 관계를 경기순환과 관련시켜 분석했다. 경기상승기에, 기업가 자본이 일정한 상태에서 투자주문과 고정자본 설비의 증가는 그 기업의 금융약정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그 기업이 지게 되는 위험부담도 증가시킨다. 그렇게 되면, 투자주문은 감소하고 경제는 경기하강으로 전환하게 된다.⁷⁾

그러나 1954년에 발간한 『경제동학이론』(*The Theory of Economic Dynamics*)에서, 칼레츠키는 위험증가의 개념을 기업가 자본으로 대체한다. 그곳에서 그는 기업가 자본을 기업규모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요소로 지적한다. 여기서 기업가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가리킨다. 1937년의 논문에서 그는 기업가 자본을 기업의 금융약정과 연결시키고, 금융약정을 위험과 연결시켜 논의한 바 있다. 만약 기업가 자본이 충분히 크다면, 금융약정의 양은 덜 필요하고 위험증가는 작아진다. 칼레츠키는 1954년에는 이를 약간 다르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는 자본 차입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위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자본의 양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Kalecki, 1991, p. 278). 그는 이전에는 기업가 자본을 약한 차입수요와 연결시켰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외부자금의 차입능력과 연결시킨다. 이제 기업가 자본은 기업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쳐 투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더 큰 기업가 자본을 갖는 기업은 보다 큰 투자 자금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적은 기업가 자본을 갖는 기업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 기업의 팽창은 그의 현재 이윤으로부터의 자본축적에 의존한다”(Kalecki, 1991, p. 278).

칼레츠키에게 있어서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은 투자의사 결정과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는 붐과 붕괴의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더 이상 이러한 금융적 요소 즉, 투자의사 결정과 외부자금의 차입, 과도한 투자지출, 그에 따른 과중한 채무부담, 위험증가와 파산가능성 등의 경기순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현재 이윤으로부터의 저축’으로 대체한다. 그의 1954년 책에서, 칼레츠키는 투자의사결정의

7) 경제의 하강은 번영기 동안에 이루어진 투자주문과 그에 따른 자본장비 증가가 기대이윤과 한계이윤율을 저하시키면서 발생하게 된다. “투자결정률은 기대 이윤율과 이자율 사이의 차이의 증가함수이므로”(Kalecki, 1990, p. 540), 기대이윤율의 저하는 투자주문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되면, 경기순환 과정은 하강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함수를 전개하면서, 네 가지 요소 즉, 총저축(S), 이윤의 변화($\frac{\Delta P}{\Delta t}$), 고정자본 스톡의 변화($\frac{\Delta K}{\Delta t}$), 장기 기술진보(d)를 투자결정의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식(3)은 바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투자결정 함수이다.

$$D = aS + b\frac{\Delta P}{\Delta t} - c\frac{\Delta K}{\Delta t} + d \dots (3)$$

이들 요소 중, 총저축(S)은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을 대표하는 요소이다. 칼레츠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총저축은 제한된 자본시장과 위험증가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투자계획의 경계를 확장한다” (Kalecki, 1991, p. 282). 그러나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은 식 (3)의 투자결정 함수에서는 사실상 사라져 버리고, 자본가의 저축으로 단순히 축소되고 말았다. 이에 더해, 경기순환을 설명하면서도 칼레츠키가 총저축을 과거투자로 대체하면서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의 요소는 완전하게 제거되었다. 그는 경기순환의 과정을 자동적인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래의 식(4)와 같이 저축, 이윤, 자본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과거 투자(I_{t-w})와 현재 투자(I_t)로 치환했다.

$$I_{t+\theta} = \frac{a}{1+c} I_t + \frac{1}{1-q} \left(b' + \frac{e}{1-\alpha'} \right) \frac{\Delta I_{t-w}}{\Delta t} + d' \dots (4)$$

여기서 q 는 자본가의 소비성향을, α' 는 노동소득의 몫을 나타낸다. 그리고 $b' = \frac{b}{1+c}$, $d' = \frac{cd+d}{1+c}$ 이며, e 는 재고투자의 계수를 나타낸다.

3. 장기 이자율

칼레츠키는 1939년 이후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을 구분했다. 그는 투자의 결정과 경기순환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은 단기 이자율이 아니라 장기 이자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칼레츠키는 1939년에 발간한 『경제변동이론』 (The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투자결정률은 한계이윤율과 이자율 사이의 차이의 증가함수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 이자율이기 때문에 …” (Kalecki, 1990, p.309). 또한 『경제동학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투자결정과 그리고 순환적 과정의 메커니즘과 관계되는 것은 장기 이자율이기 때문에 …”(Kalecki, 1991, p. 276).

칼레츠키가 장기 이자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반면, 그는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명의 정교화 과정에서 장기 이자율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장기 이자율은 안정적이고 단기 이자율보다 변동 폭이 작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분석에서 장기 이

자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가 장기 이자율이 안정적이고 단기 이자율보다 변동 폭이 작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장기 이자율(r)이 평균 기대 단기 이자율(할인율)(ρ_e)과 채권 보유에 따르는 순불편(β), 자본손실의 가능성(γ)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r = \rho_e + \beta + \gamma \dots (5)$$

여기서 칼레츠키는 β 와 γ 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했으며, ρ_e 는 개별적인 단기 이자율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기 이자율보다는 안정적이고 작은 변동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단기 이자율의 변동은 장기 이자율에는 일부만 반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레츠키는 장기 이자율을 안정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변수로 취급했던 것이다.

III.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한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칼레츠키는 투자와 경기순환이론을 발전시키면서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자동적이고 규칙적인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할지라도, 경기순환의 상승과 하강기에서 나타나는 금융적 문제 즉, 과도한 금융약정, 과중한 부채, 그에 따르는 파산 가능성의 증가, 금융위기의 문제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 및 경기순환이론은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 절에서 칼레츠키가 제거했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복원하여 위의 금융적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1. 투자결정 함수

칼레츠키의 투자결정 이론은 위의 식 (1)로부터 식 (3)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은행의 대출의지, 단기 이자율, 위험증가, 기업가 자본, 장기 이자율 등의 화폐 및 금융변수들을 제거했다. 은행의 대출의지와 단기 이자율은 식 (1)에서 식 (2)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으며, 장기 이자율은 식 (3)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이 식 (3)에는 이윤율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 즉, 자본장비, 자본가 저축, 기술진보와 같은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식 (3)에서 위험증가, 기업가 자본과 같은 금융적 요소는 자본가의 저축으로 축소되었다.

칼레츠키가 그의 투자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제거했던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다시 복원하여 칼레츠키 투자함수를 재구축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를 얻을 수 있다.

$$D = aS + b \frac{\Delta P}{\Delta t} - c \frac{\Delta K}{\Delta t} + d - ei + fD - g\rho(D) - hr \quad \dots (6)$$

위 식 (6)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는 식 (3)과 동일하다. 여기서 새롭게 추가한 항은 5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4개 항이다. i 는 단기 이자율, D 는 기업가가 차입한 부채, $\rho(D)$ 는 부채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 증가, r 은 장기 이자율을 나타내며, e, f, g, h 는 각 항의 계수를 나타낸다.

위 식 우변의 5번째 항은 단기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칼레츠키는 단기 이자율이 총수익성에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했다. 그러나 칼레츠키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 하에서만 타당하다 (Kalecki, 1990, p. 74). 즉, 첫째, 단기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이자율이며, 중앙은행의 개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침체기에 이자율이 급등하는 신뢰의 위기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이러한 가정들이 완화되면 투자함수에서 단기 이자율의 제거는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칼레츠키 자신도 식 (1)을 식 (2)로 축소시키면서, 이 식은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고, 신뢰의 위기가 없을 때만 유지될 수 있다”(Kalecki, 1990, p. 75) 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특히, 1933년의 『경기순환 에세이』 (*Essays on the Business Cycle*)에서 화폐시장을 분석할 때, ‘신뢰의 위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신뢰의 위기는 불황기에 금융자산 가격의 갑작스런 하락과 함께 발생하는데, 부채상환과 이자지불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는 “신뢰의 위기는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규칙적인 작동을 교란시키는 요소로서 고려되어야만 한다”(Kalecki, 1990, p. 98)라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가 봄의 말기에 나타나는 금융교란과 금융위기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신뢰의 위기의 영향을 받는 단기 이자율을 투자함수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또 칼레츠키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경시하였지만, 단기 이자율 변동에 대한 중앙은행의 영향도 작지 않다. 많은 경우에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신용수요에 반주기적(anti-cyclically)으로 대응한다. 봄기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할인율이나 또는 명목 정책이자율을 인상한다. 그리고 침체기에는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책이자율을 인하한다. 따라서 우리가 신뢰의 위기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을 고려한다면, 단기이자율은 이윤율보다 더 크게 변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단기 이자율은 투자결정 함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여섯 번째 항은 기업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부채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투자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채 D 는 상업은행의 대출 의지에 의존하는 신용에 의해 결정된다. 칼레츠키는 경기상승의 전제조건이 은행제도에 의한 신용수요의 수용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은행제도 즉,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은 신용수요를 큰 주저없이 수용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은행신용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은행들에 의해 수

용된다” (Kalecki, 1990, p. 190). 또한 그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크게 인상하지 않으면서 상업은행의 할인수요를 수용한다고 가정한다. “경기상승의 부양 가능성은 은행제도 특히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크게 인상하지 않으면서 신용을 팽창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Kalecki, 1990, p. 489).

그러나 상업은행은 투자를 위한 신용수요에 대해 항상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은 봄 기에는 기업가에게 공격적으로 신용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하강기에는 신용제공을 꺼린다. 더욱이 은행들의 재무상태나 유동성 선호에 따라 신용공급을 조절기도 한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의지와 그에 따른 신용과 부채의 양은 투자결정에 있어서 제거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가 봄 기의 말에 항상 나타나는 과잉투자과 과잉부채 형성의 메커니즘을 알고자 한다면, 이러한 은행의 대출의지라는 요소를 투자결정 함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은행의 대출의지와 그를 반영하는 신용 및 부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채 D 를 고려한 것이다.

일곱 번째 항 $\rho(D)$ 는 위험 증가의 투자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위험증가는 부채의 증가함수이다. 한 기업의 부채가 클수록 위험, 즉 그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파산위험 가능성은 커진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개념을 어떤 기업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최적 투자량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계 이윤율의 감소를 최적 투자량 결정의 요소를 보는 고전과 경제학자들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칼레츠키는 또한 개별기업의 위험증가와 기업가 자본이 각 기업의 팽창을 제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투자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직접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신에 그는 그것들을 이윤율로 치환해버렸다. 모트(Mott)가 지적하듯이,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모형에서 이윤의 설명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Mott, 2010, p. 5). 위험증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 기업의 자본장비 증가와 추가적 투자주문 그들의 금융약정을 크게 증가하도록 만든다. 그럼으로써 증가된 부채가 기업의 위험을 더 커지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위험의 증가는 다시 투자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덟 번째 항은 장기 이자율의 투자결정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칼레츠키는 장기이자율이 안정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간주하면서, 그의 투자이론을 발전시킬 때 장기이자율을 설명변수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칼레츠키가 장기 이자율의 안정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던 자본손실가능성(γ)의 안정성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정부채권이나 높은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채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낮은 신용등급을 갖는 회사채의 이자율은 경제상태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그들의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정부채권과 BB 등급의 위험 회사채 사이의 이자율 스프레드는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의 하강기에 이 스프레드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크게 확대된다. 위험 기업에 의해 발행된 회사채의 장기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투자 결정을 크게 감소시킨다.⁸⁾ 투

자의 감소는 새로 조달하려는 채무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의 이자지불과 상환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 이자율은 투자결정과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논의할 때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2. 경기순환

칼레츠키는 위의 식 (3)으로부터 유도된 식 (4)에 의해 경기순환의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그는 식 (3)을 식 (4)로 전환하면서, $S = I$ 에 근거하여 자본가 저축 S 를 투자 I 로 대체했으며, 이윤 P 는 과거투자 I_{t-w} 로, 또 고장자본 장비의 변화율 $\frac{\Delta K}{\Delta t}$ 는 순투자로, 새롭게 추가된 재고의 투자 변화율 $\frac{\Delta O}{\Delta t}$ 는 과거투자로 대체하였다. 또 다시 그는 식 (4)을 아래의 식 (7)로 전환했는데, 식 (7)에서 순투자 (i)는 과거 순투자들의 함수로 대체되었다.⁹⁾

$$i_{t+\theta} = \frac{a}{1+c} i_t + \frac{1}{1-q} \left(b' + \frac{e}{1-\alpha'} \right) \frac{\Delta i_{t-w}}{\Delta t} \quad \dots (7)$$

칼레츠키는 “이 방정식이 바로 우리의 경기순환 메커니즘 분석의 기초가 되는 방정식이다” (Kalecki, 1991, p. 303) 라고 말한다. 위 식 (7)로부터,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그는 우변 첫 번째 항의 계수, 즉 $\frac{a}{1+c}$ 는 1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위 식 (7)에서 순투자의 증가가 어떤 수준에서 더 이상의 증가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계수 $\frac{a}{1+c}$ 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순투자의 정점에서 다음의 순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순투자의 정점에서는 순투자가 변화하지 않음으로 정점에서 순투자 변화율 $\frac{\Delta i_{t-w}}{\Delta t}$ 은 0이 되며, 따라서 식 (7)의 우변 두 번째 항은 0이 된다. 그리고 우변 첫 번째 항의 계수는 1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순투자의 정점에서는 다음기의 순투자 $i_{t+\theta}$ 가 현재 순투자 i_t 보다 작게 된다. 이처럼 현재 순투자의 계수 $\frac{a}{1+c}$ 가 1보다 작으면, 순투자는 투자증가에 따라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정점에 도달하고, 정점에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frac{a}{1+c} < 1$ 의 가정은 이렇게 투자활동이 초과 투자나 급격한 투자 감소, 그리고 공황과 같은 불규칙적인 폭발 없이 자동적으로 주기적

8) 덤스키(Dymski)는 칼레츠키가 그의 투자결정 분석에서 장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칼레츠키가 단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결과 불확실성 문제도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Dymski, 1996, p. 124).

9) 이 대체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Kalecki(1990), pp. 288-232를 참고하라.

변동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순투자의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않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가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정은 자본장비 증가에 투자결정에 대한 마이너스(-)영향(즉, $c > 0$)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아마도 저축의 불완전한 채투자 요인(즉, $a < 1$)을 반영하는 것이다” (Kalecki, 1991, p. 306). 그러나 자본장비 증가가 투자결정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저축의 투자결정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계수 a 가 1보다 작다는 가정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타당할 뿐, 항상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경기하강기를 제외하고는 기업가는 자신의 이윤으로부터의 저축 이내에서만 투자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확장기에 기업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인해 차입을 크게 늘려 투자를 확대한다. 이럴 경우, 투자결정은 자본가의 저축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저축의 계수 a 는 1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a 가 1보다 항상 작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 는 봄 시기에는 1보다 훨씬 크고, 침체기에는 1보다 크게 작을 것이다. 이제 a 는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a = a(t)$ 로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식 (7)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i_{t+\theta} = \frac{a(t)}{1+c} i_t + \frac{1}{1-q} \left(b' + \frac{e}{1-\alpha'} \right) \frac{\Delta i_{t-w}}{\Delta t} \dots \dots (8)$$

위 식 (8)이 식 (7)에 비해 보다 더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식 (8)만 가지고는 경기순환의 팽창에서 수축으로의 자동적 전환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식 (7)에서 하강으로의 자동적인 전환은 현재 순투자의 계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순투자의 정점에서 미래 순투자는 현재 순투자보다 작게 되고,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식 (8)에서는 현재 순투자의 계수가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적인 전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상승기에 $a(t)$ 는 1보다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정점이 없이 미래 순투자는 현재 순투자보다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 (8)을 갖는 경제의 경우에는, 경기순환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제 우리는 경기순환의 전환을 단순히 자본장비 증가의 투자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에서 찾지 말고, 다른 요소에서 찾아야만 한다. 투자결정 방정식 (6)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 정점에서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한 부채로 인해 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투자결정 방정식 (6)에서 투자결정 양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순투자의 증가는 멈추고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기순환의 팽창에서 하강으로의 전환은 이렇게 자본장비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적 요소의 불리한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식 (6)은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경기하강으로의 전환과정은 완만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파괴적인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경기순환의 전환과정이 파괴적이 되게 되면 경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상태를 겪게 된다. 만약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뢰의 위기’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환과정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전환기에 ‘신뢰의 위기’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전환과정은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파산을 면하지 못하고, 그 결과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금융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스키(Minsky)는 이미 발전된 금융구조를 갖는 경제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레츠키언 이윤 분석과 부채구조를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채구조가 매 시기의 소득플로우 또는 이윤에 의해 지탱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민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칼레츠키언 이윤 강조, 그리고 이윤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현금플로우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경제의 기본적인 행태의 결정에 금융구조가 포함되는 것이 자연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Minsky, 2013).

우리는 이러한 한 경제의 이윤과 금융부담 즉 부채상환과 이자지불 부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경제가 경기후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윤이 금융부담의 양보다 더 커야 한다. 즉, 식 (9)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pi = I + C_k \geq D(1 + r^*) \dots (9)$$

위 식에서 이윤 π 는 칼레츠키에 따라 투자(I)와 자본가의 소비(C_k)로 나타냈다 (Kalecki, 1971[2010], p. 127). 그리고 이자율은 단기 및 장기의 가중평균 이자율 (r^*)로 나타냈다. 식 (9)와 같이 이윤이 금융부담 보다 더 크면 경제는 안정적이고 팽창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붐이 진행되면서 부채규모는 커지고 이자율은 상승해 금융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투자는 증가폭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윤도 그 상승이 부진하거나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는 식 (9)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윤이 금융부담보다 더 적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에 ‘신뢰의 위기’가 커지면 이자율은 급등하게 되고, 은행의 대출의지는 감소해 상환을 위한 추가조달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경기순환의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그 하강이 파괴적이어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칼레츠키의 투자함수에 화폐와 금융변수를 도입한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 함수와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칼레츠키언 투자 함수와 경기순환 메커니즘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

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칼레츠키가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함으로써 얻었던 자동적이고 규칙적인 경기순환 이상의 보다 풍부한 현실 설명력을 갖는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식 (6)에 나타나는 다양한 투자결정 요소들을 고려하고, 또 금융구조와 이윤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 경기순환 메커니즘,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IV. 칼레츠키언 투자이론과 과잉투자, 금융위기, 경기침체

이제 화폐와 금융변수를 고려하여 구성된 식 (6), (8), (9)를 이용하여, 과도한 투자, 과중한 부채, 금융위기, 경기침체를 갖는 경기순환을 분석해 보자. 먼저, 번영기와 봄 기에는 투자를 증대시키려는 기업의 욕구는 매우 고무적이고 적극적이다. 따라서 식 (6) 및 식(8)의 저축의 계수 값은 1보다 크다. 기업가는 그들의 저축 이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려 하고,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에 대해 은행제도는 기업의 신용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자율을 너무 높게 인상하지 않으므로써 투자조달 요구를 지원한다. 즉, 이때 은행의 대출의지는 기업의 차입 수요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기업의 부채조달은 큰 저항 없이 증가한다. 단기 이자율 또한 중앙은행이 신용팽창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기업의 위험증가 또한 아직은 수익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서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투자 팽창 욕구와 은행제도의 신용수요 수용 의지는 기업의 투자결정과 부채규모를 동시에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기업의 부채는 충분히 상환될 수 있어서 부채구조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윤이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이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이윤은 금융부담인 이자지불과 부채상환의 합계보다 더 크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식 (6) 투자결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식 (9)의 지속적 경기팽창 조건도 충족된다.

봄의 말기에는 은행제도의 대출의지는 비우호적이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는 기업가 자본에 비해 너무 증가해 있고, 부채 상환의 위험은 크게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때 단기 이자율은 크게 상승해 순투자의 추가적 신용을 조달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식 (6)의 투자결정은 봄의 말기에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투자지출도 이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제 투자지출의 감소는 이윤의 감소로 나타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윤은 투자와 자본가의 소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구조 또한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이

율은 감소하는데, 부채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고 단기 및 장기 이자율 또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부담은 이윤보다 커져 순이윤 가치는 0보다 적게 되고 그런 기업은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식 (9)의 경기상승 지속 조건은 유지되지 못하고, 경기하강 국면이 갑작스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돌진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후퇴기로 전환하는 동안에, 투자결정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이윤은 크게 줄어든다. 이는 다시 소비의 감소와 자본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투자결정과 이윤을 더욱 감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감소된 이윤은 부채의 상황과 이자지불을 어렵게 만들어, 특히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윤만으로는 금융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신뢰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금융시장에서 신뢰의 위기가 나타나면,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은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투자지출이나 기존 부채의 상환을 위한 추가조달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에 빠져들게 된다. 많은 기업들의 파산은 은행제도 전체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그 결과 그 경제는 금융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전반적인 투자와 소비지출의 부진을 초래해, 결국 경제 전체의 침체 상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이, 칼레키언 투자함수의 화폐 및 금융변수 도입은 칼레츠키의 투자함수나 경기순환 메커니즘 설명보다,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 경제에 대해 보다 더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개선된 칼레츠키언 투자함수 모형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과도한 투자, 과중한 채무, 그리고 붐의 말에 나타나는 파산위험 증가와 취약한 금융구조, 또 그 결과 나타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V. 맺음말

칼레츠키는 화폐 및 금융적 요소가 투자 의사 결정과 경기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케인스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은 화폐적 현상이며, 투자조달은 저축이 발생하기 이전에 은행의 신용창출에 의해 제공되고, 또한 부채규모가 커질수록 채무자나 채권자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그의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다른 실질변수, 즉 이윤이나 저축으로 대체해 버렸다. 그가 이렇게 화폐 및 금융변수를 제거하거나 대체했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변동의 자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칼레츠키가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명에는 화폐 및 금융변수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칼레츠키가 그의 투자결정 이론과 경기순환 메커니즘의 설명에서 처음에 어떤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왜 제거하거나 다른 변수들로 대체했는지를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칼레츠키가 제거했던 화폐 및 금융적 요소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복원한 새로운 투자결정 함수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은행제도의 대출 의지, 단기 이자율, 위험 증가와 기업가 자본, 장기 이자율 등의 화폐 및 금융변수를 도입한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결정 함수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결정 함수를 기초로 여러 복잡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내포하는 경기순환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칼레츠키언 투자결정 함수는 칼레츠키가 추구했던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적 경기순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금융구조를 갖는 현실경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 과중한 부채, 파산위험의 증가,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즉,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는 번영기 동안에 나타나는 기업가의 투자 증가의 조달을 위한 신용 수요의 증가를 은행제도가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는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투자와 과중한 부채는 결국 기업의 파산위험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만다. 그 결과 단기 및 장기 이자율이 급등하고 은행제도의 대출의지도 크게 약화되어, 부채가 큰 기업은 추가자금의 조달은 물론, 기존 채무의 상환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상황의 전반적인 증가가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금융위기가 다시 소비와 투자의 침체를 심화시켜 경기침체를 낳는 것이다.

<참고문헌>

- Asimakopulous, A., 1983, "Kalecki and Keynes on Finance, Investment and Saving",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7, No. 3/4, pp. 221-233.
- Dymski, Gary A., 1996, "Kalecki's Monetary Economics", in King, John E. (ed.), 1996, *An Alternative Macroeconomic Theory: The Kaleckian Model and Post-Keynesian Economic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alecki, Michal, 1939,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s*, London: Routledge.
- Kalecki, Michal, 1954, *Theory of Economic Dynamics: An Essay on Cyclical and Long-run Change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Kalecki, Michal, 1990,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Business Cycle and Full Employment, Vol. I*, edited by Jerzy Osiatynsk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lecki, Michal, 1971,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1933-1970* (조복현 번역, 『자본주의 경제 동학 에세이 1933-1970』,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클래식, 2010).
- Kalecki, Michal, 1993,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Vol. IV, edited by J. Osiatynsk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lecki, Michal, 1991,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Economic Dynamics, Vol. II*, edited by Jerzy Osiatynsk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regel, Jan, 1989, "Saving, Investment and Finance in Kalecki's Theory", in Sebastiani, M (ed.), *Kalecki's Relevance Today*, London, Macmillan.
- Lopez, Julio and Tracy Mott, 1999, "Kalecki Versus Keynes on the Determinants of Investment", *Review of Political Economy*, Vo. 11, No. 3, pp. 291-301.
- Messori, Marcello, 1991, "Financing in Kalecki's Theor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5, No. 3, pp. 301-313.
- Minsky, Hyman, 2013, "The Relevance of Kalecki: The Useable Contribution", *PSL Quarterly Review*, Vol. 67, No. 265, pp. 95-106.
- Mott, Tracy, 2010, *Kalecki's Principle of Increasing Risk and Keynesian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 Toporowski, Jan, 2012, "The Monetary Theory of Kalecki and Minsky", Department of Economic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Working Paper No. 172.
- Sawyer, Malcolm, 2001, "Kalecki on Money and Finance", *European Journal of H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8, No. 4, pp. 487-508.

제2부 사회적 불평등과 새로운 경제사상의 모색 (오후 2:00~3:40)

사회자: 박만섭(고려대)

■ 피케티의 새로운 점과 오래된 점: 사상사적인 조망

발표자: 홍훈(연세대)

토론자: 김공회(당인리정책발전연구소)

■ 한국사회의 불평등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

발표자: 김태환(연세대)

토론자: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

■ 롤즈와 하이에크의 결합이 가능한가: 신고전적 자유주의 검토

발표자: 조필규(한밭대)/황재홍(목원대)

토론자: 성장원(고려대, 철학)

피케티의 새로운 점과 오래된 점: 사상/이론사적인 조망¹⁾

홍 훈(연세대)

-초록-

이 글은 피케티의 가설을 사상/이론사적으로 조망한 후 그것의 잠재력을 드러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의 가설은 소득불평등이 19세기말부터 1914이전까지 최고조로 높았다가, 그 이후 점점 낮아져 1940년과 1980년 사이에 가장 낮아졌다가. 다시 1980년 이후 2010년까지는 1914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변동은 일차적으로 자본/소득비율의 변동에 의존하며 보다 포괄적으로는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아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변동은 시장내적인 법칙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제도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80년대 이후의 불평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본수익에 대한 누진세와 자본자체에 대한 누진세 등과 같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피케티는 세력관계나 협상이론을 위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한계생산성이론과 마르크스의 이론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의 논리에서 생산과 소유가 구분되지 않아 그의 두 가지 기본법칙에서 자본/소득비율의 의미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20세기 후반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시의적절한 주장을 내세웠다. 이 글은 피케티가 제시한 소득분배론을 사상사와 이론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것의 잠재력을 밝혀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피케티의 주장을 요약했다. 둘째,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에 근거해 그의 주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규명했다. 끝으로 그의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표출하려고 노력했다.

1)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3799).

1. 피케티의 주장

피케티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19세기말부터 1914년까지의 첫째 시기에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했고, 그 이후 1970-80년까지의 둘째 시기에는 감소했으며, 그 이후 2010년까지의 셋째 시기에는 증가해 첫째 시기의 불평등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은 이미 심각하다. 이런 U자형의 소득불평등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하므로 전체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본의 몫이 중요하다. 자본의 몫은 자본수익율과 자본/소득비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했다. 이에 따라 자본/소득비율의 추세가 U자형의 소득불평등을 결정했다.

이런 소득분배의 변동에는 여러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소득분배에 있어 시장내적이거나 경제내적인 법칙은 없다. 이것은 현재의 불평등을 내버려두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자본/소득비율이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고,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언제나 높으므로, 자본의 몫을 줄이려면 성장률을 늘리고 수익률을 낮추어야 한다. 특히, 누진세를 통해 세후수익률을 낮추고 자본세를 통해 자본의 팽창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케티는 소득분배를 규정하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기본 법칙으로 항등식과 방정식을 제시했다. 즉, (1) 자본소득/총소득 ≡ 자본수익률*(자본/소득) (pp. 52-53),²⁾ (2) 자본/소득=저축률/성장률 (p. 166-167).³⁾

(1) 자본소득/총소득 ≡ (수익률*자본)/총소득 ≡ 수익률*(자본/총소득)

$\Pi/Y \equiv (rK)/Y \equiv r(K/Y)$, $\alpha \equiv r\beta$ 예, $\alpha=0.3$ $r=0.05$ $\beta=6$

(2) 자본/총소득 = 자본증가/소득증가 ≡ 투자/소득증가 = 저축/소득증가 ≡ (저축비율*총소득)/소득증가 ≡ 저축비율*(총소득/소득증가) ≡ 저축비율/성장률

$\beta \equiv K/Y = dK/dY = I/dY = S/dY \equiv sY/dY \equiv s/g$ 예, $\beta=6$ $s=0.12$ $g=0.02$

균형에서 자본소득비율이 불변인 조건은 자본/총소득=자본증가/소득증가, 장기에 $S=I$,

① $\beta=s/g$ 을 $\alpha \equiv r\beta$ 에 집어넣으면, $\alpha=r(s/g)$, $sr=ag$, $r>g$, $s<\alpha$, $da/dr>0$, $da/dg<0$

② 국민소득의 성장률=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인구의 증가율(이민포함)(p. 167)

$g=(dY/dt)/Y=d(\ln Y)/dt$ $Y=(Y/N)N=y*N$

$g=d(\ln Y)/dt=d\ln y/dt+d(\ln N)/dt=(dy/dt)/y+(dN/dt)/N$

2) 페이지만으로 표시된 모든 인용의 출처는 Piketty(2013)이다.

3) (2)식은 투자=저축이라는 전제와 투자/자본이 성장률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한다. 케인즈가 강조했듯이 단기에는 저축이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지만 장기에 있어 투자는 저축과 일치한다(pp. 169-170). 또한 이에 근거한 자본/소득비율은 적어도 장기에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산가격이 소비재가격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의미를 지닌다(p. 169, 170, 176).

II:자본소득 Y:총소득 K:자본 N:인구 I:투자액 S:저축액 y:일인당소득
 a:자본의 몫 r:자본수익률 β :자본/소득비율 g:소득의 성장률 s:저축비율

우선 피케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자본의 몫이 1880년대에 30-35% 수준이었다가, 1975년에는 15%에서 25%로 하락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25%에서 32%에 이르렀다(p. 222). 영국과 프랑스에서 첫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에는 자본의 몫(a)이 높았고, 중간시기에는 낮았다. 이런 변동의 주요원인은 자본/소득비율(β)의 변동이다(p. 117). 첫 시기에는 6-7정도로 이것이 높았다가, 중간시기에는 이 비율이 2-3으로 낮아졌으며, 세 번째 시기에는 이 비율이 다시 6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β 의 U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중간시기에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 대공황으로 인한 가치감소, 전후의 국유화나 몰수 때문이다. 70년 이후 이 비율이 다시 증가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지속된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그리고 최근 몇 십년동안 진행된 사유화와 자산가격의 상승을 들 수 있다(p. 173). 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미국의 β 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β 보다 낮아서 보다 완만한 U곡선을 보인다(pp. 155-156). 현재 미국의 β 는 4.5이다.

수익률(r)은 자본/소득비율(β)과 반대로 움직여 β 의 변동을 부분적으로 상쇄했지만 이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는 수익율의 작은 변동에도 자본투입량이 크게 변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pp. 220-221). 특히, 19세기말이나 20세기말과 같이 금융화 및 세계화(혹은 제국주의)가 진행되면 국내자본이 해외자산으로 쉽게 전환되어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수십년이 걸린다(pp. 361-366). 결국 언제나 수량효과(volume effect)가 가격효과(price effect)를 압도해 β 이 자본의 몫(a)을 결정해 왔다.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자본량이 수익률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 임금소득을 압도한다. 자본소득의 비중(1/3)이 임금소득의 비중(2/3)보다 적지만 전자의 불평등이 후자의 불평등을 훨씬 능가해 소득의 불평등을 낳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p. 244, 258, pp. 410-411).⁴⁾ 이 점에서 어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1912년 이전에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 등으로 볼 때 소득이 상당히 불평등했다가, 40년에서 80년 사이에는 불평등이 줄었다가, 80년 이후 2000년에 이르면서 다시 불평등이 1912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났다.⁵⁾ 현재의 소득불평등이 1890년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수준에 이를 수 있다(p. 372). 자본/소득비율(β)이 증가하면 자본에 발생하는 소득이 늘어나고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4) 투자가 소비보다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그 변동의 폭이 커서 총수요의 변동을 지배할 수 있다면 이와 비슷한 논리이다.

5) 영국은 철학, 법, 경제, 사회체제 등 모든 면에서 대륙과 미국의 중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소득 불평등의 변동에 있어 영국은 대부분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다(p. 271).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상당부분 유산으로 상속된다. 유산 및 기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이런 흐름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 소득은 20세기 초까지 20-25%를 차지하다가, 1920년경에 10% 이하로 떨어졌고, 1940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8% 이하로 머물다가, 그 이후 증가해 현재 15% 수준에 이르고 있다(pp. 379-380). 따라서 피케티는 현대를 상속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규정했다.⁶⁾

프랑스의 경우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19세기말에는 45-50% 수준인데 비해 20세기에는 30-35%로 하락했다. 임금소득에 국한하면 이 비율은 25%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런 불평등의 감소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억압된데 기인한다(pp. 271-273). 1980년 이후에는 경영자들의 노동소득이 크게 증가해 상위소득자들의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증가했다, 과거에는 상위 1%에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했는데, 현재는 0.1%에 이르러야 이같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임금체계의 불평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pp. 277-279).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차지하는 노동소득이 실제로 80년대 이후 25% 수준에서 35%로 증가했다. 이 추세는 유산보다 능력이 더 정당하다고 보는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극단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생활자와 경영자의 경쟁이 벌어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p. 417). 그렇더라도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80년대 이후 증가한 불평등 중 최소한 1/3은 자본소득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미국에서도 자본소득이 압도하는 소득의 수준이 높아졌을 뿐이다. 이제는 상위 1%가 아니라 0.1%에 이르러야 자본소득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pp. 299-301).

피케티에서 기술변동으로 인해 인적자본이 중요해져 자본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p. 223-224). 유산을 상속하는 중산층이 생겨난 것은 20세기에 있어 중요한 변화이다. 이로 인해 상위 1%이 소유한 자산의 비율은 반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불평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pp. 260-262).

피케티에서 자본은 토지나 건물을 포함해 노동이외의 모든 생산요소를 포함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뉜다. 물론 부동산에서 농업용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고 주택이나 산업용 건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같은 이유로 지대와 이윤, 이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본에 대한 수익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는 전체소득을 노동에 근거한 임금과 노동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에 대한 소유만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했다. 나아가 자본을 계승되는 재산이나 유산으로 보아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기득권이나 토지와 비슷하게 취급하고,

6) 한국의 경우도 이 같은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시점이 1997년 경제위기이후로 여타 국가들보다 늦으며, 불평등의 정도가 미국과 독일/일본의 중간이다(김낙년, 2013). 그런데 자본소득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한국의 불평등도는 이보다 더 높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혹은 노동소득만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불평등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은 모두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높다는 피케티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교육을 중시하고 인적인 관계와 인적인 요소를 강조하므로 임금의 불평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가설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의 수익도 지대와 비슷하게 취급했다. 이 같이 그에게서 자본은 생산이 아니라 소유와 연결되므로 이런 의미의 자본/소득비율은 같이 생산조건이나 기술과 연결되지 않는다.

피케티에서 자본에 대한 수익률(r)과 성장률(g)의 차이가 자본이 축적되어 불평등이 늘어날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는 ① $a=r(s/g)$ 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 가령 r 은 4-5%, g 는 1-2%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sr=ag$ 에서 보듯이 자본의 몫이 저축비율보다 높은 것으로도 나타난다. 장기간 동안 자본의 몫은 30-40%이고, 저축비율은 10% 내외였다(pp. 350-355).⁷⁾ 더구나 이미 지적했듯이 세계화의 상황에서는 해외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해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pp. 361-366). 유럽보다 미국의 β 가 낮은 이유도 미국의 저축률(1970년=2010년에 7-8%)이 낮고 이민 등으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②에서 보듯이 g 는 국민소득의 성장률로 일인당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을 합한 것이다(p. 167). 성장률이 경제전체의 소득증가이므로 경제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율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r-g)$ 는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소득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넘어서는 차이를 나타낸다. 수익률이 높으면 저축이 늘어나 자본이 커지게 되면서 수익이 더욱 커지는 자본의 자기증식이 발생한다. 반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새로운 산업이나 기능이 늘어나 그만큼 불평등이 약화된다(p. 431). 이것을 인구의 증가율로 해석하더라도 자손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속되는 유산이 쪼개지므로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의 ① $a=r(s/g)$ 을 보면 a 의 변동은 r , s , g 의 변동에 달려 있다. a 는 r 과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g 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만약 s 에 변동이 없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r 이나 g 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없다면, a 의 변동은 r 의 변동과 g 의 변동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피케티가 강조한 자본수량의 효과가 아니라 이윤율이라는 가격효과가 더 중요해지는 것은 r , g 가 모두 자본량을 분모로 삼아 수량효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았는데, 양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불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성장률이 증가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줄어 불평등이 줄어든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져 불평등이 늘어난다. 또한 수익률이 늘어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져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진다. 수익률이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 자본소득이 압도하게 되면 과거가 현재나 미래를 삼키는 결과가 나온다(p. 531, 571).

피케티는 소득분배가 시장에서 한계생산성이나 교육수준이나 기술발전 등에 의해 정연하게 결정되지 않고, 상당부분 사회집단들의 세력, 정치, 협상, 제도와 규칙,

7) 자본의 몫=자본수익률*(자본/소득)이고, 자본/소득=저축비율/성장률이므로, 두 번째를 첫 번째에 넣으면, 자본의 몫=자본수익률*(저축비율/성장률). 여기서 자본수익률>성장률이면 자본/소득>저축비율이다. 즉, $a=r\beta$ 이고 $\beta=s/g$ 이므로 $a=r(s/g)$ 혹은 $ag=sr$, 여기서 $g<r$ 이면 $a>s$ (p. 563).

규범, 경제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pp. 274-275, 305-335, 577). 현실경제에서는 여기에 다시 전쟁 등 여러 충격들이 추가된다. 1940년-80년 사이의 불평등 감소에는 전쟁, 공황, 누진세, 국유화 등이 기여했고,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이나 월급제 등도 영향을 미친 제도들이었다. 물론 최저임금은 상위소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p. 310).

1980년 이후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최고경영자(supermanager)의 막대한 급여는 불연속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높은 능력의 증가를 전제해야 한다. 또한 끼리끼리 알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들의 봉급인상이 결정된다(pp. 510-512). 그러므로 한계생산성이 아니라 협상력과 재량, 그리고 사회집단들의 세력관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외적인 요인이 변동했을 때 경영자들의 보수가 함께 변동한다는 것도 이들에 대한 보수가 생산성이나 교육 등과 무관함을 보여준다(p. 335; Bertrand & Mullainathan, 2001).

1980년 이후 상위 1%에 속하는 최고경영자의 높은 소득이 다른 국가보다 영국과 미국에서 두드러지므로 이는 제도적인 차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2010년 전후로 미국과 영국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이 15%-18%인데 비해,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는 6%에서 11%에 그쳤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미국보다 언제나 더 평등했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에는 유럽의 불평등도가 미국보다 높았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상위 10%가 차지한 소득의 비율을 보면 유럽은 46%, 미국은 41% 수준이었다.

이는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이 소득분배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정치나 정책을 통해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는 개방성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피케티는 제도적인 장치나 정책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소득의 과도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정치적 갈등이나 소요를 초래해 왔다. 그런데 소득의 불평등이 독점의 해소와 경쟁의 증가를 통해 완화될 수 없다. 또한 생각과 달리 세계적으로 교육이 평등이나 사회적 계층이동을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명대학의 학비가 워낙 비싸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pp. 471-487). 2008년의 경제위기는 세계화된 상속자본주의의 위기이다.

그러므로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의 역할을 중시하고, 새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1%이하의 자본세를 제창했다. 자본수익률에 대한 세율의 변동은 실제 수익률의 변동을 낮고 수익률과 성장률 사이의 차이를 변화시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자본의 크기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를 두어 누진성을 유지한다.

이런 주장은 최근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자본에 대한 유치 경쟁 등으로 과세의 누진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80년에는 최고한계세율이 70%이었는데 1988년에는 28%가 되었다(p. 499). 그렇지만 금융자산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가들이 공유하고 이에 근거해 서로 협조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pp. 515-518). 이를 위해서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의 움직임과 소재에 대한 지적도(cadastre)를 만들어야 한다(p. 561).

이런 역할은 사회적 국가가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국가는 이미 훨씬 더 커져 있다. 1910년까지 국민소득에서 10% 이하였던 조세수입이 2000년 이후에는 30%에서 50%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회적 국가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규칙을 정하고 권리를 분배하는데, 그것이 개입하는 주요 부문은 교육, 의료, 은퇴와 이전소득지급이다.

2. 소득분배에 관한 세 가지 입장

소득분배에 이르면 경제학의 설명력이 취약해진다. 동시에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도 약화된다. 리카도-스라파 등의 세력관계이론이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성격은 재화시장의 가격결정에 대한 설명에서보다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의 다른 분야와 달리 분배이론에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지향이 겹쳐 나타난다. 임금과 이윤에 대한 이론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는데서 멈추기 힘들며 정당하거나 정의로운 임금이나 이윤의 수준을 제시하도록 요구받는다. 피케티도 존재와 규범이라는 소득분배이론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다.

현실과 규범이 뒤얽혀 소득분배이론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 그 하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가르치는 한계생산성이론으로 시장경제에 우호적이다. 다른 하나는 리카도 등 고전학파에 등장했던 세력관계이론 및 협상이론으로 시장경제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다. 나머지는 마르크스가 내세웠던 착취이론으로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 경제에 비판적이다.

2.1 한계생산성이론

한계생산성이론은 한계효용학파의 등장과 이에 근거한 마샬과 클라크 등의 기여로 형성되었으며 생산요소시장의 가격결정에 근거를 제공한다. 생산함수에 근거한 이 이론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의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공헌한 바에 따라 임금과 이윤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생산요소나 그 생산요소의 소유자가 생산에 공헌한 바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능력주의를 표방한다. 이 이론은 가치를 생산한 자가 그것을 분배받는 것이 옳고 시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한계'생산성'이므로 생산에 공헌한 바이지만 이것이 생산자체로 규정되지 않고 교환이나 시장의 평가를 포함하며 개인의 선택에 의존한다. 이 이론은 시장중심으로 분배와 생산을 포괄하고 개인들의 선택과 자유로운 교환에 의존하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생산된 결과에 대해 평가한 바를 능력의 기준으로 삼는다. 동시에 한계생

산성은 '생산'과정자체보다 생산물이 시장에서 평가된 '결과'를 중시한다. 시장의 가격과 개인의 선택에 의존은 신고전학파가 강조하는 소비자잉여나 생산자잉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잉여는 개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구매하겠다고 선택한 결과로 발생한 '가치'의 증가이다. 국민소득은 경제전체에서 이같이 발생한 부가가치의 합이다.

한계생산성이론에서 선택과 한계라는 측면을 제외한다면 분배의 기준으로 생산에 대한 공헌과 시장의 평가가 남는다. 이 관점에서는 한계생산성이 임금이나 이윤·이자율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때문에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공헌한 바에서 벗어나는 소득은 부당하다. 이 이론은 시장에서 각자 공헌한 바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노동과 자본 혹은 임금과 이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는 조화로운 경제사회를 대변한다.

현실성이 높지는 않지만 경제학이 흔히 활용하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다. (일차동차를 가정하고) 이 함수를 보면 각 생산요소의 소득이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공헌한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의 몫과 노동의 몫을 합하면 정확히 총생산물과 일치하므로 양자사이에 조화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윤/소득(Π/Y)의 비율이나 이윤/임금(Π/W)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계수에 의해 기술적으로 주어지 안정적이다.

$$Y = aL^bK^{1-b}, a>0, 0<b<1$$

$$Y = W + \Pi = wL + rK \rightarrow L(dY/dL) + K(dY/dK)$$

$$\text{만약 } w = dY/dL \text{ 이고 } r = dY/dK \text{ 이라면, } wL + rK = L(dY/dL) + K(dY/dK)$$

$$\text{이에 따라 } L(dY/dL) = abL^bK^{1-b} \quad K(dY/dK) = a(1-b)L^bK^{1-b}$$

$$\Pi/Y = rK/Y \rightarrow [a(1-b)L^bK^{1-b}] / [aL^bK^{1-b}] = 1-b$$

$$\Pi/W = rK/wL \rightarrow [a(1-b)L^bK^{1-b}] / [abL^bK^{1-b}] = 1-b/b \quad (\text{예로서, } b=2/3)$$

Y:생산물 L:노동투입량 K:자본투입량 a:기술수준 b:노동의 공헌비율 (1-b):자본의 공헌비율

W:총임금 Π :총이윤 w:(시간당)임금 r:(자본단위당)이윤율

이런 주장의 전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어서 임금이나 이윤이 노동이나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분배의 안정성이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형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어서 시장이 독과점이 있거나 협상이 개입되면, 한계생산물이 임금이나 이윤이 한계생산물에서 벗어나며 조화롭고 안정된 소득분배도 그 근거를 잃게 된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독과점보다 자유경쟁이 지배해 이 기준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이 이론은 만약 한계생산성이론이 현실경제를 설명하지 못하면, 한계생산성이론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독과점 등으로 인한 현실경제의 불완전함을 탓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정보 등의 부족도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신고전학파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불평등을 고려하더라도 비효율성이 수반되는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신고전학파가 다른 행동보다 지대추구를 우선적으로 문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Mankiw, 2013, pp. 23-24).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이나 제도, 금융체계 등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건들이 된다. 이런 것들은 흔히 경제민주화로 분류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차적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세 가지 논리로 압축할 수 있다. ① 시장에서 경제내적으로 소득이 결정된다. ② 이렇게 결정된 소득은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생산성에 준하므로 정당하다. ③ 산업화 과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시장 안에서 스스로 교정되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가 안정적이다.

시장경제에서 소득분배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에도 의존한다. 특히, 쿠즈네츠(S. Kuznets)의 U곡선에 의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상당기간 소득분배가 더욱 불평등해지지만, 경제성정이 더 진행되면 다시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확산되면서(trickle-down)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장기적인 수준에서 ‘선성장후분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2 노동가치/착취이론

마르크스가 내세운 노동가치론 및 착취이론은 임금이나 이윤이 시장이나 정치의 장이 아니라 기업이나 공장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순생산물을 노사가 나눈다고 보지 않고 순생산물의 수량자체가 생산과정에서 결정된다. 착취, 규율이나 사기, 인사관리나 노무관리에 따라 공장이나 기업 내의 생산성이 가변적이다. 이 입장은 노자간의 투쟁이나 대립 혹은 세력관계를 중시하는데 그 영역을 생산과정에 두고 있다.

노동시장의 교환/계약과 생산함수에 의존하는 신고전학파는 일단 노동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이나 공장 내에서 자동적으로 굴러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이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을 정했다더라도 이것으로 생산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이 이론은 불완전 계약과 이에 따른 이행비용의 발생 등 불확실성을 내세우면서 노동·노력추출(labor/effort extraction)을 강조한다.

이는 생산함수에서 구매되는 노동과 실제로 투입되는 노동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계생산성이론이 생산함수의 선상에서 움직인다면, 이 이론은 생산함수의 “내부”에서 작동한다. 여기서 자본의 수익에 해당되는 잉여가치는 생산과정의 결과이다. 이 입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잉여가

치에 노동력의 가치를 합한 부가가치가 국민소득을 이룬다. 이 입장에서 가치를 생산한 자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옳지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다. 이 경우 생산의 주체와 분배의 주체는 일치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에서 착취와 생산과정은 자본의 운동법칙에 포함되어 있다. 자본은 개인의 선택이나 법/정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확대재생산한다. 이런 확대재생산은 자본주의 구성원들의 화폐물신과 이윤추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화폐와 이윤추구의 필연성으로 인해 자본은 생산재나 산업자본의 형태뿐만 아니라 화폐자본, 금융자본, 가공자본의 형태를 띠고 이런 형태가 나름대로 자율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실제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과 이런 가치를 분배하는 자본이 구분된다. 이런 마르크스의 생각은 힐퍼딩(R. Hilferding)의 『금융자본론』을 통해 발전되었고, 베블런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등장한다.

이 입장에서 투입되는 노동 혹은 넓은 의미의 노동이 소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물론 착취이론은 노동량의 기준이 실현되지 않고 착취가 발생한다고 보아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한다. 착취를 일단 논의로 하고 이 이론을 폭넓게 이해하면 노동의 수량, 공장이나 기업에서 생산에 대한 공헌을 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통에서 강조했던 것은 이윤/소득비율이나 이윤율/임금의 비율이 아니라 이윤율 자체였다.

$$r = \Pi/K = Y/K - W/K = Y/K - w(L/K) = 1/\beta - w/k \quad r = 1/\beta - w/k$$

2.3 세력관계/협상이론

세력관계/협상이론은 임금이나 이윤이 노동/자본시장이나 생산과정에서 결정되지 않고, 노동자나 자본가들 사이의 협상, 투쟁, 타협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협상/투쟁/타협은 시장과 공장의 밖에서 진행되고 세력관계에 의존하므로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다. 한계생산성이론이 생산함수 선상에서 움직이고, 착취이론이 생산함수의 “내부”에서 움직인다면, 이 이론은 생산함수의 “외부”에서 작동한다.

이 이론은 스미스에도 등장하고 마르크스도 강조한 바 있지만, 리카도와 스라파를 위시한 신리카도학파의 입장에 가장 부합된다. 신리카도학파에서 분배의 대상은 잉여나 잉여생산물이고, 이것이 부가가치로서 국민소득을 이룬다. 현실의 노사협상은 과거의 임금, 생계비, 생산성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협상은 이런 요인들로 구성되는 상한과 하한 사이의 범위 안에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 입장에서 분배와 관련된 핵심적인 변수가 이윤/소득비율(Π/Y)이나 이윤/임금비율(Π/W)가 아니라 이윤율/임금률(r/w)이다. 노동/자본계수(L/K)가 변동하는 않는 경우에만 이윤/소득비율과 이윤/임금비율과 동일해진다.

$$\Pi/W = rK/wL = (r/w)(K/L) = \kappa r/w \quad \kappa=L/K$$

이 이론은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격결정으로부터 소득분배를 구분해 이것을 설명하는데 정치나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므로 소득분배의 규범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기술수준과 생산구조가 잉여생산물을 결정한다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잉여의 근원을 명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이론은 생산이나 교환과 무관하게 이미 주어진 잉여를 놓고 노자가 대답하고 투쟁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계생산성이론과 착취이론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지만 모두 분배를 설명하는 기준과 소득을 정당화하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한계생산성이론은 마지막 한 단위가 생산에 참여해 시장에서 평가받은 결과가 소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착취이론에서는 투입되는 노동 혹은 보다 넓은 의미의 노동이 소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계생산성이론이 분배의 기준으로 생산에 대한 공헌과 시장의 평가를 내세운다면, 착취이론은 노동의 수량과 생산에 대한 공헌을 기준으로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이론에서 투입된 노동의 수량, 공장이나 기업에서 생산에 대한 공헌, 가격에 의한 시장의 평가가 추출된다. 노동량이 생산에 대한 공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생산에 대한 공헌이 반드시 시장의 평가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일상이나 상식 수준에서 오랜 동안 소득분배의 기준으로 고려되었다.

세력관계/협상이론은 누가 가치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누가 가치를 가져가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한계생산성이론이 시장을 중시하고 착취이론이 생산과정을 강조한다면, 협상이론은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이론은 분배를 시장의 교환과 공장의 생산으로부터 분리하고 교환의 주체와 생산의 주체와 분배의 주체도 구분한다. 분배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생산과 교환으로부터 분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생산이든 교환이든 분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생산과정에 대한 경시는 노동가치나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과 이를 포함하는 기업의 내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는 경제활동의 결과와 이에 대한 분배에 관심이 편중되어 경제활동자체나 과정이 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된다. 이 이론은 소득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소득을 낳는 노동과정이나 근로조건 등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 이 이론은 분배의 정치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경제내적인 분배의 기준도 거부하면서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나 정책 혹은 비율을 중시한다.

그런데 착취이론과 세력관계/협상이론에서는 소비나 저축을 계층이나 계급 혹은 이들이 받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이에 의하면 저축(혹은 소비)비율이 자본으로부터의 소득과 노동으로부터의 소득,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달라진

다.8)

3. 피케티에 대한 이해

피케티는 소득분배가 세력관계나 협상 등 여러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묵시적으로 투입 노동량과 생산에 대한 공헌을 소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 법과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를 중시하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자본세를 주창했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한계생산성이론을 위시해 신고전학파이론을 비판했으며, 무조건 자본의 몫이 커지고 노동의 몫이 줄어든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도 비판했다(pp. 217-219). 그의 입장을 신고전학파의 입장에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이나 경제 내에서 소득이 결정되지 않으며, ②’결정된 소득이 생산성이나 능력에 준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고, ③’이렇게 결정된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는 마르크스도 여러 측면에서 비판했으나 자본의 확대재생산이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한 강조 등에서 친화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고전학파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근거해 내세우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분배는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함수에 의하면 소득분배가 주로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 논리로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여러 유형의 소득분배를 설명하기 힘들다. 실제로 이 함수는 많은 자료에 근거해 도출된 가설도 아니다(pp. 217-219). 현실에서 소득은 여러 사회집단의 정치적인 세력, 협상, 제도, 법과 규범, 전쟁 등 여러 요인들이 개입해 결정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생산성이 소득을 결정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계생산성이론에 대한 비판은 고위경영자에 대한 보상이 한계생산물이 아니라 협상이나 직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에 덧붙여 그는 리카도적인 동일성(Ricardian equivalence), 모딜리아니의 평생소득가설, 베커의 인적자본이론, 시간선호, 파레토의 법칙, 자본시장의 완전성 등 여러 신고전학과 이론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공부채가 자본축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리카도적인 동일성은 베로(R. Barro)에 의해 정부의 부채가 중립적이라는 논리를 낳았다. 그런데 베로는 대표경제주체를 전제해 소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회집단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p. 135).

평생소득가설은 경제주체가 일생을 통해 자신의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적절히 분산시켜 사망시점에서 잔여소득이 영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난 20세기 후반이후에도 상속과 증여가 줄지 않았다(p.

8) 캠브리지 방정식에서는 $g=I/K=S/K=sY/K=s/\beta$ 이 아니라

$$g = I/K = S/K = s_{\pi}\Pi/K = s_{\pi}r \text{ 혹은 } g = I/K = S/K = (s_{\pi}\Pi + s_w W)/K = s_{\pi}r + s_w w_k$$

$$\text{혹은 } g = I/K = S/K = (s_{\pi}\Pi + s_w W)/K = [(s_{\pi}\Pi + s_w W)/Y](Y/K) = [as_{\pi} + (1-a)s_w]/\beta$$

$$\rightarrow \beta = [as_{\pi} + (1-a)s_w]/g \quad s_{\pi}: \text{이윤으로부터의 저축성향 } s_w: \text{임금으로부터의 저축성향}$$

384, 401). 베커의 인적자본이론은 모든 소득이 노동이나 인적자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소득이 중요해진 20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에서도 자본소득은 사라지지 않아 모든 소득이 인적자본에서 나온다고 판단할 수 없다(p. 385).

저축을 시간선호로 설명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심리적인 요인 하나로 환원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pp. 358-361). 파레토의 법칙은 불평등도가 일정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더불어 피케티는 경제성장모형에 출발점을 제공했던 정형화된 사실 중 자본/산출계수 혹은 자본/소득비율이 일정하다는 주장도 자료에 근거해 반박했다.

피케티는 많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고 있다. 역사연구에서 흔히 활용하는 바와 같이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 상관관계와 동반관계를 확인해 두 변수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가령, 사망률의 감소가 상속되는 소득의 비중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데 특정 기간에 전자와 후자의 변동이 동시에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데 만족한다. 변수들 사이의 시차도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그는 시계열자료에 대한 회귀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방법이 단순한 상관관계의 확인보다 별로 낫다고 보지 않는 셈이다.

피케티는 양적인 자료에 질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소득에 대한 최상위 0.1%나 1%, 상위 10%, 중위 40%, 하위 50%의 구분은 양적이고 연속적인 차이인데 최상위 1%를 사회엘리트층과 비교한다(pp. 252-253). 또한 그에게서 성장률 등 어느 수준이상의 양적인 변동이 누적되면 구성이나 구조 등의 질적인 변동이나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가져온다(pp. 74-75, 95-96, 166, 277, 439-440). 자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투자분석에 의존할 수 있고 위험부담이 더 용이하게 때문에 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그런 예이다(pp. 430-431). 나아가 그는 조세부과를 단순히 비용이나 세수의 증가로 보지 않고 규칙이나 규범의 부과로 간주했다(p. 520).

이런 흐름은 피케티가 신고전학과와 그의 전신인 한계효용학과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계효용학과는 고전학과에 있던 모든 범주들을 미분을 통해 개별화된 마지막 한단위의 가치라는 수량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축률이나 성장률이 뭉쳐 어떤 유의미한 덩어리로 변한다는 피케티의 주장은 개별화된 가치들을 적분하는 것에 해당된다.

피케티는 역사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약을 중시한다. 자본이 스스로 자라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는 역사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지 않는 신고전학파의 입장과 대비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매번 과거와 무관하게 모든 경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입장이다. 경로의존성은 이런 경향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피케티가 신고전학파이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경쟁이 비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자본이 늘어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수익률이 낮아지며, 이로 인한 자본의 몫이 변동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과 기술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고 명시했다(pp. 215-217). 나아가 자유무역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동의를 표시한다.

물론 한계생산성이나 한계대체율을 개별기업이 주어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결합이나 기술의 대안들과 연관 짓지 않고 경제전체수준에서 비가역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제전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피케티의 주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윤율저하의 법칙을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피케티가 마르크스에 근접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핵심적인 법칙을 제시했는데, 이런 식의 거래담론이나 역사에 대한 의존은 신고전학과 보다 마르크스주의에 가깝다. 내용적으로는 자본의 자기증식과 비슷한 논리를 구사했다. 노동소득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데 비해, 자본은 내버려 두어도 투자되어 수익을 스스로 끌어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증식한다(pp. 395-396, 439-440).⁹⁾ 일단 발생한 불평등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주장도 이와 비슷하다(p. 335).

그런데 주류경제학은 고전학과에서부터 신고전학과에 이르기까지 생산수단이나 생산요소자체의 분배가 아니라 주어진 생산요소의 분배 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분배에 집중해 왔다(홍 훈, 2007, 105쪽). 분배문제를 경제의 중심에 놓았던 리카도와 스라파도 잉여에 집중해 자본자체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런 한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생산수단이나 자원의 사유를 전제해 자본주의라는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 부근에서는 마르크스와 조지(H. George)의 토지공개념이 이런 절제의 예외이다. 피케티는 마르크스나 조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본자체와 이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학의 소득분배이론을 넘어선다고 평가된다.¹⁰⁾

또한 그는 자본이 유산이나 증여를 통해 자손에게 이전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것을 죽은 것이나 과거가 산 것이나 현재를 삼키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가 자본을 죽은 노동으로 보고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것을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 것과 비슷하다. 이런 논리에 따라 그는 자본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책 제목이 일말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와의 차이점들이 더 많다. 일단 피케티의 논의는 가치론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인 논리와 무관하다. 변증법은 아니더라도 개념적인

9) 피케티가 생각하는 자본의 자기재생산은 한국사회에 흔히 나도는 속설에 더 가깝다. 재산이 2-3백억을 넘어 서고, 이를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으로 삼등분하면, 이 재산이 스스로 유지된다고 한다.

10) 물론 경제학을 넘어서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약용, 롤즈, 노직, 로우머 등은 자유분방하게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원의 '분배'를 논의해 왔다.

문제들에 관해 피케티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다. 가령,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소득분배의 결과와 관련해 부각되는 개인들의 재산이나 자산과 자본주의의 운동법칙과 관련된 기업의 자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개념들보다 통계자료에 나타난 현상들이 더 중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피케티는 자본을 주로 유산으로 간주하면서, 토지와 구분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자본은 토지를 포함하고 자본수익은 지대를 포함된다. 그리고 자본/소득의 비율 증가는 자본가계급의 증가가 아니라 놀고먹는 연금생활자의 증가나 노동소득에 대비한 불노소득의 증가가 된다. 마르크스에서 자본이 생산을 통해 가치와 잉여가치를 낳는다면 피케티에서 자본은 소유를 통해 수익을 가져다준다.

피케티는 자본자체의 자기운동이나 자기재생산을 인정하면서도 생산과정과 착취나 노동추출을 고려하지 않는다(김공희, 2014). 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감정노동의 착취도 지적하지 않았다(홍훈, 2011). 당연히 노동가치론이나 착취이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자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19세기-20세기에 착취나 소득분배를 둘러싼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나 저항을 그다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생산자본이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혹은 가공자본의 차이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는 생산과 소유 혹은 생산과 분배나 유통을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아가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과 생산된 가치에 청구권을 가지는 자본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다. 이 점에서 피케티는 신고전학파에 가깝다.

1914년에서 1950년 사이에 자본/소득비율이 줄어든 원인들 중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과 대공황을 별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전쟁에서는 자본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데 비해 공황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상실한다.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파괴와 공황의 가치상실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나아가 피케티는 계급에 따른 저축성향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차적이지만 마르크스가 기술발전이나 생산성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피케티의 비판은 명확한 오류이다(p. 228, 565). 또한 자본의 형태전환을 자본의 구성이 역사적으로 농지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한 것도 오해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재생산을 설명하려고 자본의 모습이 반복해서 바뀌는 것을 자본의 형태전환으로 규정했다(p. 113). 더불어 이윤율에 대한 마르크스의 집착에 대한 그의 비판은 논란거리이다.

그는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누진세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천인 자본자체에 세금을 부과해 자본을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자본이 스스로를 확대재생산한다는 마르크스에 가까운 입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이윤이나 이자뿐만 아니라 자본자체에 대해 과세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는 통상적인 경제학자들보다 근원적이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은 고전학파에서부터 신고전학파에 이르기까지 생산수단이나 생산요소자체의 분배가 아니라 주어진 생산요소의 분배 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분배에 집중해 왔다(홍 훈, 2007, 105쪽). 분배문제를 경제의 중심에 놓았던 리카도와 스라파도 잉여에 집중해 자본자체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런 한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생산수단이나 자원의 사유를 전제해 자본주의라는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경제학 부근에서는 마르크스와 조지(H. George)의 토지 공개념이 이런 절제의 예외이다. 피케티는 마르크스나 조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본자체와 이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학의 소득분배이론을 넘어선다고 평가된다.¹¹⁾

4. 피케티에 대한 평가

보다 중립적으로 피케티의 문제를 지적해 보자. 우선 그는 자본이든 노동이든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의 주체나 생산요소라는 의미와 생산의 결과를 청구하는 분배의 주체나 이를 얻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는 생산함수에서 가장 두드러지므로 신고전학파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는 생산과정자체를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생산과 분배, 생산(자)과 소유(자)을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이 문제는 자본과 노동 모두와 관련된다. 자본의 차원에서는 구조물과 장비로 구성된 산업자본이나 생산재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본이나 자산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 노동의 차원에서는 노동자,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인구, 그리고 시민이나 사회구성원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자본/소득비율(β)에 대한 계산 등에 있어서 자본이 어떤 경우에는 생산을 의미하고 어떤 때는 소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순전히 소유나 청구권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증가는 반드시 자본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저축으로 투자해 공장을 짓고 다시 그 공장을 가진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저축의 가치는 [공장+주식]이 아니라 공장에 준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내세운 자본/소득비율의 변동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총자본에서 금융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솔로우(2014)도 생산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피케티의 기본법칙 (1)과 (2) 사이에 개념상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피케티가 내세운 두 가지 기본법칙에서 (1)의 자본(K)은 소유에 근거한 가치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생산자본(K_I)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K_F)을 포

11) 물론 경제학을 넘어서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약용, 롤즈, 노직, 로우머 등은 자유분방하게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원의 '분배'를 논의해 왔다.

함한다. 이에 비해 (2)의 자본은 저축에 근거한 투자를 통해 형성되는 구조와 장비 등의 생산재로 금융자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자.

원래 (2)의 원형인 해로드·도마모형, 칼도모형, 솔로우의 집계생산함수 등도 금융자산을 고려하지 않았다(pp. 230-231). (2)식의 이런 성격은 저축(율)과 성장(률)에 감가상각을 포함시켜 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피케티에 대한 비판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된다(Krusell & Smith, 2014). 금융자산의 감가상각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케티자신도 (2)와 관련해 해로드의 모형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을 논의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대체탄력성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역시 (2)를 금융자산과 무관한 생산 및 기술과 연결시킨 셈이다.

만약 전체자본 중에서 금융자본의 비중이 언제나 일정하다면 이런 지적이 별로 중요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기에 따라 전체자본에서 금융자본의 비중이 변동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투기나 버블에 없어 금융자산의 가격이 실물을 반영하더라도 유효하다. 이 같이 (1)의 자본과 (2)의 자본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 식은 별도의 항등식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¹²⁾ 자본의 의미가 (1)과 (2)에서 다르다면 소득의 의미도 (1)에서는 국민소득의 일부로서 소득으로, (2)에서는 기술조건 등과 관련된 산출로 각기 달리 규정되어야 할 것 같다.

$$(1) \text{ 자본소득/총소득} \equiv \text{수익률} \times (\text{자본/총소득}) \quad a \equiv r\beta \quad \beta = K/Y$$

$$(2)' \text{ 생산자본/총소득} = \text{저축비율/성장률} \quad \beta_I = s/g \quad \beta_I = K_I/Y$$

$$(3) \text{ 자본} \equiv \text{생산자본} + \text{금융자본} \quad K \equiv K_I + K_F \quad \beta \equiv \beta_I + \beta_F$$

$$a \equiv r\beta = r(\beta_I + \beta_F) = r(s/g + \beta_F) \quad a = r(s/g + \beta_F) \text{ 혹은 } a = r(s/g + P_F\beta_F)$$

P_F :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위의 논의가 자본/소득비율(β)과 관련된다면, 자본의 몫(a)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있다. 피케티는 이윤율이나 임금율이 아니라 자본의 몫이나 노동의 몫에 집중한다. 고전학과와 마르크스 등이 중시했듯이, 이윤율이나 임금율(r/w)이 개별주체들의 선택을 넘어 개별 경제주체들의 동인이라면, 이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케티에 대한 논평에서 솔로우도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Solow, 2014).

가령, 자본의 수량(K)이 늘고 이윤율(r)이 하락했지만 총이윤이 늘었다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자본의 몫(Π/Y)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자본가들이 좋아 할 것인가 혹은 자본가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인가? 반대로 노동자의 숫자(L)가 늘고 일인당 임금(w)이 줄었으나 총임금(W)이 늘었다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노동의 몫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좋아 할 것인가 혹은 노동자들의 위상이 높

12) 생산과 금융의 관계와 금융의 자율성은 마르크스, 베블렌, 케인즈 등 다양한 입장의 학자들이 인정해 온 바이다. 신고전학파에서도 파틴킨의 고전적 이분법 논쟁을 시작으로 (새)케인즈주의가 이를 중시한다. 일상적으로도 *Main Street*와 *Wall Street*의 관계는 중요하다.

아진 것인가? 피케티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나, 이런 긍정적인 답변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

자본/소득비율(β)과 자본의 몫(α)을 비교하면 양자의 차이는 분모가 국민소득인가 자본저량인가에 있다. 여기서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와 피케티의 차이가 드러난다. 전자는 자본축적의 과정을 중시해 이와 직접 관련되는 이윤율이나 수익률에 집착했다. 이에 비해 피케티는 자본이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이나 소득에 집착한다.

피케티가 자본에 비해 경시한 노동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피케티는 생산의 주체와 분배의 주체, 투입노동량,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인구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임금이윤압박이론 등에 비추어 피케티와 다른 방식으로 자본소득/소득비율을 풀어보자.

(1) 자본주도형

$$\text{자본소득/총소득} \equiv (\text{수익율} * \text{자본}) / \text{소득} \equiv \text{수익률} * (\text{자본/소득})$$

$$\Pi/Y = (rK)/Y \quad \alpha \equiv r\beta$$

(1a) 노동주도형

이윤/소득 $\equiv 1 - (\text{임금/소득}) = 1 - [(\text{임금/노동량}) / (\text{소득/노동량})] = 1 - (\text{단위임금/노동생산성})$

$$\Pi/Y = (Y - W)/Y = 1 - [(wL)/Y] = 1 - (w/y) \quad \alpha \equiv 1 - (w/y)$$

(1b) 노자공존형

$$\text{이윤/소득} \equiv (\text{이윤/자본}) * (\text{자본/소득}) \equiv \text{수익률} * (\text{자본/노동량}) / (\text{소득/노동량})$$

$$\Pi/Y = (rK)/Y = r(K/L) / (Y/L) = r(\kappa/y) \quad \alpha \equiv r(\kappa/y) \quad \beta \equiv r\kappa$$

혹은

$$\Pi/W = (\Pi/Y) / (W/Y) = (\Pi/Y) / (1 - \Pi/Y) = \alpha / (1 - \alpha)$$

$$\alpha / (1 - \alpha) = \Pi/W = (rK) / (wL) = \kappa(r/w) = \beta/w \quad \alpha / (1 - \alpha) = \beta/w \quad \text{예, } \alpha = 1/3 \quad \alpha / (1 - \alpha) = 0.5$$

(1a) $\alpha \equiv 1 - (w/y)$ 은 이미 임금이윤압박이론에서도 흔히 활용되었고, 솔로우가 피케티를 논평하면서 대안으로 지적했다(Solow, 2014). 단위임금(w)이 줄거나 생산성(y)이 늘면 자본의 몫(α)이 늘어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여기서는 피케티가 인정한 논리로 노동가계급의 투쟁이나 세력관계로 인해 생산성의 증가율을 넘어서는 실질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냐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몫이 결정된다.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 있어 노동운동이나 노조의 번성이나 약화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피케티는 이런 방식으로 자본의 몫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1)식과 (1)'식이 모두 항등식이므로 이들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1b) $\alpha \equiv r(\kappa/y)$ 과 관련해 자본소득비율(β), 인구증가율(g_L), 자본노동비율(κ)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케티는 성장률을 인구증가율로 간주해 인구의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것이 자본소득비율이 증가하고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원

인으로 규정했다(pp. 166-167). 피케티에서 인구증가의 둔화는 경제활동인구 혹은 노동공급의 감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과 결합되는 노동량의 감소, 즉 자본노동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노동비율(K/L)의 증가가 반드시 자본소득비율(K/Y)의 증가를 의미하는가? 일단 모든 부가가치의 합이 국민소득(Y)이다. 그러므로 노동가치론을 주장하면, 노동량과 소득이 동일하므로(Y=L), 자본노동비율은 자본소득비율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피케티와 같이 노동가치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노동생산성(Y/L)이 변동하는 않아야 양자를 동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경제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노동보다 빨리 성장하면서 동시에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자본노동비율과 자본소득비율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즉, $\alpha \equiv \kappa/y$ 혹은 $\kappa \equiv \alpha/y$.

피케티의 논의에서 인구의 증가가 노동자의 증가이고 노동자는 언제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분배의 주체로 등장한다. 그렇지만 인구의 증가가 언제나 고용되는 노동자의 증가도 아니고 고용되지 않아도 수혜자일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구전체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연령 등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 연령조차 사회적 요인(퇴직시한에 대한 법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연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받는다면 분배의 주체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경기변동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는 실업자가 되므로 모두 고용되지 않는다. 실업도 자발적인 실업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경우도 있고 사회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도 있다. 실업자도 생산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을 통해 분배의 주체이다.

물론 시장상황은 일시적이고 경기변동은 단기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 노동시장이나 노조 등과 관련된 법규나 제도 그리고 인사관리의 방식이나 규범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무와 관련된 노동시장유연화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동일한 노동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노동량과 이에 따른 생산실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필요하다.

$$(1c) \Pi = Y - W = Y - wL = Y - whN_e$$

$$\alpha = \Pi/Y = 1 - W/Y = 1 - (whN_e)/Y = 1 - (wh)(N_e/N_a)(N_a/N)(N/Y) \quad \alpha = 1 - (whea)/y$$

$$y = (Y/N_e)(N_e/N_a)(N_a/N) = ea(Y/N_e) = eay_e$$

w:시간당 임금 W:총임금 h:일인당 노동시간 N_e:고용된 노동자의 숫자 N_a:경제활동인구 N:인구

e:고용율(= N_e/N_a) a:경제활동인구의 비율(= N_a/N) $0 < e < 1$ $0 < a < 1$ $N_e < N_a < N$
y:일인당 국민소득(= Y/N) y_e :일인당 생산성(= Y/N_e)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유연화는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에 대해 과거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동일한 임금을 주고 더 낮은 질과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끌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전자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과 분배의 근거가 되는 노동시간이 동일하다. 반면 후자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과 분배의 근거가 되는 노동시간은 동일하지 않다. 후자는 넓은 의미에서 착취나 추출을 내포하고 있다. 한계생산성이론은 노동에 집착하지 않지만 후자보다 전자에 가깝다.

$$wh^* < w^*h^*, w < w^* \text{ 혹은 } wh > wh^*, h > h^*$$

$$\Pi^*/Y^* = 1 - W^*/Y^* = 1 - (w^*h^*)/Y^*$$

$$\Pi/Y = 1 - W/Y = 1 - (w^*h)/Y \quad \text{혹은} \quad \Pi/Y = 1 - W/Y = 1 - (w^*h^*)/(Y^* + wdh)$$

그런데 이를 오로지 소득분배라는 결과의 측면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법인세나 상속세를 낮추는 것도 자본의 몫을 늘리고 노동의 몫을 줄인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비해 노동시장유연화와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의 인하는 과정과 저소득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피케티가 강조하는 누진세나 자본세는 경제활동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생산이나 경제활동이 시장 등의 경제적 과정이나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특정의 소득분배를 낳으며, 여러 경제주체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근로조건이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의 초기조건이나 과정에 개입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개혁할 필요도 있다. 최저임금법,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관련 법규와 비정규직의 비중 등은 모두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종일, 2014). 이렇게 한다면 미리부터 소득의 형평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나아가 생산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자율성 등은 소득분배의 형평만큼 중요하다.

이와 무관하게 피케티의 주장에는 인구증가율이 낮으면 불평등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따라다닌다. 해로드·도마모형에서는 고정된 자본노동계수를 상정해 (자연성장률로 표현된) 인구증가율과 자본증가율이 일치될 때 균형성장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피케티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를 허용해 성장률의 구성요인을 일인당 소득의 증가율과 인구의 증가율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r > g$ 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인구가 늘면 그만큼 재산이 쪼개져 유산의 중요도가 줄고 새로운 세대가 보다 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pp. 83-84). 그렇다면 출산장려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책인가? 이 부분에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다.

피케티는 한 시대가 앞선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분배에 있어 개선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말할 뿐 소득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 지니계수, 노동지분이나 자본지분의 비율, 1% 10% 40% 50% 등의 소득 비율을 따지는 것 등은 상대적이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세력관계나 협상에 의존하는 이론은 분배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계생산성이론이나 노동가치/착취이론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평등이나 불평등을 순전히 상대적인 현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별도의 기준은 필요하다. 이미 제시된 이런 기준들로 생계에 근거한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법, 기본소득, 부분적인 노동시간제(콜름), 극빈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롤즈), 천부적인 능력에 대한 공개념, 토지공개념 등을 들 수 있다.¹³⁾ 객관적인 기준이 누진세나 자본세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피케티의 논리와 배치되지도 않는다. 또한 그에게도 소득분배의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묵시적으로 내세우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후 이에 대해 발전시켜 보자.

우선 그는 프랑스혁명, 1차 대전, 대공황 등이 극단적인 불평등이 등장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p. 439). 이는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소득불평등으로 혁명, 폭동, 전쟁, 공황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이런 것들이 소득불평등의 상한과 하한이다.

피케티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기준은 노동과 생산에 대한 공헌, 그리고 능력주의이다. 이에 따라 노동이나 활동이 수반되는지 아니면 오로지 소유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구분된다. 여기서 자영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며,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주상영·전수민, 2014). 뿐만 아니라 자본도 스스로의 저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유산이나 증여에 의한 것인지 구분된다. 이것은 세대간의 불평등이나 이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소득은 생산성이나 인적자본의 결과인지 아니면 세력, 협상, 운 등의 결과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최고경영자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

피케티가 다루는 소득분배문제는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소득분배가 사회와 경제의 여러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이고 아마 가장 중요한 종류의 불평등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그의 논의는 주류경제학을 넘어서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분배가 사회의 모든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모든 문제도 아니다. 나아가 소득분배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 기술혁신, 정치경제적인 참여, 환경, 인간관계 등에 의존하는 행복 등 사회경제의 중요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더구나 불평등으로 좁혀도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이 경제적인 불평등자체도 아니고 경제적인 불평등이외에 정치나 문화의 불평등도 있다.

무엇보다 그는 소득과 생산을 넘어 참여, 여가, 환경 등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특

13) 콜름도 노동가치론을 주창하지는 않지만 피케티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앞서 소득분배의 근거로 노동량을 내세웠다. 그 역시 프랑스혁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프랑스 학자이다. 그는 피케티보다 더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의 규칙이나 체제를 주창했다(Kolm, 2004). 그는 전체 노동시간 중 1/3 정도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의 소득을 완전 평등하게 나누고, 나머지는 완전히 각자의 몫으로 삼는 이분법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히, $r > g$ 에 근거해 성장률이 높아야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그의 생각은 생산이나 경제활동을 그자체로 정당화하는 생산주의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Galbraith, 1958). 피케티가 많이 생산하면 나중에 모두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을 많이 해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그에게는 얼마만큼 노동하고 생산하며 얼마만큼 다른 종류의 참여나 여가활동을 벌이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주요문헌>

Piketty, T. (2013)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the Harvard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 김공희 (2014) 서평: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이론적 의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경제평론』, 44, 235-249쪽
- 김낙년 (2013) 한국의 소득분배, Working Paper Series 2013-06 낙성대경제연구소
- 유종일 (2014) 서평: 자본주의와 불평등-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하여, 『사회경제평론』, 43, 221-234쪽
- 주상영·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31-65쪽
- 홍 훈 (2007) 『경제학의 역사』, 서울: 박영사
- 홍 훈 (2011) 마르크스의 착취관계와 소비 및 동양의 인간관계, 『마르크스주의연구』, 8권 1호, 12-39쪽
- Bertrand, M. & S. Mullainathan (2001) Are CEO's Rewarded for Luck The Ones without Principals a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3, pp. 901-932
- Galbraith, J. K. (1958) *The Affluent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Kolm, S.-C. (2004) *Macrojustice: The Political Economy of Fair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usell P. & T. Smith (2014) Is Piketty's "Second Law of Capitalism" Fundamental?, NBER *Working Paper*
- Mankiw, N. Gregory (2013) Defending the One Perc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pp. 21-34
- Phelps, E. (1961) The Golden Rule of Accumulation: A Fable for Growthmen, *American Economic Review*, 51:4, pp. 638-643
- Piketty, T & E. Saez (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pp. 1-39
- Solow, R. (2014) Thomas Piketty Is Righ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Republic*, April 22

지니계수의 확장 및 이를 이용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 원인 분석

김태환(연세대)

-초록-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었다. 소득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소득불균등지표의 확립이 중요하므로 대표적인 소득 불균등 지표 중의 하나인 지니계수를 장기시계로 구축하고(1963년부터 2007년)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고령화와 실업률은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신자유주의의 도입도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는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미쳤다.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소득불균등, 지니계수, 고령화, 세계화

제1장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하락하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자본소득의 하락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켰다. OECD(2013)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고, 소득빈곤율은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소득불균형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 계수는 1997년에 0.264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는 0.293으로 급등하였다. 2000년대 들어 지니 계수가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과 2009년에 지니계수는 각각 0.319와 0.320을 기록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09년을 정점으로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사회 및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소득불균등 확대에 따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경우 중산층 및 하위소득계층의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경제전체의 소비가 줄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Galor and Zeira(1993)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교육투자에 차입제약이 존재하고 교육투자에 고정비용이 드는 경우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저소득층의 교육투자를 저해하여 소득불균등이 총 교육투자를 감소시키고 성장을 지연시킨다고 분석하였다. Alensia and Perotti(1996)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불안정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투자를 감소시키므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는 불균등과 재분배와 성장에 관한 중장기 연구 결과 소득불평등은 중기 성장속도 및 성장국면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 및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olt(2010)는 144개의 미국주지사 선거의 설문조사 응답을 다층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큰 주일수록 투표참여가 저조하며, 유권자들 사이의 소득 편차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Solt(2011)는 경제적인 불균등이 개인의 권위에 대한 경험과 권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7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불균형이 증가하면 권위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이는 개개인의 소득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olt는 경제적 불균등의 완화는 사회 내의 권위주의를 완화하여 사회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증대시키고, 비합법적 정부정책에 대한 묵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소득 불균형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경제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각 요인별 우리나라의 현황과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소득불평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지니계수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현재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지니계수 자료는 1990년대 이후의 자료만이 존재하여 한국의 소득분배의 장기적인 소득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를 1960년대부터 장기로 확장 할 수 있는 방안 대해서 논하고, 산출된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 불균등의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제 2장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등

경제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해 가장 선구적인 연구로 쿠즈네츠(Kuznets,1995)의 경제성장과 분배 간에 역U자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 이를 “역U자 가설 (Inverted U hypothesis)”라고 한다.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소득불균형이 악화되다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불균형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 분배가 비교적 균등한 농업부문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비농업부문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의 평균소득 격차의 증가 및 비중 변화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다. 그러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면 대부분의 인구가 비농업부문으로 편입되어 부문 간의 평균소득 격차의 영향이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게 된다. (구인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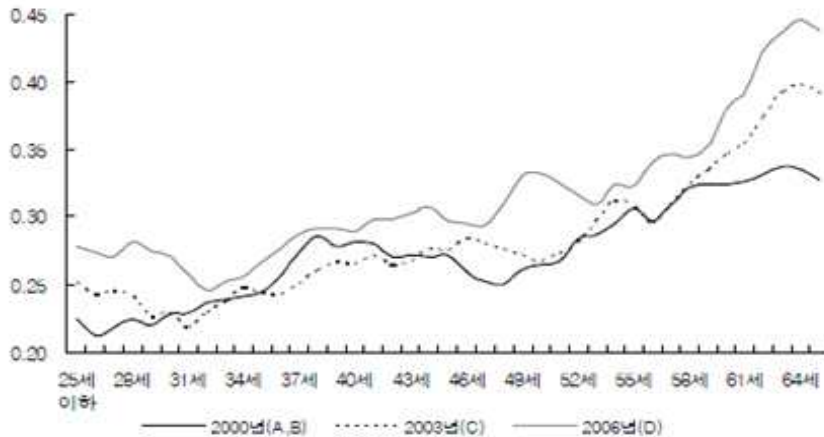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안종범(2003)이 우리나라에서 Kuznets의 역U자 가설이 적용되는지를 회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지 않으며, 인적자본수준, 개방화, 고령화 등이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2. 인구구조와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Juhn and Potter (2006)는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청년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축소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공급 감소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석철, 전한경(2013)은 1990-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가구의 가구소득에서 이전소득 및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전소득의 격차가 감소하고 근로소득의 격차가 증가하므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명재, 박기백(2009)은 1982-2008년의 통계청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로 인한 연령별 인구구조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소득격차가 큰 고 연령층의 가중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상대소득격차 및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보였다.

<그림1> 연령대별 시장소득 지니계수 분포 단위(%)



출처: 원종학, 성명재(2007)

<표 1> 국가별 노년부양비 추이 단위(%)

	France	Germany	Japan	Korea	UK	US	China	India	EU	OECD
1960	20.8	19.1	10.6	8.2	20.2	17.4	8.3	6.4	17.2	15.7
1970	23.7	24.1	11.7	7.4	23.3	18.5	8.8	7.3	20.8	17.7
1980	25.2	27.1	15.0	7.6	26.8	19.8	10.5	7.8	23.7	19.6
1990	24.2	23.7	19.4	8.4	26.9	21.2	10.6	8.0	23.3	20.1
2000	27.5	26.2	27.6	11.5	26.8	20.9	11.6	8.5	25.9	21.9
2010	28.6	34.4	38.9	16.9	27.8	21.8	12.7	9.2	28.6	24.5
2013	30.9	34.9	44.0	18.5	29.6	23.4	13.3	9.4	30.1	26.1
2020	36.5	38.9	52.7	23.6	32.7	28.6	18.1	10.8	34.6	30.5
2030	43.4	52.1	58.2	40.0	39.3	36.8	26.2	13.6	43.0	37.9
2050	49.0	65.1	78.4	71.5	46.4	39.5	42.5	20.8	56.5	48.5
증가율	48.8	82.8	316	126	46.6	34.7	61.7	45.3	75.1	66.8

출처: OECD

3. 경제개방 확대, 세계화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개방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세계화는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무역자유화와 소득 재분배에 관한 경제이론은 헉셔-오린 정리에서 파생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를 들 수 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의 증가는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고,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켜서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Stolper and Samuelson, 1941)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이 풍부하며, 무역 자유화로 수입재에 대한 관세가 감소하면 수입 가능한 고고숙련 노동 집중적인 상품의 가격이 감소하고 따라서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감소하게 되며, 수출재인 저숙련 노동 집중적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고숙련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로 인해 임금격차가 심화된다.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자유화가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경험적 사실이 이론과 배치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된다. 그 중에 하나가 주로 해외직접투자(FDI)이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 모두에서 고숙련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에서 소득불균형이 확대된다. (Jaumotte, Lall, Papageorgiou, 2009)

세계화와 소득분배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Mah(2003)는 1975년에서 1995년도 한국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계화로 인한 경제개방의 증가가 한국의 소득불균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Sato and Fukushige(2009)는 1975-1995년까지의 지니계수를 이용해서 FDI의 증가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품시장의 개방은 단기와 장기에서 모두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자본시장의 개방은 장기와 단기에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면서 경제의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Feenstra and Hanson(1997)은 1975-1988년도의 멕시코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에 자본유입의 증가는 숙련노동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고숙련 노동자의 상대임금을 증가시켜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하였다.

4. 인적 자본 및 교육수준

교육수준이나 인적 자본이 소득 불균등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은 인적 자본 축적을 용이하게 하여 소득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다.

강종구 외(2012)는 전 세계 및 OECD국가를 대상으로 평균 교육년수와 소득 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육년수가 길수록 소득 불균등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Sylwester(2003)는 1970년도 고등교육에서 높은 취학률을 보인 나라가 1970-1990년도에 더 낮은 소득불균등을 겪었다고 분석하였다. Sylwester의 결과는 공교육이 인적 자본의 분포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5. 실업률 및 고용 안정성

실업률 또는 고용률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olan(1990)은 실업률이 최하위계층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소득 불평등을 악화한다고 분석하였다. 안국신 외(1995)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위 및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Budd와 Whiteman(1978)은 실업률과 소득불평등 관계를 분석하면서 불경기 때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실직자들을 소득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므로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증대된다. 또한 불경기에 저숙련 노동자 및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실질을 할 확률이 높으며, 실직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의 초과 공급은 저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증가시킨다.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에 따라서도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시직 및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며 직업의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확대 될수록 소득의 불균등이 확대 될 수 있다. 채구묵(2007)은 한국의 1985-2014년간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

니계수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강종구 외(2012)는 OECD국가 대상으로 상용직 비중과 소득 불균등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상용직 비중이 상승할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 불균등이 근로자의 소득 불균등 보다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 불균등 정도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6.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율의 경우에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채권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부가 재분배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부를 재분배 한다. 저소득층 보다 중산 및 고소득층에 채권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인플레이션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안국신 외(1995)는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하위소득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높이고, 중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낮아져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Blinder and Esaki(1978), Ryu and Slottje(1994)가 선진국에 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와 일치한다.

(2) 조세체계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총 조세 중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재분배의 강도가 강화된다.

성명재(2001)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수준으로 인해 면세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과세자의 비율이 높아 조세집중도가 높으나 소득세 비중 상당히 낮아 조세전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GDP대비 비중은 2011년에 7.8%로 OECD평균인 11.4%보다 낮다. 따라서 소득세 전체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그림3>에서와 같이 누진성이 있는 소득세보다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세율이 부과되어 역진적인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비중이 높아 조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림3> 총조세 중 소득세 및 간접세 비중

단위(%)



자료: 통계청

(3) 신자유주의의 영향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1998-2003년(김대중 정부)에는 국제통화기금(IMF)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4대 부문(기업, 금융, 공공, 노동)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1998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 대폭적인 특혜 제시하고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 확대하며 주식 및 단기자금시장 전면 개방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 1998년에 근로자 파견제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비정규직 및 임시노동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권지훈, 2007; Park, Mah, 2011) 2003-2008년(노무현 정부)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실행되었다. 이러한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노동조합 조직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자에 대한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주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조직률이 하락하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Western and Rosenfeld(2011)은 노동조합조직률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균등화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임금 균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조직률이 하락함에 따라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룹 간의 임금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Visser and Checchi(2009)는 26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노동조합이 감소하면서 협상력 감소와 최저임금규제에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지표의 추이

1. 통계청의 소득 불균등 지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소득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도시2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하고 전국 2인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

2. 지니계수의 확장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는 소득과 부의 분포의 구조적 변화는 수 십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의 소득 자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니계수가 1990년에서 2013년까지로 그 시계가 짧아 한국의 장기적인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시계를 장기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윤기중(1997)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1963년부터 1993년까지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기존의 연구 중 가장 장기간의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한 연구이다. 그러나 1994년 이후의 지니계수 자료가 없으므로 윤기중(1997)의 지니계수 도출 방식을 사용하여 1963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 분배에 대한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1) 분석자료

1) 가계조사연보

가계조사연보는 한국 통계청 복지통계과에서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실시한 도시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발행된 연속간행물로서 서명이 도시가계보고서(1963년-68년)에서 도시가계연보(1969년-2003년)으로 변경, 2004년-2007년 가계조사 연보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도에 폐간되었다. 2008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으로 발행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목적은 도시가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비생활의 실태, 생활수준의 변동 상황 및 지역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i) 소비자 물가지수의 산출에 필요한 지수가중치를 경청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ii) 소비수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iii) 지출국민소득 추계자료를 제공하며 iv) 구제

사업, 임금기준의 결정 등 후생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30개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 중에서 농가, 어업가구,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 추출방법은 층화 3단 추출법을 사용하여 17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1963년 기준) 표본의 크기 및 표본추출방법이 1969년, 1972년, 1977년 등 총 7회에 걸쳐서 표본이 개편됨에 따라서 연도별로 다소 상이 하다.

도시가계연보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지고, 기타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사업수익, 자가생산물평가액, 수증 및 보조 및 기타로 분류된다. 이러한 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 분기별 연도별 월평균소득에 대한 자료가 공표되어 있다. 소득 계층은 연도별로 작게는 7계층, 크게는 19계층으로 나누어져있다.

2) 가계동향조사

도시가계조사는 2007년까지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계연보가 2007년까지 발간되었다. 또한 통계청은 1990년부터 현재(2013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간행물은 발간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표가 언론(보도자료)와 인터넷에 공표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1990년부터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를 제외한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도시가계연보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근로자 가구 외에도 비근로자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조사대상을 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 및 농가가구를 제외한 전국 2인 이상 가구로 확장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006년도 이후부터는 전자가계부 조사방식을 도입하고 조사대상을 1인가구도 포함한 전체가구로 확장시켰다.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및 가구원으로 하며, 표본은 층간 독립 추정이 가능한 7대 도시와 9개도의 동부 및 읍·면·부로 전국은 25개로 층화하여 각 층별 표본규모만큼 확률비례추출방법(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을 통해 999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약 900가구를 표본규모로 한다.

3) 지니계수 산출에 근거가 된 자료

Gini계수를 산출하는데 이용한 자료는 1963-2007년까지 통계청에서 발간된 가계조사연보(도시가계연보)에서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표(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per Household by Income Group f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of All cities)의 소득 자료와 조사가구수 분포자료이다. 이는 윤기중(1997)에서 사용한 자료와 동일하다.

통계청은 1990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조사연보와 조사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90년 이후 최근의 소득분배지표의 경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자료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공되고 있는 전국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 구간별 가계수지 자료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해 보았다.

(2) 지니계수 산출 방법 및 결과

1) 산출 공식¹⁴⁾

$$G = 1 - \frac{\sum_{j=1}^m \sum_{q=1}^m |y_j - y_q| f(y_j) f(y_q)}{2\mu}, \quad \mu = \sum_{j=1}^m \frac{y_j n_j}{n}$$

$$f(y_i) = \frac{n_j}{n}, \quad n = \sum_{j=1}^m n_j$$

단, y_j 는 j 계층의 평균 가구소득 이며, n_j 는 j 계층의 가구 수(도수)를 의미한다.

2) 산출 결과

소득계층별 평균소득과 소득계층의 조사가구수 분표 자료를 바탕으로 위의 식에 따라 지니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구간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청(KOSIS)의 소득분배지표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지표에 제시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소득 분배지표는 정확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도시2인 이상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 2인 이상 가구에 포함되는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전국2인은 농가 및 1인가구를 제외한 전국 2인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2>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 (1963-2007)

Year	Gini	Year	Gini
1963	0.3287	1986	0.3132
1964	0.303	1987	0.3088
1965	0.2893	1988	0.3004
1966	0.2897	1989	0.3092
1967	0.3145	1990	0.3022
1968	0.2976	1991	0.2941
1969	0.2879	1992	0.2896

14) 일관된 장기적 소득분배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윤기중(1997)의 연구에서 지니계수를 산출한 방식과 동일한 데이터 및 산출 방식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1970	0.2665	1993	0.2866
1971	0.2611	1994	0.283
1972	0.2612	1995	0.2825
1973	0.2756	1996	0.2999
1974	0.2597	1997	0.2684
1975	0.3123	1998	0.3289
1976	0.3264	1999	0.3306
1977	0.3411	2000	0.3256
1978	0.3242	2001	0.3254
1979	0.3105	2002	0.3186
1980	0.3123	2003	0.3134
1981	0.3128	2004	0.3508
1982	0.3132	2005	0.3513
1983	0.3169	2006	0.3535
1984	0.3180	2007	0.3535
1985	0.3186		

주: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의 조사가구수 총계와 소득계층별 조사가구수의 총합이 일치하지 않아 가구수 분포의 총합이 1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 조사가구수의 총합을 구해 소득 계층별 조사사구수로 나눈 것을 가구수분포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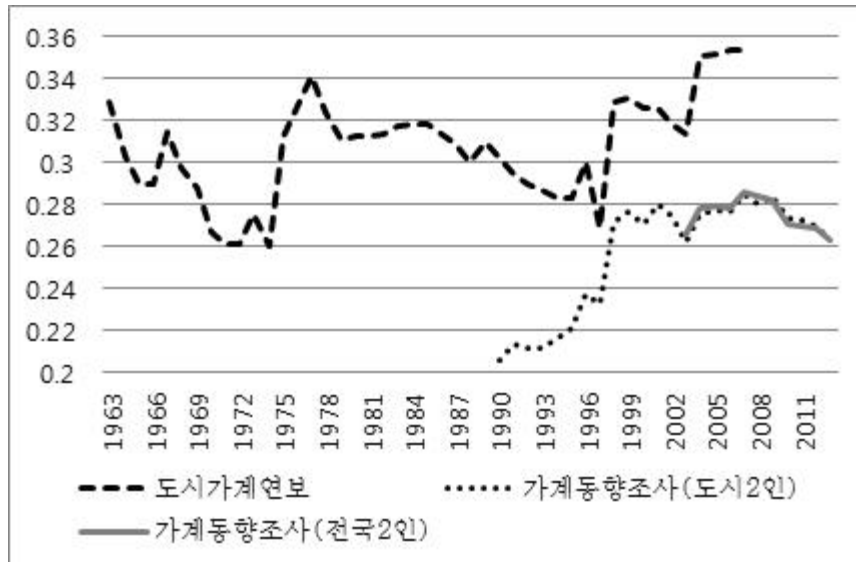
〈표3〉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와 통계청 자료 비교

연도	가계동향 조사 (도시 2인 이상)	통계청 (도시 2인 이상)	가계동향조사 (전국 2인 이상)	통계청 (전국 2인 이상)
1990	0.206	0.266	—	—
1991	0.213	0.259	—	—
1992	0.212	0.254	—	—
1993	0.211	0.256	—	—
1994	0.206	0.255	—	—
1995	0.213	0.259	—	—
1996	0.212	0.266	—	—
1997	0.211	0.264	—	—
1998	0.212	0.293	—	—
1999	0.221	0.298	—	—
2000	0.237	0.279	—	—
2001	0.232	0.290	—	—
2002	0.271	0.293	—	—
2003	0.276	0.283	0.266	0.292
2004	0.270	0.293	0.278	0.301
2005	0.280	0.298	0.279	0.306
2006	0.275	0.305	0.278	0.312

2007	0.262	0.316	0.286	0.321
2008	0.275	0.319	0.284	0.323
2009	0.277	0.320	0.282	0.320
2010	0.277	0.315	0.271	0.314
2011	0.285	0.313	0.269	0.313
2012	0.280	0.310	0.269	0.311
2013	0.284	0.307	0.263	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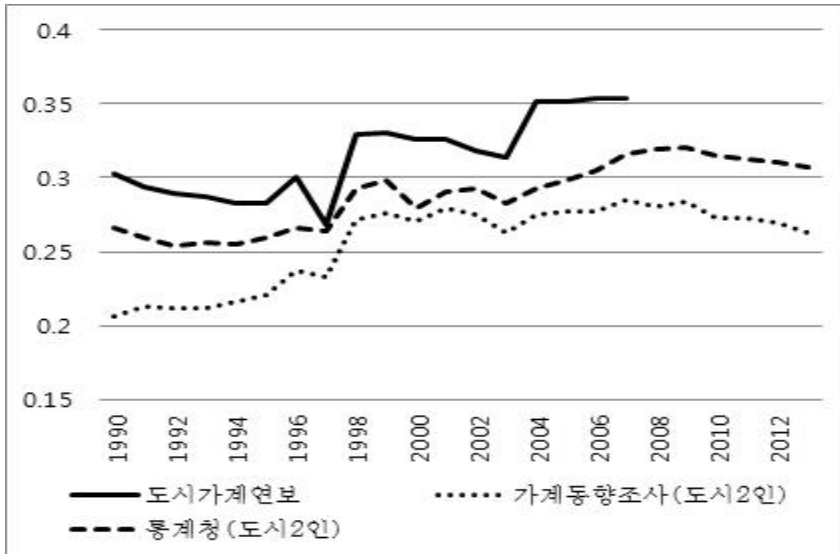
<그림4>는 도시가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지니계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조사의 조사기간이 겹치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를 살펴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두 조사의 조사 대상 및 방법상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5>에는 1990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와 통계청이 고시하고 있는 지니계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세 가지 변수 간에 차이가 존재하나 경향성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도시가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지니계수 (1963-2013)



<그림 5> 도시가계연보 및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지니계수와

통계청자료 비교(1990-2013. 도시 2인 이상 자료)



3) 지니계수 직접 산출 방식의 한계

지니계수 산출의 근거가 된 데이터상의 한계로는 도시가계연보가 도시2인 이상의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근로자 가구나 1인 가구, 농어민가구가 배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높은 고소득가계와 일정직업이 없어 현금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계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가계에 대해서 소득계층별 소득인원을 조사한 자료는 없으며, 소득계층별 소득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일치성을 유지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가계 중에서 근로자가가계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경제변수 변화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윤기중,1997)

지니계수 산출 과정상에서의 한계는 지니계수 산출 시 소득 계급을 몇 구간으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계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 하위구간과 상위구간의 급간 차이로 인해서 지니계수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도시가계연보의 지니계수 양자의 추세가 비슷하므로 도시가계 연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를 가지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 소득 분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지니계수의 추이 분석

도시가계연보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추정 한 결과는 <그림6>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먼저 1963부터 1971년까지는 소득 불평등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제1차 및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한국은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실시하였고, 수출산업 육성과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했다. 이로 인해 고용확대 및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육성에 초점을 둔 제3차 및 4차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었으나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되었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불균형이 확대 되었다.

1980년대에는 소득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저 호황(원유, 달러, 금리)을 바탕으로 경제가 안정화 되었고, 정책기조도 성장에서 물가안정, 지방 및 소외부문 개발을 주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소득불균형이 완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80년대의 소득 불균형 완화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또한 1998년부터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개방화, 노동이 유연화 되면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고 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소득 분배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6> 연도별 지니계수의 추이



제 4 장 실증분석

1. 분석 모델 및 변수 설명

(1) 분석 모델

$$G_t = \alpha + \beta GDP_t + \gamma GDP_t^2 + \delta W_t + e_t$$

G_t 는 연도별 지니계수, GDP_t 는 1인당 GDP 의 자연로그, W_t 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 및 거시적 경제변수로서 고령화 및 인적자본 개방화 정도 등을 나타내는 경제변수를 의미한다.

(2) 변수 정의 및 자료

1) 종속 변수

제 2장에서 도시가계연보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지니계수(1963-2007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최근의 소득불평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이 짧은 것은 하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니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하겠다.

2) 독립변수

① 경제성장

Kuznets의 역U자 가설이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1인당 GDP 및 1인 당 GDP의 제곱 항을 변수로 사용한다. 이는 통계청의 국민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산출하였다.

②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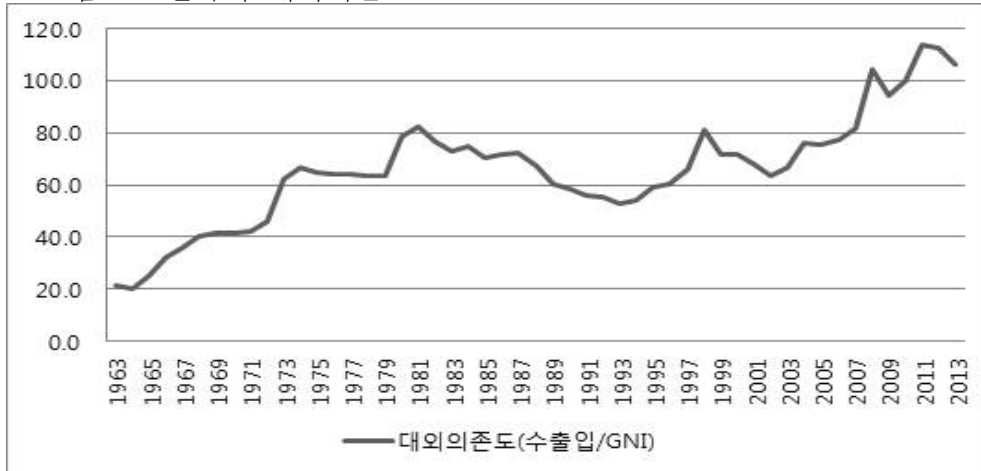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 했을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년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노년부양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생산가능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③ 경제개방 및 세계화 정도: 대외의존도 및 FDI비중

세계화의 정도를 무역개방도 및 자본시장 개방도로 측정할 수 있다. 무역개방도는 대외의존도로 측정할 수 있는데 대외의존도란 국민총소득(GNI)대비 수출입 비율

로 측정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2008년에 104.5%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 100%를 넘어섰다.(<그림 7>참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 대외의존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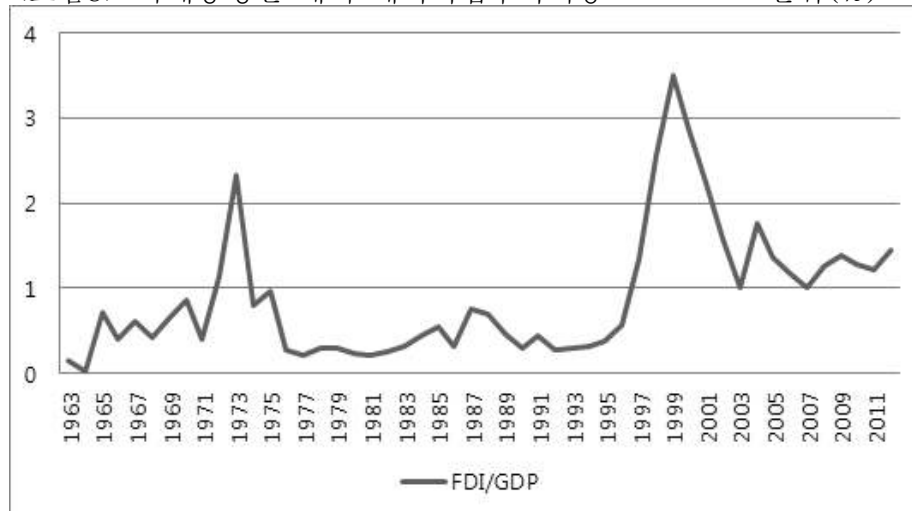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의 대외의존도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해외직접투자액(FDI)의 GDP대비 비중은 경제개방부문 중 자본시장개방도의 척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액(FDI)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달러기준 GDP자료는 World bank의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의 추이는 <그림 8>과 같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비중은 1973년 2.3%로 급등하였으나 그 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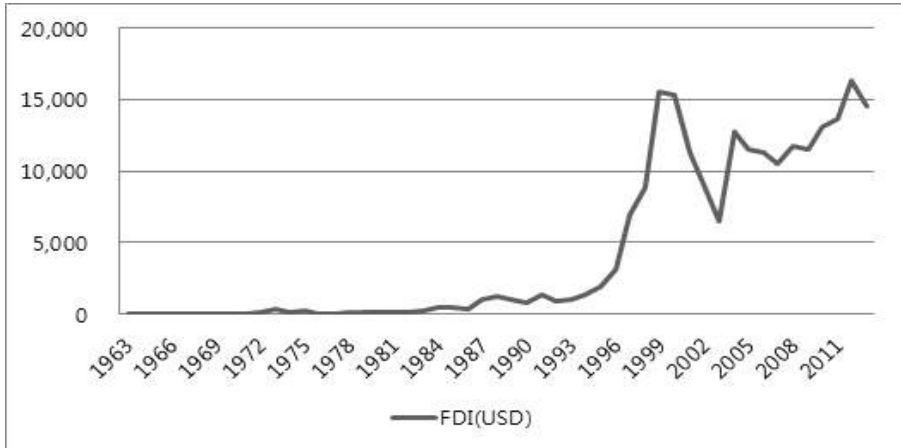
<그림 8> 국내총생산 대비 해외직접투자비중 단위(%)



출처: World Bank,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의 추이는 <그림9>에 나타나 있다. 1995년까지는 2천만 달러를 넘지 않았고, 1998년에 약 9천만 달러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실시된 이후인 1999년에는 1만 5천 달러로 급증하여 증가율이 75%에 달하였다. 1998년을 기점으로 직접투자액의 큰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겠다.

<그림9>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FDI) 단위(천달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④ 인적자본 및 교육수준

교육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GDP대비 공교육지출 비중이나, 학생의 교육단계별 교육 참여율을 사용할 수 있다. GDP대비 공교육지출 비중은 World Bank 자료가 있으나 중간에 누락된 년도가 존재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수준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등교육학생이 전체 학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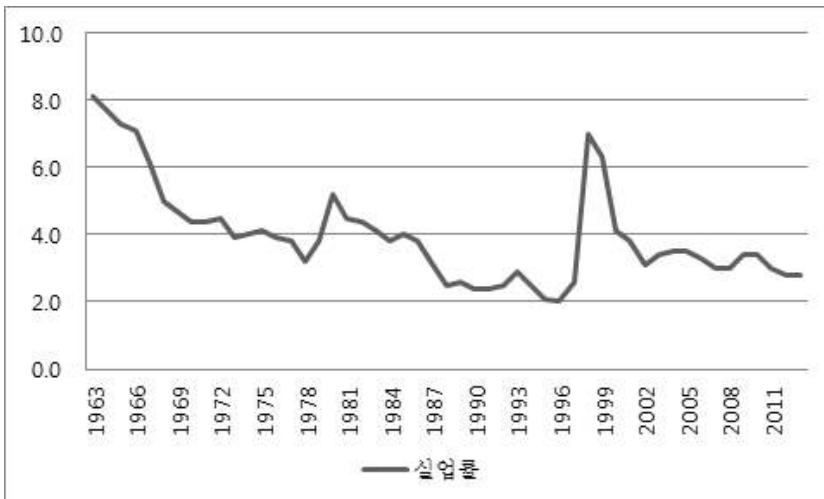
학령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사용했으며,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은 World bank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World bank는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고등교육 취학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취학률은 총 취학률(연령에 관계없이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 및 순 취학률(해당 연령의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자료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서는 총 취학률 자료를 이용하여 중등교육학생비중을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⑤ 실업률 및 고용 안정성

실업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1983년에 ILO권고에 따라 조사를 전면 개편하였고, 공식실업률 작성 기준 구직 기간을 1주로 작성하여 OECD기준인 4주보다 짧아 구직단념자가 늘어나 실업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구직기간을 4주로 변형하여 집계하고 있다.

<그림10>에서 실업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때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최근에는 3%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1 주일에 수입을 목적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취업자로 분류되어 체감 실업률과 괴리가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업률 통계가 반영하지 못하는 고용안정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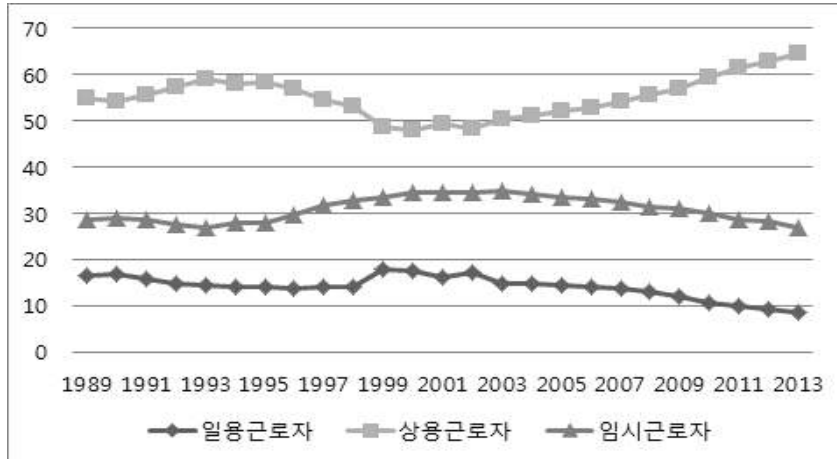
<그림 10> 실업률 추이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안정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또는 임시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에서 2003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해서 시계가 짧아 분석이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비율을 대체하여 근로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자지위별 취업자 자료(1963-2013)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1963-1988년도까지는 임금근로자수 및 일용근로자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1989-2013년까지는 임금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 및 임시근로자수, 일용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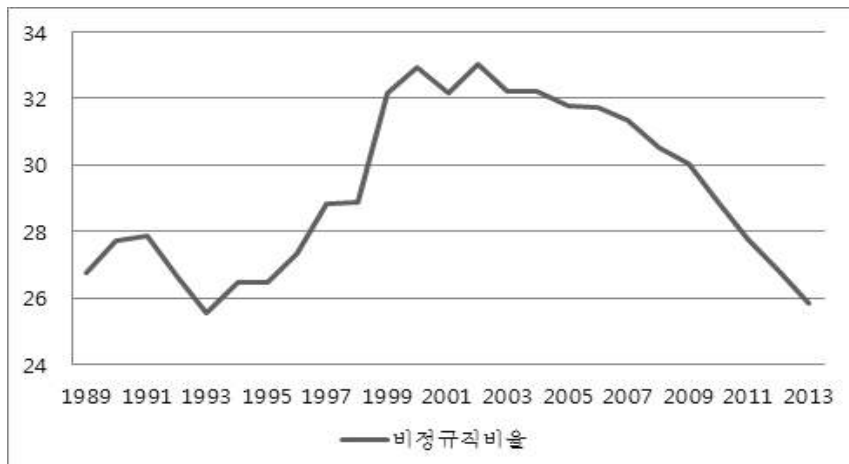
<그림 11>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안정성을 대표하는 변수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직과 일용직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비정규직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1963-1988년도까지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자료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서 1963-2013까지 자료가 존재하는 일용직고용비율(일용직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을 사용하고, 비상용근로자비율 자료는 1990년도 이후 통계청의 지니계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림 12> 비정규직 비율(비상용근로자 비율) 단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⑥ 인플레이션율: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인플레이션율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등이 있다.

GDP디플레이터의 경우 명목GDP와 실질 GDP간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GDP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생산자물가지수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생산부문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득분배와는 거리가 멀다.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 소비자가 일상소비 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로서 물가상승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변수로 사용한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의 1965-2013까지 자료를 이용한다.

⑦ 조세체계: 조세부담률

조세 부과가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총 조세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 자료를 사용하겠다. 조세부담률 자료는 국세청 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⑧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조직률은 노동조합가입자수를 조직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것이다. 노동조합이 소득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변수로 사용하겠다.

<표4>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 작성 방식

1977-1987	상시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
1988-1998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원
1999-현재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공무원(현업공무원과 초·중등교원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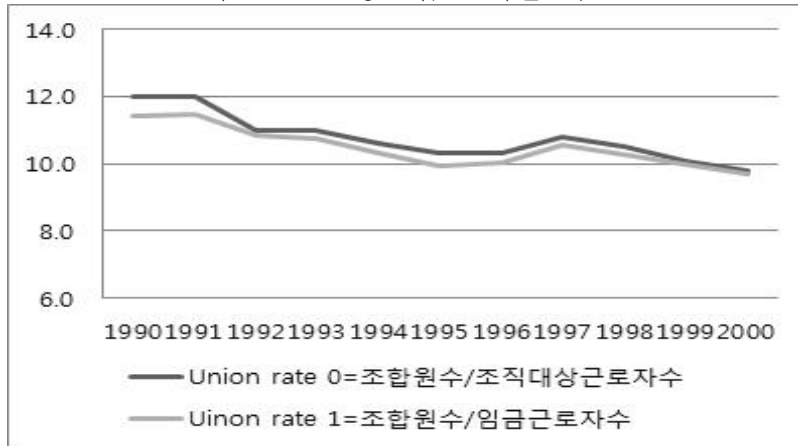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통계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0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동조합가입자수는 1963년부터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나 조직대상 근로자수를 집계하는 방식이 변화되어 통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1999년도부터의 조사 방식인 (임금근로자-공무원)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계산한다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 수의 경우 1979년-2013년까지 자료가 있으나 이기간 동안 414천명에서 615천명으로 공무원 수의 변동이 전체 임금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대상 근로자수(임금근로자-공무) 대신 임금근로자수를 분모로 하여 노동조합조직률을 계산하여 이용하도록 하겠다.

1999년 이후 조직대상근로자수를 분모로 한 경우와, 임금근로자수를 분모로 한 경우 노동조합조직률을 구해서 비교해보면 오차가 0.1%에서 0.5%내외로 근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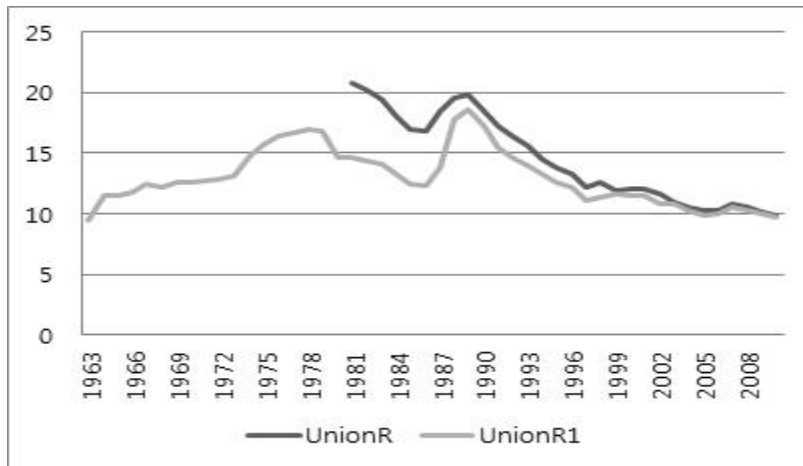
<그림 13> 노동조합 조직률 비교



출처: 통계청, 직접 산출

<그림13> 의 UnionR은 통계청에 발표된 자료(1980년부터 존재)이며, UnionR1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계산한 결과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두 자료의 갭이 큰 이유는 통계청 자료가 1988년부터 상시고용자에서 (상시고용자+일용근로자)로 조직대상근로자수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14 > 통계청 자료와 노동조합조직률 비교



주: UnionR: 통계청의 노동조합 조직률
 UnionR1: 통계의 일관성 유지하여 산출한 노동조합조직률

⑨ 신자유주의 더미

신자유주의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 나머지 기간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겠다. 15)

15) 신자유주의의 영향 외에 정권교체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지니계수가 1963년부터 2007년까지라서 두 변수가 완전히 일치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추후에 통계청 시계열이 장기로 확보된다면 두 변수의 구분이 가능할

<표5>는 분석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의 정의를 표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며, <표6>에서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5 > Variable Definition

변수	변수 설명	정의	자료 출처
GDP GDP2	1인당 GDP(원)	$\ln(\text{GDP}/\text{pop})$	통계청 국민계정 통합
OLD	노년 부양비	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MidSt	중등학력인구 비율	중등학력인구 x 중등학교취학 률/학력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World Bank
Unem p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mpD	일용직 비율	일용직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mpT	비상용근로자 비율	(일용+임시직근로자수)/임금 근로자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XMY	무역의존도	수출입액/국민총소득(GNI)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템
FDI	해외직접투자 비율	FDI/GDP(%) (USD기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 템 World Bank
TaxR	조세부담률	총 조세액/GDP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CPI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Union R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가입자수/임금근로자 수	통계청
NeoL D	신자유주의 더미	1998-2007년까지 1, 그 외 0	

<표6>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변수의 수	평균	분산	최소값	최대값
GDP	51	14.46348	2.284532	9.816079	17.16334
OLD	51	8.515679	3.364269	5.590956	16.71933
MidSt	43	16.38936	3.292295	8.304442	20.75586
Unemp	51	3.976471	1.474122	2	8.1
EmpD	51	9.640031	1.261814	6.343254	12.73304
EmpT	25	29.28757	2.516965	25.53291	33.01457
XMY	51	65.67647	21.17506	20.2	113.5
FDI	50	0.887414	0.760352	0.019475	3.490041
TaxR	50	15.90885	2.740261	7.140301	19.6476
CPI	49	8.040007	6.763647	0.812286	28.70022
UnionR	48	13.0108	2.353074	9.417541	18.5988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만을 분석하겠다.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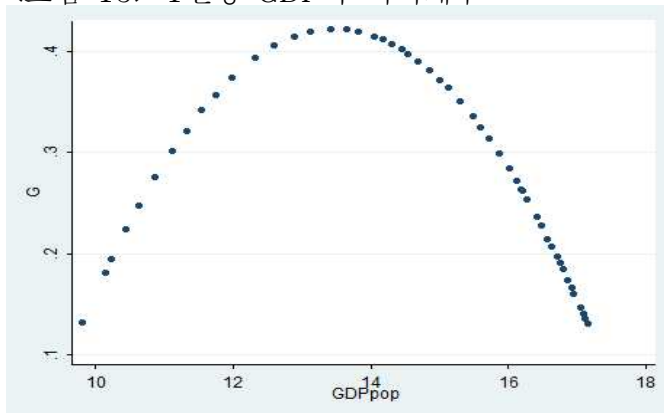
지니계수가 경제성장 및, 실업률, 고령화 등과 같은 경제변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통상회귀자승법(OLS)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7>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인당 GDP는 유의하게 양수이며, 1인당 GDP의 제곱 항은 모두 유의미하게 음수를 띤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의 관계를 보았을 때 Kuznets의 역 U가 가설이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 3의 회귀계수 값을 바탕으로 1인당 GDP와 지니계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도출해보면 <그림 15>와 같다. 16)

1인당 GDP의 평균값인 14.46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uznets의 가설이 설명하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현상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80년대 이후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한다. 그러나 최근에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균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GDP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만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소득불균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줄고,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큰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인해 전체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된다.(원종학, 성명재 2007)

<그림 15> 1인당 GDP와 지니계수



16) OLD, Unemp 등의 변수는 변수의 평균값을 계수에 넣어 계산하였다.

셋째, 실업률은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실직할 위험이 커지며 이로 인한 소득의 계층간 격차가 커진다는 Budd와 Whiteman(1978)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교육수준은 소득분배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이 유의하지 않았고, 부호도 일관되게 나오지 않았다. 이는 인적자본의 형성 또는 교육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변수가 교육수준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적자본형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중등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취학률은 이미 1985년도에 90%를 넘어섰고 거의 100%에 가까워서 교육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적자본 및 교육수준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중등학생비율 외에도 GDP대비 공교육지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시계가 짧아(1998-2012년) 분석할 수 없었다.

다섯째, 경제 개방 및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무역개방과 자본개방이 서로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NI 대비 수출입총액(대외 의존도)으로 대변되는 무역 자유도는 지니계수를 감소시켜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지니계수를 증가시키고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개방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해외직접투자가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Sato and Fukushige(2009)와 Feenstra and Hanson(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고용안정성과 관련해서 일용직비율의 증가는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은 일용직 외에 임시직을 포함한 비상용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나, 데이터의 한계 상 일용직비율로 분석을 하여서 고용의 안정성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의 안정성이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된 199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시계를 짧게 해서 분석할 경우 고용안정성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가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소비세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소득세비중이 낮아 조세부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 약하고, 그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소득 불균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지니계수가 감소하고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호가 음(-)으로 일정하게 나왔다. 이는

Blinder 와 Esaki(1978)가 1947-1974년의 미국자료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및 노동조합 조직률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의 기본이 되는 Model3에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효과를 신자유주의 더미를 넣어 분석한 결과 대체로 유의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변수를 넣을 경우 실업률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된 1998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두 변수가 상관관계가 높고 서로의 대리변수(proxy)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조직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조직률이 미국과는 달리 1963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어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7 >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한 지니계수와 소득불균등의 결정요인 (OLS)

변수	Model 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Model6
GDP	0.1149 (3.28)	0.3961 (8.76)	0.5799 (6.46)	0.5489 (5.19)	0.5190 (4.96)	0.5022 (5.23)
	-0.0043 (-3.17)	-0.0145 (-8.8)	-0.0215 (-6.36)	-0.0204 (-5.16)	-0.0195 (-5.02)	-0.0188 (-5.21)
OLD	0.0135 (3.77)	0.0265 (8.98)	0.0373 (6.68)	0.0356 (5.55)	0.0341 (5.39)	0.0324 (5.34)
Unemp	0.0101 (3.73)	0.0058 (2.98)	0.0053 (1.96)	0.0055 (1.98)	0.0043 (1.53)	0.0044 (1.61)
MidSt		-0.0014 (-0.99)	0.0012 (0.71)	0.0017 (0.86)	0.0026 (1.31)	0.0005 (0.21)
XMY			-0.0009 (-1.86)	-0.0007 (-1.28)	-0.0007 (-1.31)	-0.0006 (-1.09)
FDI			0.0111 (2.42)	0.0093 (1.63)	0.0132 (2.18)	0.0111 (1.87)
EmpD				0.0023	0.0025	

				(0.57)	(0.62)	
TAXR					0.0048	0.0051
					(1.59)	(1.73)
CPI						-0.0005
						(-1.3)
Constant	-0.5800	-2.5536	-3.7981	-3.6151	-3.4467	-3.2958
	(2.37)	(-8.04)	(-6.18)	(-5.18)	(-5.01)	(-5.03)
	0.4762	0.7998	0.8245	0.8204	0.8297	0.8375

() 안의 값은 t-value이다.

<표7>

변수	Model7	Model8	Model9	Model10	Model11	Model12
GDP	0.5470	0.5049	0.4879	0.4872	0.4509	0.4212
	(6.06)	(5.72)	(5.18)	(4.51)	(4.32)	(3.74)
	-0.0204	-0.0192	-0.0185	-0.0184	-0.0173	-0.0161
	(-6.05)	(-5.88)	(-5.24)	(-4.66)	(-4.57)	(-3.91)
OLD	0.0310	0.0277	0.0272	0.0293	0.0263	0.0254
	(4.53)	(4.14)	(3.97)	(4.17)	(3.83)	(3.61)
Unemp	0.0017	-0.0007	0.0001	0.0022	-0.0001	0.0009
	(0.47)	(-0.18)	(0.03)	(0.6)	(-0.04)	(0.24)
MidSt	0.0030	0.0045	0.0034	0.0046	0.0059	0.0046
	(1.47)	(2.16)	(1.19)	(1.78)	(2.33)	(1.5)
XMY	-0.0008	-0.0008	-0.0007	-0.0008	-0.0008	-0.0006
	(-1.84)	(-1.95)	(-1.37)	(-1.62)	(-1.72)	(-1.06)
FDI	0.0078	0.0119	0.0105	0.0071	0.0112	0.0092
	(1.57)	(2.32)	(1.80)	(1.42)	(2.16)	(1.55)
NeoLD	0.0348	0.0428	0.0371	0.0412	0.0486	0.0417
	(1.54)	(1.97)	(1.53)	(1.76)	(2.15)	(1.7)
UnionR				0.0019	0.0018	0.0020
				(1.01)	(0.97)	(1.08)
TAXR		0.0058	0.0058		0.0056	0.0057
		(2.02)	(2.00)		(1.97)	(1.96)
CPI			-0.0003			-0.0003
			(-0.57)			(-0.74)

Constant	-3.5213	-3.2625	-3.1514	-3.1385	-2.9165	-2.7237
	(-5.62)	(-5.36)	(-4.88)	(-4.28)	(-4.13)	()
	0.8325	0.8491	0.8452	0.8326	0.8487	0.8461

() 안의 값은 t-value이다.

최근에 소득분배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짧은 시계열이기는 하지만 1990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지니계수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8>에 정리되어 있다. 단기적인 시계이긴 하지만 이 경우 비정규직(비상용근로자)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요인분석에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및 해외직접투자액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통계청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형결정 요인(OLS)

GDP	GDP ²	OLD	Unemp	EmpT	Midst	XMY	FDI	Const
0.0609	-0.0031	0.0086	0.0061	0.0028	0.0001	-0.0002	0.0189	-0.4879
(0.09)	(-0.14)	(1.4)	(4.01)	(3.49)	(0.05)	(-0.87)	(3.36)	(-0.09)

()안은 t-value이다.

제5장 결론

한국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고령화와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의미하다고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70%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바 고령화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분석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고령화로 인해서 소득균형의 증가는 사회 및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개방도의 증가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은 해온 우리나라는 무역개방도가 매우 높으며, 수출에 따른 경제성장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소득불균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선진국 자본이 유입될 때 고숙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 및 ,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고 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세부담의 체계의 개편에 대해 시

사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장기적인 시계에서 한국의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자료의 한계상 노동조합의 효과나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에 통계의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구, 박창귀, 조운제,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8권 제 1호 2012, pp.85-116
- 곽노선, 김선아, “소득분배 결정요인 연구: FTA 효과 및 Kuznets 곡선 검증,” 국제
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2008
-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성명재, 박기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7권 제
4호, 2009, pp.5-37.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
원, 2011
- 권지훈,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2007
- 안국신, 박완규, 유향근,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
보 제6권 1995, pp.57-86,
- 안종범, “한국경제 발전모형의 정립을 위한 쿠즈네츠 가설의 재검토”, 경제학연구
제51권 제3호, 2003, pp.5
- 원중학, 성명재,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이건범, “불평등과 성장에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경로” 응용경제 제5권
제1호, 2003
- 채구목,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 분석 및 과제: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제59권 제1호, 2007
- 홍석철, 전한경,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2013, pp.72
- Alesina, A. and R. Perotti, 1996,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Vol.40(6), pp.1203 - 28.
- Atkinson A. B, Piketty T. and Saez E., “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11, 49:1, 3 - 71
- Blinder, A. S. and H. Y. Esaki. 1978. “Macroeconomic A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4): 604–609.
- Budd, E. C. and T. C. Whiteman. 1978. *Macroeconomic Fluctuation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nd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pp. 11–27
- Feenstra and Hans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2 (1997), pp. 371 - 393
- Frederick Solt, “Does Economic Inequality Depress Electoral Participation? Testing the Schattschneider Hypothesis” *Political Behavior*, June 2010, Volume 32, Issue 2, pp 285–301
- Frederick Solt “The Social Origins of Authoritarianism,”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2012 ,Vol. 65, no. 4 pp.703–713
- Galor, O. and J. Zeira,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60, 1993, pp.35–52.
- Jaumotte, Florence, Subir Lall, and Chris Papageorgiou “Rising Income Inequality: Technology, or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IMF Working Paper*, 2008 WP/08/185.
- Juhn, C. and S. Potter,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20, No.3, 2006, pp.27–46.
-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955, pp.1–28
- Mah, J., “The Impact of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The Experience of the Years 1981–1995*,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 6, 2001, pp. 151–161.
- Nolan, B,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2, 1990
- Ostry, J., Berg, A. and Tsangarides, C.,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April 2014
- Park, J. and Mah, J. “Neo-Liberal Reform and Bipolarisation of Income in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1, 2011, pp. 249–265.
- Sato and Fukushige, “Globaliz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 short and long run: The case of South Korea 1975 - 1995”, *Journal of Asian*

- Economics, Vol.20(1), 2009, pp.62–68
- Sylwester, K., 2000, “Income Inequality,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3, pp.379–398.
- Sylwester, K.,2003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and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55:3 2003, pp.249–262
- Visser J. and Checchi.D “ Inequality and the Labor Market:Union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edited by Salverda, Nolan and
Smeed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230–256
- Western, B. and Rosenfeld, J.,“Unions, Norms, and the Rise in U.S. Wag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 no. 4, 2011, pp.513–537.

신고전적 자유주의: 하이에크와 롤즈의 비판적 종합?1)

조 필 규(한밭대) · 황 재 홍(목원대)

-국문초록-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려는 자유주의 최근 조류이다.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경제적 자유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를 수용하면서도, 이는 시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도가 과연 롤즈의 정의이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는 사실상 자유지상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 역시 가능하다.

핵심어: 신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 사회정의

1)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3799).

1. 서론

전통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는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반대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는 경제적 자유 중 극히 일부만을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하는 대신 사회정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최근 토마시(J. Tomasi), 니켈(J. Nickel) 등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양자가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삶의 주체(responsible self-authorship)로서의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의 충분한 계발과 행사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전통 내의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흐름은 신고전적 자유주의(neoclassical liberalism)라 불리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을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는 것이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들을 검토한다. 먼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소위 경제적 예외주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살펴본 후, 이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상의 함의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4장은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비판을 소개한 후, 제5장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와의 관계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2. 경제적 자유: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대부분의 자유주의는 어떤 권리와 자유가 다른 권리와 자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한 권리는, 예컨대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정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본권을 구성한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에는 어떠한 권리가 기본권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데에 이견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입장이다.

자유는 흔히 권리 관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는 일종의 청구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권리 보유자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크게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권리와 자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수반한다. 이때 전자는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

한 조건하에서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생산적 활동에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Nickel, 2000)”, 즉 노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개인적 목적은 물론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자산을 획득,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의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판매를 위해 생산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개인적, 생산적 목적을 위해 저축 혹은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한다.

아담 스미스(A. Smith), 흄(D. Hume), 하이에크(F. A. Hayek)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다른 기본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유로 간주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흔히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로 불린다. 이에 따르면, 자유는 강제의 부재로서의 자유, 즉 개인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흄스의 전쟁상태(Hobbesian warfare)로 귀결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섭과 강제,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자유 영역은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은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타인으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유주의에서 그러한 영역이 바로 기본권을 구성하며, 이는 헌법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이때 경제적 자유, 특히 사유재산권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정의하는 기본권의 핵심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이는 인간 본성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선험적인 전제로부터 그 본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기본권이 연역되고 있다.

반면 노직(R. Nozick)으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에서²⁾ 자유는 그 자체로 좋은 것, 즉 본질적 선(intrinsic good)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기원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가 어떤 존재의 기원을 갖거나 또는 자유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유에 선행하는 다른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유는 본질적 선이라는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가 가치를 갖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유지상주의는 모든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이며, 다른 권리는 재산권의 표현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 역시 자기소유(self-ownership)라는 소유권의 한 가지 경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오직 시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들 권리에 의해서 제약된다.

2) 토마시는 자유지상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하위 분파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토마시의 분류를 따른다.

이에 비해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가 갖는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자유의 필요성을 불확실성과 구조적 무지, 즉 인간 이성의 한계로부터 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중앙의 어떤 계획자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면 이는 그 개인을 나쁜 상태로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타인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 개인에게 의사결정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보다 더 나쁜 상태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이에크는 자유의 문제를 지식의 활용문제와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자유를 구조적 무지에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도구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밀(J. S. Mill)은 경제적 자유를 다른 기본적인 자유와 다르게 간주하고 있다. 노동과 소유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그들의 삶에서 자유와 어떤 본질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경제 법률들이 재화의 생산을 지배하는 반면 그 재화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집단적 선택과 통제에 의존한다. 경제적 활동은 자유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과 소유에 대한 권리는 효용의 요건에 의해서 정의된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롤즈(J. Rawls) 등으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할 때 기본권을 다소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도덕적 역량(moral power)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자유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어떤 자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개인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없다면, 이들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가 된다. 여기에서 롤즈가 말하는 도덕적 역량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정의관에 대한 역량, 즉 사회적 협조의 공정한 조건을 상술하는 정치적 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두 번째는 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는 두 가지 ‘근본적 경우(fundamental cases)’를 언급하고 있다. 각 경우는 도덕적 역량 각각에 관련된다. 첫 번째 경우는 정의관과 관련하여 정의 원리를 사회적 기본 구조와 정책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경우에 사상의 자유, 평등한 정치적 자유 등이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요구된다. 두 번째 경우는 선의 개념에 대한 능력과 관련하여 그러한 개념을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에 대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시민들의 실천 이성 행사를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요구된다.

롤즈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필요한 자유, 즉 위 두 가지 근본적 경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자유 역시 기본적 자유가 된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personal property) 소유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결국 롤즈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의 역할은 시민들의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이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본질적인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들 중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기본적인 자유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두 자유주의 간에 결정적인 차이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 간주하는 데에 비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 중 극히 제한적인, 즉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 소유의 자유만을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한다. 즉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위 두 가지의 경제적 자유를 제외한 다른 경제적 자유는 개인들이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위 경제적 예외주의(economic exceptionalism)를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는 왜 다른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 다시 말해서 왜 다른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살펴볼 경제적 예외주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민주적 사회와 시민이라는 이상으로부터 좁은 범위의 경제적 자유만을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3. 신고전적 자유주의

1) 경제적 예외주의 비판

소극적 자유는 강제 부재이다. 그러나 모든 자유가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강제가 항상 부당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게 중요한 것은 강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로크(J. Locke) 이후 자유주의는 강제를 정당화함에 있어서 동의(consent) 혹은 정당화 가능성(justificability)이라는 개념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강제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승인할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사용될 때에만 그 강제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이다. 롤즈에 따르면, 정당한 정치적 권위

에는 헌법이 필요한데, 이때 그 헌법의 요체를 이성적이고 합리적 주체로서의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통의 이성이라는 관점에서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 원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만족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토마시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치적 규칙 체계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칙 체계를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정치적 규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도덕적 역량이라는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self-authorship) 시민들은 자신들의 앞에 있는 삶의 대안들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의 과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시민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 또 다른 도덕적 역량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동료들 자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능력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그들은 사회적 행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사회의 행위규칙을 승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러한 두 가지 도덕적 역량³⁾ 자유롭게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Tomasi, 2012b).

이처럼,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는 어떠한 자유주의 체계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즉 기본적 자유의 보호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목표에 우선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유가 다른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되는 정도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에서 하나의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에 대한 더 심각한 제한을 막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기본적 자유에 부여된 이러한 우선성은 중요한 제도적 함의를 갖는다. 기본적 자유가 정치적 정당성의 요건이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기본적 자유는 헌법 내에 뿌리박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 자유는 민주적 권위의 정당성을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행위는 부당하다. 사회적 목적은 헌법 내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어야만 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인 경제적 자유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자유가 도구주의적, 혹은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반면에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롤즈

3) 토마시는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을 롤즈가 말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이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구체적으로 상술할 것임.

가 말하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을 계발과 행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개인적인 자산 소유권 이상의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인정될 때에만 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결국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인정하는 경제적 자유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책임 있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반드시 사적 소유나 다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도구주의적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경제적 자유는 분산된 지식이 생산적 목적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경제적 자유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강제적이거나 집단적인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평화롭게 조정될 수 있게끔 해준다. 재산권은 정치권력이 부패하거나 억압적인, 혹은 무책임한 남용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막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많은 자유들의 중요한 측면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는 많은 다른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경제적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이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자유들이다. 이에 따라 노동의 자유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만을, 그리고 소유의 자유에서는 개인적인 자산 소유의 자유만이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제적 자유들은 기본적 자유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해서 토마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예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덕적 추론은 왜 다른 경제적 자유들은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그는 경제적 예외주의의 근거들은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더 폭 넓게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서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예로 들어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국가가 시민들을 필요한 부문으로 자의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 존중받는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중에서 많은 시간을 직업적 활동에 종사한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Tomasi, 2012a). 즉 직업의 선택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면, 왜 다른 노동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지가 모호해진다는 것이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제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의 자유란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조건하에서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생산적 활동에 자신의 신체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마시에 따르면, 기본권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개인의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자신의 노동력을 거래하거나 기부하는 자유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질적이어야 한다(Tomasi, 2012b).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추구하는가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들의 능력을 훼손한다(Tomasi, 2012a). 즉 노동의 자유가 더 폭 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그들 자신의 손에 있어야만 한다고 토마시는 주장한다. 그러한 의사결정권이 부정되는 조건하에서는 시민들의 평가적 지평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설사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제약을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회의 규칙을 승인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갖지 못한다(Tomasi, 2012b). 따라서 토마시의 결론은 생산에서의 노동의 자유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도록 하는 데에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일한 논리를 소유의 자유에도 적용한다(Tomasi, 2012b).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적인 자산 소유만을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한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자산이란 일상적인 소비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적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들 자산은 결코 누구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개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 이로부터 개인들은 타인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자산소유는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생산적 자산의 소유에 대한 권리 역시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주식이나 채권 등의 형태로 저축된 생산적 자산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독립적 주체로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안전을 제공한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단지 기업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권리는 통상적인 근로 계층 사람들을 국가 권력에 대한 강제적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선택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공하는 독립과 안전은 단지 일부 계층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그러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그러한 편익은 시민들의 공통의 경험이다.

또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생산적 자산의 소유는 단지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의 자립적 삶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사회는 시민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모습을 비교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 롤즈의 표현처럼,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열망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받아야만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삶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보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기본적 자유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였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르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인 자유로 폭 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사적 재산권이 다른 자유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예외주의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이로부터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폭넓게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적 계획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사회는 시민들이 책임 있고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훼손시킨다.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고용조건을 협상하거나 생산적 자산 소유를 사회적 편의에 대한 계산하에 두는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의 계발과 행사를 저해한다. 개인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저축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 임금이 수용가능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어떠한 의료보장을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자아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관심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롤즈에 따르면, 자아존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의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이와 관련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수단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단지 물질적 수단의 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다면, 자아존중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주체로 간주하는 데에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존중이 종교, 결사,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에 대한 존중은 경제적 자유

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정당성 요건으로서, 그리고 모든 시민 계층들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폭 넓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자유주의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자유주의 시민들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모든 권리가 모든 시민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가 되는 데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다른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소수의 자산 보유자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계발하는 데에 더 핵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자유나 종교의 자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도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이들 권리를 전체 권리 체계의 구성요소로서 간주해야만 한다. 기본권은 시민들이 좋은 삶에 대한 누군가의 견해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요컨대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결론은 정치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자신들의 평가적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술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계발하고 그들이 동료 시민들 역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조건을 상술해야만 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적인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이 이러한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사회정의와 시장민주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차이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입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강력히 거부한다. 예컨대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주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로 표현되는데, 이는 자생적인 사회질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정의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은 개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는 인간행동의 결과이지만 의도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생적인 질서이고, 따라서 자생적 시장질서에서의 분배 결과를 놓고 보수의 차이가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유의미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 행동의 의도한 결과를 놓고서는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야기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의도한 것도, 예측한 것도 아니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전부가 알려져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회정의는 제도평가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정의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인 사회적 결과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롤즈는 사회정의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최대의 평등한 자유원칙으로서 이는 “각자는 타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본적 권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a)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직책과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전제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한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회제도가 그 편익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도록 설계되었다면, 해당 제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에 따르면,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들의 형식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요구된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당성은 시민들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조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들에 대한 결과라는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때 사회정의는 사회제도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다시 민주적 정당성을 언급한다. 강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르면, 정치적 강제는 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인될 수 있는 원칙에 기초할 때에만 그 사용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헌법은 모든 시민들의 승인을 요체로 한다. 앞에서 지적 한 것처럼, 그러한 민주적 정당화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을 전제로 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의 역할은 이러한 도덕적 역량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사회정의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개인들이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국가는 시민들의 도덕적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물론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 안에서도 사회정의에 대한 요소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은 근로 빈민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부는 단지 총생산물의 관점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라는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가 일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지원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그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비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보장은 원칙적인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지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극단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국가는 시민들의 도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약의 근거, 즉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을 보호할 필요성을 역으로 사회정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다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론상에서의 차이를 낳는다. 즉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시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소극적 자유가 강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자유는 단지 자유일 뿐, 이는 권력 혹은 능력과는 다르다. 적극적 자유는 사실 능력에 대한 문제이지 진정한 자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라는 말을 용인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시민들의 실질적 자유가 달성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적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모든 방법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적극적 자유는 시장을 통해서, 즉 소극적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데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성장에 힘입어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거 소수의 특권 계층보다도 더 많은 적극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이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생적인 시장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 자유에 필요한 유인과 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자유가 반드시 소극적 자유를 대가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극적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법률적 보장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사회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이에크의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가 사회정의에 대한 반대와 동일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가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도덕적 근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때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는 경제적, 문화적 진보가 가능하며, 그 성과는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이러한 통합을 토마시는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로 부르고 있다. 즉 시장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효율성이나 자기소유라는 원리에 기초하기보다는 시장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 간주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승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역량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권리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라는 개념은 시장민주주의로 하여금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게 한다.

3)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책과 제도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부터 사회정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자의 결합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크게 사회민주적 방식과 시장민주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사회민주적 방식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의해 추구된 것인 반면,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민주적 방식을 옹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토마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제도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적극적으로 시장 분배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사회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 분배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는 시민들이 경제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정

부의 역할이 있어야 시민들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믿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적극적인 정부의 분배 역할에 반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시장민주주의적 접근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워진다. 다만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제도를 효율성, 효용, 자연권 등에 기초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임을 토마시는 강조한다. 일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권리가 될 경우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관료들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경제 규제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임을 토마시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시장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적 힘이 발휘되는 곳은 위험 물질 통제, 국방, 도로와 같은 진정한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분야이며, 단순한 규제보다는 시장지향적 해법을 추구한다. 물론 시장민주주의 체제도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기회균등을 위해 교육에 세금에 기초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다르게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바우처 제도를 선호하며,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시스템보다는 민간-공공 파트너십 시스템을 선호한다.

시장민주주의는 시장이 잘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재산권 정의, 계약 이행 뿐 아니라 금융업 등에서 나타나는 사기와 기만을 막기 위한 경제적 모니터링, 통화정책의 책임 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 경제 활동 영역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일률적인 최소임금, 작업시간 제한, 작업장 위생 규제 등에 대해 시장민주주의는 반대한다.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노동시간/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제는 시장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포괄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 현대와 같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시민과 근로자의 협상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온정주의적 개입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토마시의 주장이다.

시장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효율성, 효용 등 때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적 시민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해독제’라는 언급에서 시장지향적인 제도를 옹호하는 이유에 효율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등의 원리에 대한 토마시의 해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토마시에 따르면, 차등의 원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지만 차등의 원리 단독으로는 불평등의 정

도에 대한 어떤 상한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시민은 부의 불평등 속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소득과 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령 부의 축소를 가져온다고 해도 작업장과 생산자산의 민주적 통제의 경험에 특별히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성장주의적 성격의 사회민주적 접근과 달리, 시장민주적 접근은 최소수혜자의 개인적 부가 극대화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민주적 체계는 차등의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교육, 문화체험, 직업훈련, 의료 등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계급이 고착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과 유산에 대한 급격한 누진세, 생산수단의 공공소유, 기업 간 경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반면, 시장민주주의는 기초 소득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보장하지만 차등의 원리를 재분배의 원리로 보지 않는다. 시장민주주의는 사적인 경제자유를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전략을 통해 최소수혜자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시스템은 제품의 생산을 가장 잘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최소수혜자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시장 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확언은 상호성의 민주적 표현이라고 토마시는 주장하고 있다. 즉 시장민주주의는 성장하는 시장 사회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최소수혜자의 소득도 증가하므로 시장민주주의가 차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적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하시켜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마시는 주장하고 있다.

4. 신고전적 자유주의 비판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통합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시장민주주의의 야심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롤즈의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롤즈에 있어 기본권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모든 개인이 동일한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삼았다. 토마시 역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도덕적 역량을 강조하며, 이 점에서 자신과 롤즈의 차이는 초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롤즈의 초점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지위(status)에 초점을 두었다면, 자신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agency)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Platz, 2013). 롤즈는 사람들이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준수할 수 있고, 명확한 선의 개념을 추구할 수 있다면, 도덕적 역량이 충분히 실현된다고 주장한 반면, 토마시는 책임 있는 삶의 주체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

라 도덕적 역량이 실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롤즈보다 더 ‘완전한’ 도덕적 역량의 실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의 주체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경제적 자유 역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롤즈적 프레임에 근거하여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고든(Gordon, 2012)은 토마시와 롤즈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토마시는 정치철학에 대한 롤즈적 접근의 배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롤즈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도록 한 상황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선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사회로 이런 다원주의에서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논쟁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사회이다. 롤즈의 정의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 참여를 받아들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토마시는 이러한 종류의 민주주의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든의 주장이다. 토마시의 저술에 등장하는 주체들은 다른 시민과 함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가령 생산적인 기업 활동이 큰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은 옳을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특정 선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지 타당한 다원주의의 조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든은 주장하고 있다.

프리만(Freeman, 2012)은 책임 있는 삶의 주체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롤즈적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토마시를 비판하고 있다. 롤즈에게 소득과 부의 충분한 분배가 기본적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도덕적 역량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정의의 제1원칙의 일부로서 소득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이는 제2원칙인 차등의 원리에서 다루고 있다. 즉 어떤 권리가 도덕적 역량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롤즈적 의미의 기본권은 모든 시민의 도덕적 역량의 행사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생산수단 소유권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설계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도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삼는 것은 롤즈적 프레임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결합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 시도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자유지상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이다.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의 특징은 기본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인데 토마시는 최소수혜자로서의 이점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기본적 경제적 자유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 자유의 속성상 그것은 경제적 효율성, 공공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없다. 따라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면 공공교육, 공공의료, 실업급여, 노인연금 등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들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가격담합을 금하는 것, 독점규제 등도 모두 모두 기본적 경제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공정성을 물론 시장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것도 기본적 자유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 토마시는 자유지상주의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Freeman, 2012).

전통적으로 시장과 사회정의의 갈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 자유주의 사상의 주된 논의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시는 정치이론에서의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정의와 자유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자유지상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Berman, 2013).

셋째, 정치이론을 고전적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만 구분함으로써 기업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Anderson, 2012). 이론적 차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기업과 경제 주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것의 수정을 제안한 것은 시장민주주의의 기여라고 볼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수정을 위해서는 기업과 같은 권위적인 사적 정부(private government)를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앤더슨에 따르면, 토마시의 정치 스펙트럼에는 보수주의가 빠져 있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적이었고 사회적 위계, 권위주의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자들도 시장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지만 그 의미는 공적인 정부가 사적인 정부에 행사하는 힘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사적 정부가 자유롭게 권위를 누리게 함이었다. 토마시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에 방해가 되는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 작업장 민주화 등 노동 문제에 대해 특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로 권위주의적 사적 정부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앤더슨은 지적하고 있다.

넷째,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결합이라는 이론적 시도가 유용한 수정안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대단히 모호하고 빈약하다는 비판이다(Koppelman, 2012).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격상시켜서 규제나 재분배의 합법적인 범위를 축소할 것인가 아닌가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토마시는 무비판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공공선택이론을 받아들여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클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가난한 자의 부를 부자들에게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볼 때 국가에 대한 토마시의 불신이 정당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경제적 자유와 경제 민주주의

앞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토마시는 최저임금, 노동시

간 규제, 작업장 민주주의 등 노동 문제에 비판적이었고, 롤즈적인 사회민주주의 체계는 성장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지지했다고 비판하였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입각했을 때 이 원리는 기업 내부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달(R. Dahl)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롤즈에 있어 기본권은 두 가지 도덕적 역량에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에서 판단할 때도, 만약 사람들이 기업에서 수동적으로 일하게 되면 민주적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하고 자율적 주체로서의 능력에 손상을 받게 되므로 기업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롤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떤 기관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를 정의의 원칙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페퍼(Peffer)의 주장에 대해 롤즈는, 이것은 경제 조직이 사회주의적 형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의론은 특정 생산수단 소유방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Rawls, 1993, pp. 7-8). 이에 대해 경제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 통제가 반드시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의가 어떤 소유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사회정의에 대한 규범적 설명이 단지 특정 소유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롤즈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업 이외에 다른 조직체에도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장 민주주의만 도덕적 역량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롤즈적 의미의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O'neil, 2008).

이렇게 볼 때, 정작 롤즈 자신은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 자유가 책임 있는 삶의 주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하므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토마시의 논리는 오히려 작업장 민주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마시는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민일 토마시의 논리대로라면, 시민들의 자율성 손상을 막기 위해 작업장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토마시는 기본권으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주장할 때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토마시가 롤즈를 비판한 논리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개인적 자산의 소유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기본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를 롤즈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라는 기준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와 이용이 기본권이 된다면,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왜 기본권에서 제외되는지 토마시 논리에서 해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노동자가 통제하는 회사가 비효

율적이라는 이유로 작업장 민주주의에 반대했다면, 이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관에 의거하여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는 토마시의 입장은 겉치레일 뿐 사실상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 중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소유의 자유만을 기본적 자유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왜 이들 자유와 다른 경제적 자유가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이 도덕적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을 수용한다. 사회는 서로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시민들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조적 체제이며, 따라서 사회제도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도덕적 역량을 개발하고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해야만 한다. 이때 사회정의는 제도평가를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 된다. 시민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가 시장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들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 자유가 촉진될 수 있으며, 이는 경험적으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는 경제적 진보가 가능하며, 그 성과는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는 풍요로운 삶의 조건이자 도덕적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통합을 시장민주주의로 칭하고 있다. 시장민주주의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며,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재화와 기회의 재분배를 포함하는 사회정의의 일차적 필요조건이 된다. 요컨대 자유시장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적 정의에 대한 최선의 도덕적 해석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민주주의가 정부 역할의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시장 지향적 정책과 제도를 옹호함으로써 이들이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는 사실상 고전적 자유주의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주장의 타당성과 별개로 과연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의 통합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경제적 자유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가 롤즈의 정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둘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정과 시장에 대한 신뢰는 결과적으로 자유지상주의와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셋째, 시장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적 정부로서의 기업이 갖는 또 다른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넷째,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결합이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빈약하다는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작업장 민주주의와 같은 경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의 도덕적 역량을 보호하는데에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토마시의 논리가 옳다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의 도덕적 역량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시장민주주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 소유의 자유 이외의 다른 자유들이 기본적인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 했다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작업장 의사결정과 같은 또 다른 경제적 자유는 왜 기본권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로버트 달, 2011,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배관표 역).
- 존 롤즈, 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황경식 역).
- Anderson, E. 2012, "Recharting the Map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Where is Government? Where is Conservatism" in *Liberalism, Libertarianism, Social Justice Symposium on Free Market Fairness*.
- Brennan, J. and J. Tomasi, 2012, "Classical Liberalism",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hilosophy*, Estlund, D.(e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5-132..
- Berman, S. 2013, "Review Symposium: Free Market Fairnes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5, No. 2.
- Freeman, S. 2012, "Can Economic Liberties Be Basic Liberties?" in *Liberalism, Libertarianism, Social Justice Symposium on Free Market Fairness*.
- Gordon, D. 2012, "Review: Free Market Fairness" *The Mises Review*, Vol. 18, No. 1.
- Koppelman, A. 2012, "Review: Free Market Fairness"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
- Nickel, J. 2000, "Economic Liberties" in *The Idea of Political Liberalism: Essays on Rawls*, Davion, V. and C. Wolf(eds.), Rowman & Littlefield.
- O'neil, M. 2008, "Three Rawlsian Route toward Economic Democracy" *Revue de Philosophie Economique*, Vol. 9, No. 1, pp. 29-55.
- Platz, J. 2013, "Are Economic Liberties Basic Right?"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pp. 1-22.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 Tomasi, J. 2012a, *Free Market Fair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omasi, J. 2012b, "Democratic Legitimacy and Economic Liber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29, No. 1, pp. 50-80.

제3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성장체제의 전환 (오후 4:00~6:30)

사회자: 이채연(전남대)

■ 피케티 이후의 맑스

발표자: 류동민(충남대)/주상영(건국대)

토론자: 박승호(경상대)

■ 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비판

발표자: 김공회(당인리정책발전연구소)

토론자: 이정구(경상대)

■ 소득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 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발표자: 서환주(한양대)

토론자: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적 과제

발표자: 홍장표(부경대)

토론자: 유철규(성공회대)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비율

류동민(충남대)·주상영(건국대)

1. 문제제기

이 글에서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Piketty, 2014)이 제기한 문제설정을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존 성과와 대비하면서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피케티의 이론을 자세하게 요약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¹⁾ "피케티에서 마르크스로(Marx after Piketty)"라는 관점은 피케티의 문제의식과 분석틀이 마르크스의 그것들과 충분히 양립가능할 것이라는 우리의 직관적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 먼저 2절에서는 피케티와 마르크스의 이론적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해 다룬다. 3절에서는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및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새로운 추정(주상영·진수민, 2014)에 기초하여 마르크스비율의 추계결과를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Piketty after Marx)"라는 연구방향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2. 피케티에서 마르크스로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제1의 기본법칙(the first fundamental law of capitalism)"과 "자본주의의 제2의 기본법칙(the second fundamental law of capitalism)"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단, α, β, r, s, g 는 각각 자본소득분배율, 자본/소득비율, 자본수익률, 저축성향 및 소득증가율이다.

$$\alpha = r \times \beta \quad (1)$$

$$\beta = \frac{s}{g} \quad (2)$$

(1)식은 자본수익률의 정의와 관련된 항등식이다. 반면, (2)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 자본/소득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²⁾

피케티의 모델은 (1), (2)식에서 $r > g$ 라는 역사적으로 성립해왔던 관계³⁾를 결합

1) 이에 관해서는 류동민(2014) 혹은 주상영·류동민(2014)을 참조하라.

2) 즉, "어떤 나라가 소득의 s 비율 만큼을 무한히 저축하고 국민소득의 성장률이 영원히 g 라면, 자본/소득비율은 점점 더 $\beta = s/g$ 에 가까워지며 그 수준에서 안정화된다."(Piketty, 2014: 168).

3) $r-g$ 는 역사적으로 계속 양(+)의 값을 유지하였으며, 20세기에만 예외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Piketty, 2014: 356, 그림 10.10).

함으로써 구성되며,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역사가 그러하였으며 21세기에 아마도 다시 그러할 것처럼),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커지면, 논리적으로 상속받은 부가 산출이나 소득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상속받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 중에서 일부만을 저축하더라도 자본이 경제 전체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거의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부가 평생의 노동으로 축적한 부를 큰 차이로 압도하게 될 것이며, 자본의 집적은 매우 높은 수준, 즉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근본적인 능력주의적 가치와 사회정의의 원칙과 잠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도달할 것이다.(Piketty, 2014: 26)

즉, (1)식과 (2)식으로부터 다음의 식을 얻는데, 여기에서 r 과 g 의 격차가 커질수록, 즉 $\frac{r}{g}$ 의 값이 커질수록 α 는 커지게 된다.⁴⁾

$$\alpha = s \times \frac{r}{g} \quad (3)$$

한편 (2)식은 균제상태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r 과 g 의 값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β 가 미래에 어떤 값을 가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인구증가율이나 생산성 증가율 등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피케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백여 년 동안 β 의 추이는 U자형 곡선을 나타낸다(Piketty, 2014: 165, 그림 5.1). 마찬가지로 α 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β 가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α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제 피케티 모델을 Duménil & Lévy(1993) 등에 의해 일반화된 마르크스 경제학의 분석과 비교해보자.

먼저 (1)식 자체는 항등식으로서 이윤율 분해식 (4)와 본질적으로 같다. 단, P, K, Y, W 는 각각 총이윤, 총자본스톡, 부가가치, 총임금을 나타낸다.

$$r = \frac{P}{K} = \frac{Y}{K} \frac{P}{Y} = \frac{Y}{K} \left(1 - \frac{W}{Y}\right) \quad (4)$$

4) 밀라노비치는 α 와 β 사이에는 α 가 커지면 β 가 커지고, 그것은 다시 α 를 크게 만드는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 loop)"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그 성립여부는 결정적으로 $r-g > 0$ 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Milanovic, 2014: 522). 그런데 (3)식 자체는 균제상태에서만 성립하는 식이므로 $r-g > 0$ 그 자체가 더 큰 α 및 β 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윤율은 "자본생산성"(Y/K)과 노동소득분배율(W/Y)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피케티의 기호로 표시하면 $r = \frac{1}{\beta} \times \alpha$ 이다.⁵⁾

그런데 (4)식 자체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을 가치범이 아닌 가격범으로 확인해보기 위한 대리변수로서 구성된 것이다. 즉, c, v, s 를 각각 불변자본, 가변자본, 잉여가치라고 할 때, 마르크스는 이윤율을 다음과 같이 가치범으로 표현하였다.

$$r = \frac{s}{c+v} = \frac{s/v}{c/v+1} \quad (5)$$

(5)식에서 자본사용적-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의 상승으로, 계급간 소득분배는 잉여가치율(s/v)로 표현된다. (4)식이 (5)식의 표현이 되는 이유는 "자본생산성"과 자본소득분배율(P/Y)이 각각 c/v 와 s/v 의 대리변수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자본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⁶⁾ 이른바 "마르크스의 경로(trajectories à la Marx)"(Duménil & Lévy, 1993)는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자본소득분배율 상승이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피케티의 (2)식에 대응되는 마르크스의 모델은 없다. 피케티는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에 관해 논의하면서 마르크스가 "지속적인 기술진보와 꾸준히 증가하는 생산성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Piketty, 2014: 10)함으로써, 성장률이 0이거나 0에 매우 가까워지는 특수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Piketty, 2014: 228).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 일종의 양가적 감정(ambivalence)을 가졌다는 점(Foley, 2006: 218)은 분명하다. 즉 마르크스는 이미 『공산당선언』에서부터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발전을 매우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그의 비전이 $g \rightarrow 0$ (따라서 $\beta \rightarrow \infty$)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케티와 마르크스 사이에는 자본개념이 서로 다르다.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수익률(rate of return on capital)은 "그 법률적 형태(이윤, 지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본이득 등)와 무관하게 자본이 일 년 동안에 얻은 수익을 측정"(Piketty, 2014: 52)한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윤율의 분모, 즉 자본스톡에 대한 정의에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 명확하듯이, 피케티는 자본을 사적 개인, 법인 및 정부가 가진 모든 자산의 스톡으로 정의한다.

이 책에서 자본은 어떤 시장에서 소유되고 교환될 수 있는 비인적자산의 합

-
- 6) 물론 후술하듯이 피케티의 자본 개념과 마르크스 경제학의 자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한편, 자본생산성에 따옴표를 붙이는 것은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자본이 생산적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의미로만 사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7)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는 것을 "자본생산성"의 저하로 표현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신고전학과 적으로 말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저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마르크스에게 한계생산성 체감의 개념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Duménil & Lévy(2009[2003], 89)는 이를 "혁신의 곤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수익성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자본생산성이 저하되는 혁신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계로 정의된다. 자본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금융적 및 전문적 자본(공장, 인프라스트럭처, 기계, 특허 등)은 물론 모든 형태의 부동산소유(주거용 부동산 포함)를 포함한다.(Piketty, 2014: 46).

피케티 자신도 명확하게 밝혔듯이(Piketty, 2014: 47), 이와 같은 자본개념은 사실상 부(wealth) 개념이다. 예를 들어, 노예제가 존재하던 시절 미국 남부의 자본 안에는 노예도 포함된다.⁷⁾ 실제로 좌우파를 막론하고 피케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 중의 하나도 다름아닌 이 자본개념이다. Harvey(2014)나 Fuchs(2014) 등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은 피케티의 자본개념에 집중되어 있다. 즉, 자본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규정에 따를 때, 당연히 피케티의 자본개념은 문제가 된다.⁸⁾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피케티의 자본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비판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

첫째, 마르크스 자신도 이자나 지대 등은 잉여가치로부터 파생된 형태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자본수익률의 분자에 관한 한 피케티와의 차이는 없다. 분모의 경우에도, 『자본론』 제2권의 자본순환에 관한 이론을 감안한다면, 피케티의 개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마르크스는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으로의 자본의 형태변화(metamorphoses)⁹⁾를 강조하였다. 물론 『자본론』에서는 일정액의 화폐가 일시에 생산자본으로 전환되고 다시 상품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주어진 시점에서 세 가지 자본의 형태가 병존한다는 점, 예를 들어 자본의 회전과정에서 유희화폐자본이 규칙적으로 방출된다는 점 또한 매우 강조하였던 것이다. GM의 최고경영자였던 알프레드 슬로언(Alfred Sloan)의 회고는 자본가의 머릿속에서도 이러한 자본개념이 현실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판매스케줄, 급여, 원료비 지급 등을 감안하여 한 달 정도 미리 매일 매일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우리는 초과현금을 주로 단기 정부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전에는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부터 소득을 얻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사용하는 자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Saros, 2008: 208에서 재인용).

7) 여담이지만, 이것 자체는 노예제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즉, 인간)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마르크스의 규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이다. 피케티는 자본 개념을 이렇게 넓게 정의하면서도 인적 자본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데, 노동서비스는 일정한 시간 및 공간에만 국한되어 거래되는 것이라는 설명(Piketty, 2014: 46) 또한 마르크스의 노동력/노동 구분의 맥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8)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Milanovic(2014)도 피케티가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부와 "비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부를 구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9) 흥미로운 것은 피케티도 자본 중에서 주택이나 농업용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류경제학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Piketty(2014)의 제3장의 제목은 "자본의 형태변화"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적 개념에 적합한 자본개념(즉, 자본수익률의 분모)에는 전통적인 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유희화폐자본의 활용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피케티의 자본수익률과 전통적인 마르크스의 이윤율 사이에 제3의 개념, 즉 분모가 후자에서보다는 크고 전자보다는 작은 어떤 크기가 될 것이다.¹⁰⁾ 이와 관련하여 피케티 자신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은 저하하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비판(Maito, 2014)도 재비판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피케티의 자본수익률은 일정하면서 동시에 마르크스적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이 양립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W, K 를 각각 피케티의 자본개념(즉, 부), 마르크스의 자본개념이라 하면, $\frac{P}{W}$ 는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frac{P}{K}$ 가 하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례로 W 의 구성요소 중에서 K 가 아닌 부분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고 해서 피케티를 "마르크스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일까?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을 실증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둘째, 불평등의 문제를 자본-노동간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피케티는 마르크스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피케티는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의 틀 안에서 주어진 자료를 설명함으로써 주류경제학적 틀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특히 재산에 의존하는 바가 커진다는 점, 즉 능력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률을 피케티처럼 정의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마르크스적 이윤율이 저하하더라도 피케티적 자본수익률이 안정적이라면 불평등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능력주의의 원칙이 관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의 마지막 부분인 "이른바 시초축적"에서 자본주의의 탄생 그 자체가 "이마에 땀 흘린 노동"의 성과가 아니었음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시초축적에 관한 논의는 마르크스에게는 부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마르크스에게는 이윤생산과정 자체가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이므로, 축적된 재산을 통해 불평등이 강화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은 부차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 불평등의 전모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혹은 갈 것인가)를 추적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면, 피케티 모델이 마르크스 모델에 비해 더 일반적인 것이 된다. 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착취가 발생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만들어짐을 밝힌다는 마르크스의 연구목적에 충실하자면 피케티가 보여준 것은 그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10)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토지가 전체 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은 슬로언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윤율 추계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자본스톡 중에 토지의 상당부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실성을 갖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부동산 및 공장, 설비 등은 자본이 아니다. 사용되는 자본의 수익률이 높다면, 이는 자본의 일부가 유통에서 철수되어 사실상 파업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Harvey(2014)의 주장은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3. 마르크스비율의 추정

이제 (4)식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의 자본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및 이윤율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피케티는 소득(Y) 개념으로 ‘국민총소득 - 고정자본소모’를 사용한다. 분배 측면에서 볼 때 ‘GDP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고정자본소모’인데, 여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고정자본소모’를 뺀 것으로 정의한다. 즉, 피케티가 사용하는 소득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에 정부에 귀속되는 순소득(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을 합한 개념이다. 피케티는 이를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이라 부른다.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피케티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정부에 귀속되는 소득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피케티는 이를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합으로 본다. 그런데 이를 한국의 시계열에 적용할 때 기술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08 SNA』 기준에 따라 R&D 등을 GDP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시계열은 2000년부터 공표되므로 표본의 확보를 위해 구계열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마르크스비율을 추정하기 위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본(K)의 측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피케티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자본, 즉 부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민간 자본에 한정된 분석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즉, 좁은 개념부터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다.¹¹⁾ 따라서 토지와 같은 비생산자산(non-produced asset)을 제외하고 민간의 생산자본스톡(productive capital stock)을 사용하였다. 또한 생산자본스톡 중에서도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지식생산물자산은 제외시켰는데, 이는 구계열의 소득 자료와 대응시키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이윤(P)은 법인의 영업잉여에다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소득의 일부를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므로,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상영·전수민(2014)의 보정방식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일종의 혼합소득)의 경우 일부는 자본소득, 일부는 노동소득일 것이나, 이것이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구별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서의 비율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피케티가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자영업소득 추계가 이루어진 1975년부터 계산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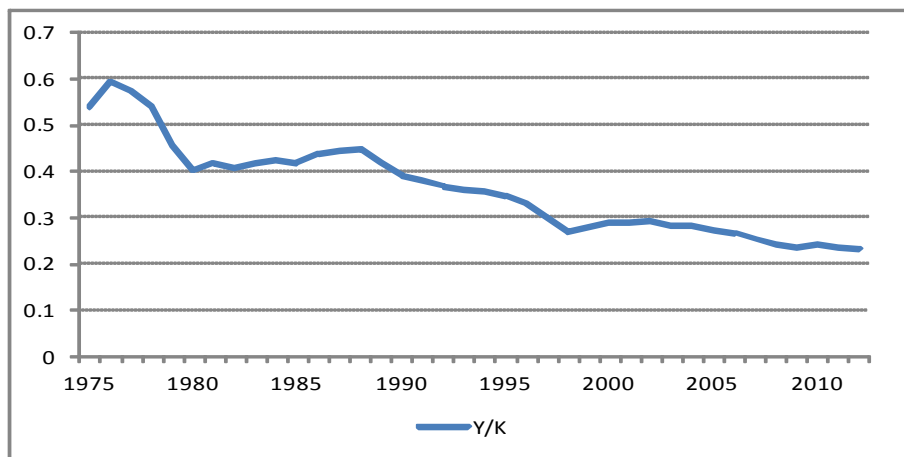
- (1) 자본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2) 이윤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그 후 반등하여 7-8%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1)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 상 민간 부문은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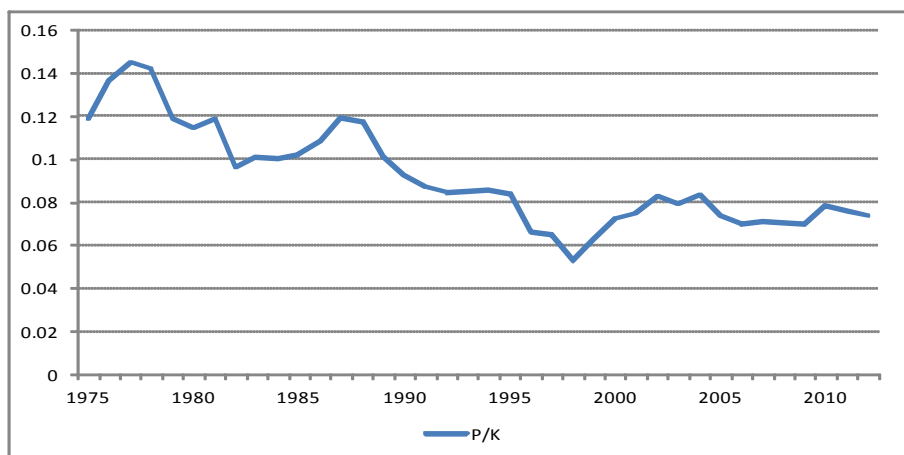
(3) 자본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즉,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본생산성과 이윤율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위기 이후 패턴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자본생산성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윤율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자본소득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림4>는 마르크스 비율의 상대적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자본생산성, 이윤율, 자본소득분배율이 동반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구조 전환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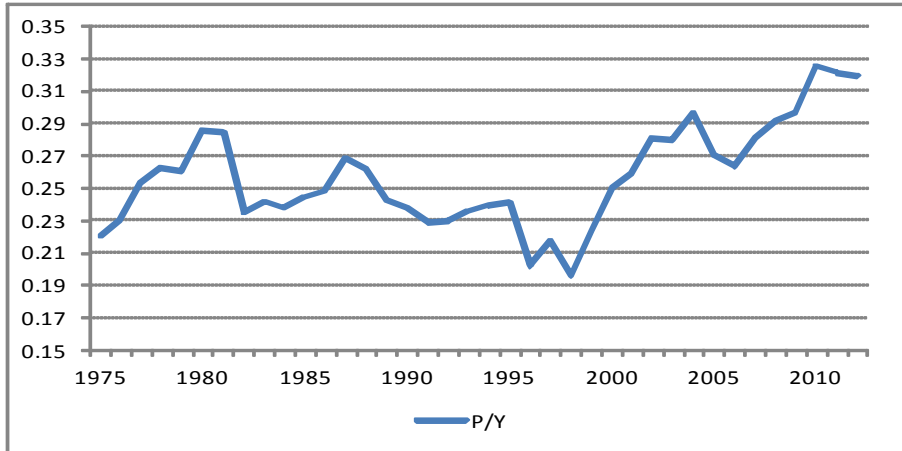
<그림1> 자본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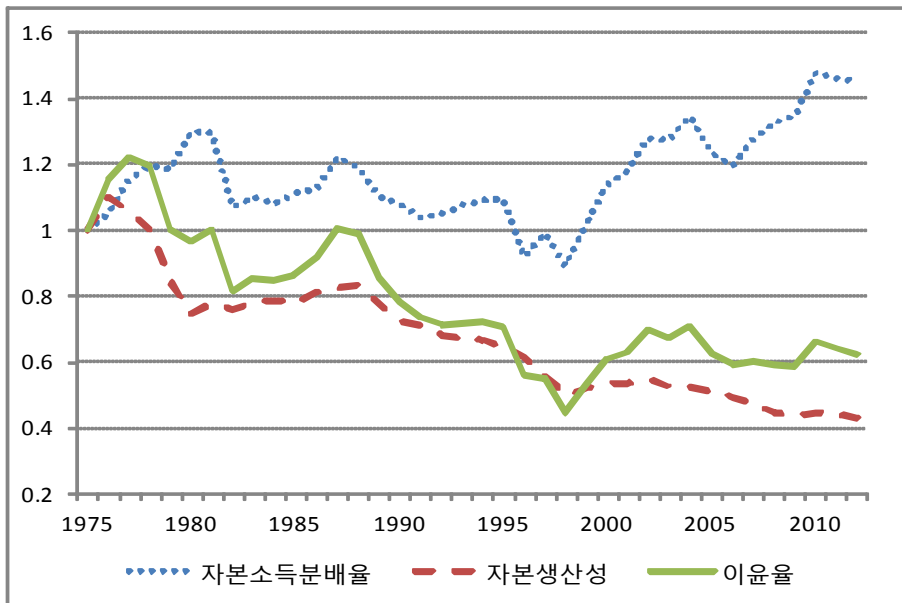
<그림2> 이윤율 추이



<그림3> 자본소득분배율 추이



<그림4> 마르크스 비율의 상대적 변화 추이



각 변수에 대해 1975년의 값을 1로 놓아 상대적 변화 추이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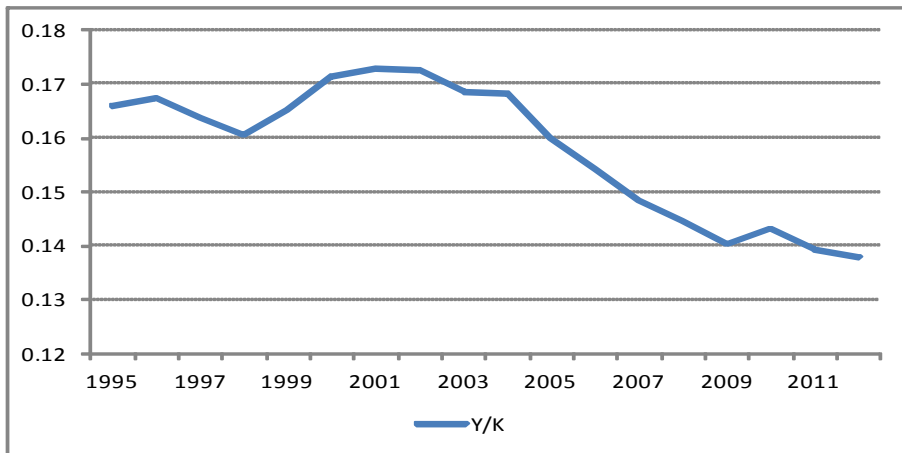
이제 자본의 개념을 민간의 실물자본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 개념으로 확장하여 보자. 단, 주택자산(주거용 건물 및 부속토지)은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케티의 자본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주택을 제외할 경우에는 부/소득비율의 급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생산’ 과정 및 노동과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본의 개념을 어디까지 보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경제주체가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고 보는 시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자산을 제외한 비율 분석도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의 자산별 순자본스톡 시계열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본을 정의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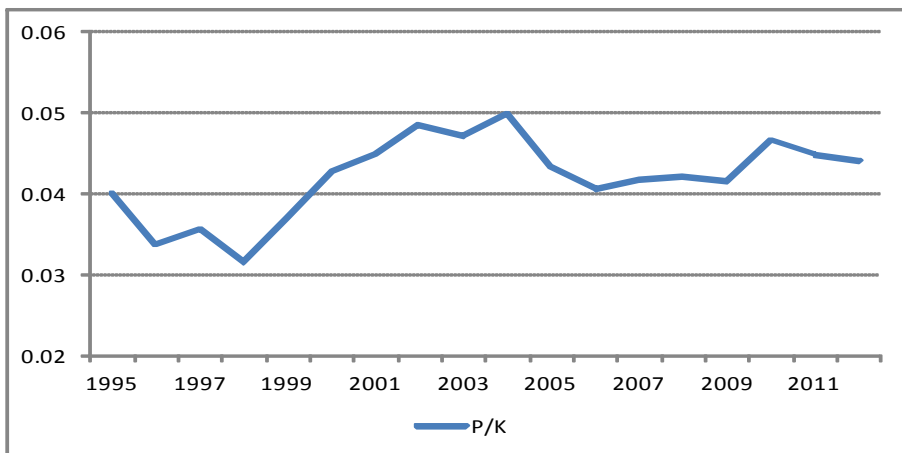
$$\begin{aligned} & \text{비금융생산자산} (- \text{주거용건물} - \text{지식생산물} - \text{채고자산}) \\ & + \text{비금융비생산자산} (- \text{주거용건물} \text{ 부속토지}). \end{aligned}$$

여기서 시계열이 1995년 이후로 한정된 것은 국민대차대조표 상 비금융비생산자산이 1995년부터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채고자산을 제외한 것은 국민대차대조표 상 채고자산이 2000년 이후로만 집계되기 때문에 전체 시계열을 1995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지식생산물자산을 제외한 것은 구계열의 국민소득과 대응시키기 위함이다. 결국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전통적 실물자본에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여타의 토지자산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확장된 자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5>-<그림8>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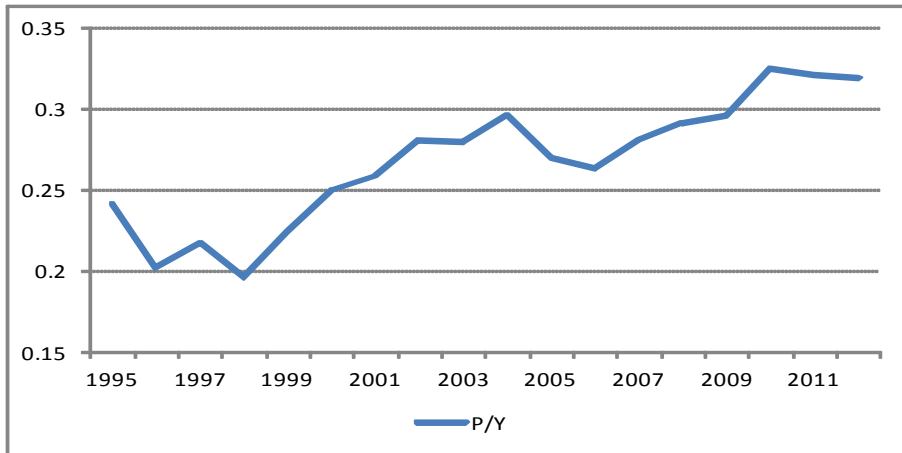
<그림5> 자본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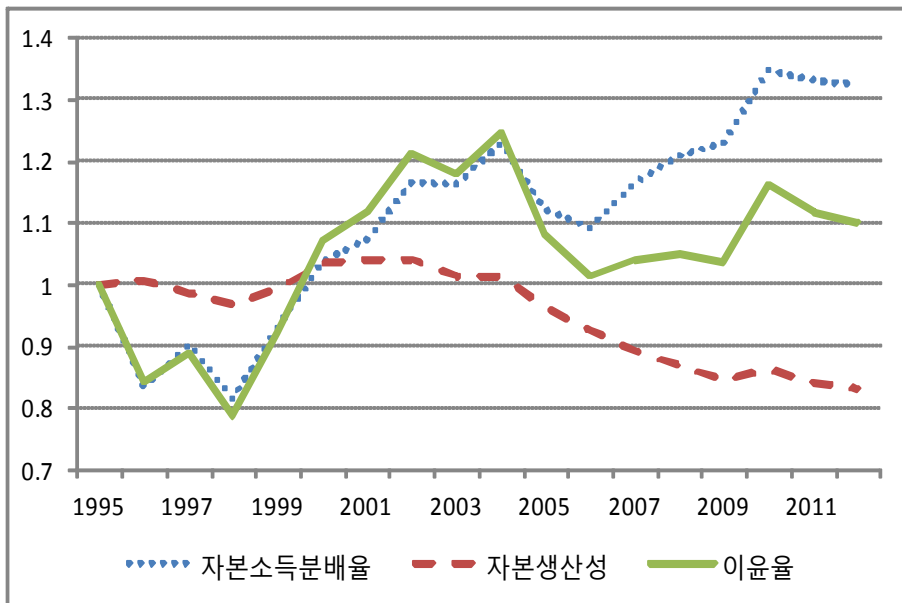
<그림6> 이윤율 추이



<그림7> 자본소득분배율 추이



<그림8> 마르크스 비율의 상대적 변화 추이



각 변수에 대해 1995년의 값을 1로 놓아 상대적 변화 추이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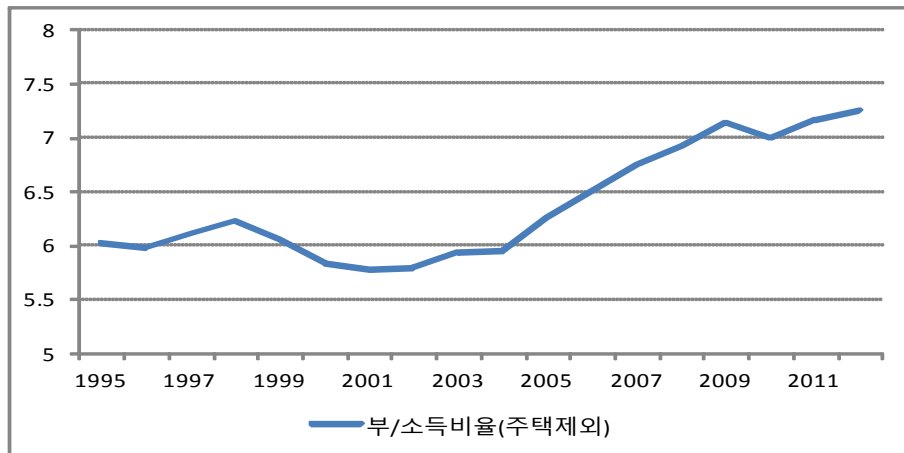
자료의 제약 상 분석 기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자본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지만 이윤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¹²⁾ 특히 자본소득

12)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에 입각한 연구(안정화, 2009; 정성진, 2013)에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우리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다. 참고로 마르크스비율 추계에 관한 고전적 연구인 Shaikh & Tonak(1994) 역시 잉여가치율을 추계할 때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정성진(2013)의 경우 1996-2010년 동안 제조업의 자본생산성은 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며, 홍장표(2013) 역시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1999-2009년 동안 자본생산성이 6.07% 상승한 것으로 분석한다. 아

분배율은 1995년 이후 10년간 이윤율과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며 움직였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괴리가 발생하였다. 자본생산성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윤율, 즉 자본수익률(r)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경제성장률(g)이 한 단계 하락한 기간과 일치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g 의 하락에도 r 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피케티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면 $r-g$ 의 확대가 불평등 악화에 기여하였을까? 부/소득비율(β) 추이를 통해 피케티 주장의 타당성을 잠정적으로나마 평가해 보기로 하자. <그림9>는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부/소득비율(β) 추이를 보여준다. 외환위기 전후로 부/소득 비율은 6 정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현재는 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주택을 제외하면 부/소득비율의 급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피케티에 대한 일부 비판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십년 동안 α , β , $r-g$ 의 동반 상승 추세가 발견된다. 이 기간 동안 지니계수, 십분위배율 등으로 평가된 각종 개인별 분배 지표도 크게 악화되었음을 상기하자.

<그림9> 주택을 제외한 부/소득비율 추이



4.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

피케티는 주어진 자료를 설명할 때 주류경제학적 틀을 포기하지 않는다. 부/소득 비율(β)이 상승할 때 자본소득분배율(α)도 함께 상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왜 부/소득비율의 증가와 노동소득분배율($1-\alpha$)의 하락이 동시에 관찰되는가? 피케티는 이를 간단히 대체탄력성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Piketty,

마도 자본스톡 데이터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나, 이 부분은 추후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다만 피케티와의 관련에서 보면, 자본생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을 통해 이윤율이 회복되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고전학파적 대체탄력성 개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또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계급투쟁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준다.

2014: 221).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α 와 β 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피케티에 대한 비판이 집중된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α 와 β 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일부 연구도 있지만, 1보다 작다는 결과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체탄력성, 즉 신고전과 생산함수에 기초한 한계생산력설로 피케티의 체계를 완성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¹³⁾

피케티가 자신이 집계한 부/소득비율(β)과 자본소득분배율(α)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사실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장 큰 논란거리이다. 피케티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성장률(g)은 과거에 비해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부/소득비율(β)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다.¹⁴⁾ 그러나 만약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자본소득분배율(α)은 떨어질 것이다. 바꾸어 말해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의 예측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분명 이론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피케티는 논의구도 자체를 집계적 생산함수 안에 위치지움으로써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기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류경제학의 틀 안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피케티 자신이 주목한 변수들의 추세와 상관관계가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 그래 왔을 뿐 반드시 미래에도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자본논쟁에 대해서 실용주의적 태도로 가볍게 넘기는 것도 이러한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계생산력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강하게 드러난 구절 등을 살펴보면,¹⁵⁾ 그 스스로 이론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체탄력성에 입각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가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 가는 지점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분명히 생산함수의 기술적 요인만으로 분배를 설명하는 것의 가장 유

13) 특히 한국의 경우 부/소득 비율의 상승에 대비한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은, 대체탄력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

14) 저축률(s)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함은 식(2)에서 자명하다. 또한 효용함수(통상적으로 1보다 큰 상대적 위험기피도를 가정)를 넣어 저축률(s)을 내생화한 Cass-Koopmans 모형에 따르면 $s = s(g)$ 이지만, g 가 증가할 때 s 가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으므로 $\beta(=s/g)$ 는 g 의 감소함수이다. 즉, g 가 하락할 때 β 는 상승한다.

15) 다음과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다.

“자본의 한계생산력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사회에서 자본-노동의 분할을 정의하는 제도 및 규칙과는 독립적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두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지 및 도구의 소유자가 자신의 자본을 이용한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자본의 수익률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은 유용한 것이며, 그의 한계생산력은 그 수익이 외부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경우와 같을 것이다. 경제시스템이 자본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집산화하여 (예를 들어 소련처럼) 자본에 대한 모든 사적 수익을 제거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 성립한다. 그 경우 자본의 사적 수익은 “사회적” 수익보다 적지만, 후자는 여전히 추가적인 자본 단위의 한계생산력으로 정의된다. 자본의 소유자가 새로운 일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생산물을 그들의 자본소유(그들의 과거 저축이건 선조들의 저축이건간에)에 대한 지불로서 받는 것이 유용하면서도 정당한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결정적인 질문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그것을 묻지 않는다.”(Piketty, 2014: 215)

력한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피케티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외에도 계급투쟁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작가능한 변수가 아니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예컨대 Duménil & Lévy(2014[2011])처럼 임금소득자 안에서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추이를 검토하면서, 상위임금소득자와 자본가의 금융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동맹이 강화한 것을 1970년대 말 이후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어떤 설명방식을 택하건 간에, 대체탄력성에서 멈추는 것은 마치 상자 앞에서 멈추는 판도라와도 같은 셈이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여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바로 "마르크스에서 피케티로 (Piketty after Marx)" 가는 연구방향이 성립한다는 뜻일 것이다.

<참고문헌>

- 류동민. 2014. "마르크스 이후의 피케티 혹은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1권 제3호.
- 안정화. 2009.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사회경제평론』 제32호.
- 정성진. 2013. "한국자본주의에서 위기와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회 편,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 한울.
- 주상영·류동민. 2014. "한국경제의 피케티비율①" 『한겨레21』 6월 30일자.
- 주상영·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사회경제평론』 제43호.
- 홍장표. 2013. "한국 제조업의 이윤율 추이와 변동요인,"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0권 제4호.
- Duménil, G. & D. Lévy. 1993. *The Economics of the Profit Rate*. Edward Elgar.
- Duménil, G. & D. Lévy. 2009[2003]. 김덕민 옮김, 『현대마르크스주의경제학』, 그린비.
- Duménil, G. & D. Lévy. 2014[2011]. *The Crisis of Neoliberalism*, 김덕민 옮김, 『신자유주의의 위기』, 후마니타스.
- Foley, D.K. 2006. *Adam's Fallacy: A Guide to Economic The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Fuchs, C. 2014. "Thomas Piketty's Book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Karl Marx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Internet." *triple C: Communication, Capitalism & Critique*, 12(1).
- Harvey, D. 2014. "Afterthoughts on Piketty's Capital." davidharvey.org
- Maito, Esteban Ezequiel. 2014. "Piketty against Piketty: the tendency of the rate

- of profit to fall in United Kingdom and Germany since XIX century confirmed by Piketty's data." MPRA Paper No. 55839.
- Milanovic, B. 2014. "The Return of "Patrimonial Capitalism": Review of Thomas Piketty's *Capita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2(2).
- Piketty, T. 2014. trans. by A. Goldhammer,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aros, D. E. 2008. "The Turnover Continuum: A Marxist Analysis of Capitalist Fluctuation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40(2).
- Shaikh, A. & E. Ahmet Tonak. 1994. *Measuring the Wealth of N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Accou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99%를 위한 경제학인가, 9%를 위한 경제학인가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비판

김공희(英SOAS)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해석과 비판

김 공 희
ghgimm@gmail.com

1

피케티는 누구인가?

□ Thomas Piketty의 간략한 Bio

- 프랑스 파리 출신(1971년생)
-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및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 취득(1993년)
- MIT 경제학부 조교수 활동 후 파리로 돌아와 현재 파리경제대(PSE) 교수
- 프랑스 사회당에 가까움(올랑드 부유세 지지)
- 좌파 성향의 “리베라시옹”지 칼럼니스트

□ 피케티 on 피케티

-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 “나는 공산당에 유혹당하는 세대가 아니었다.”
- “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은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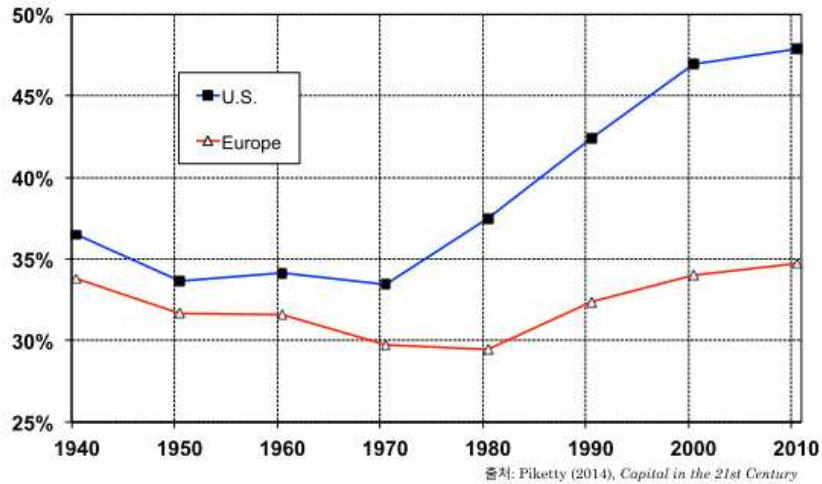


2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약

(1) 197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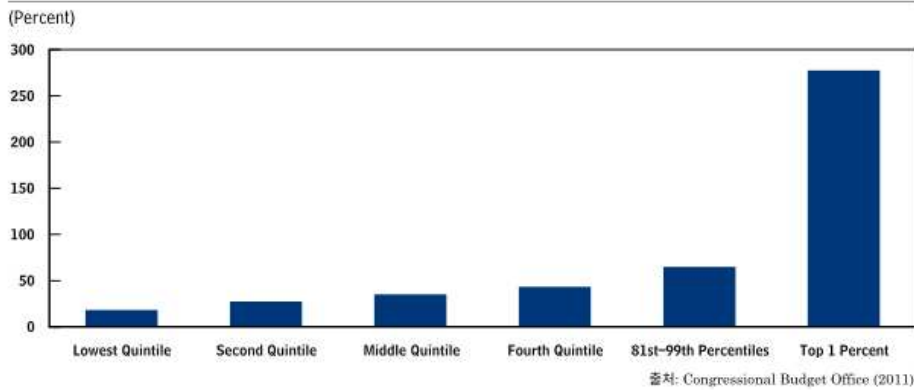
국민소득 중 상위10%가 가져가는 몫(미국, 유럽; 1940~2010)



3

... 이러한 문제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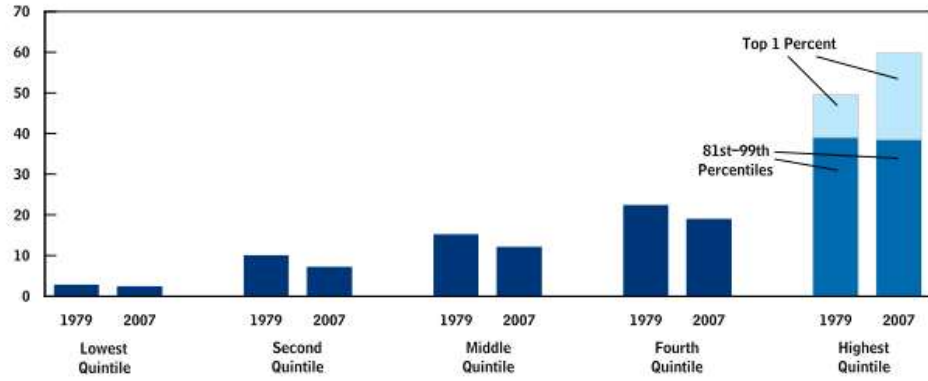
Growth in Real After-Tax Income from 1979 to 200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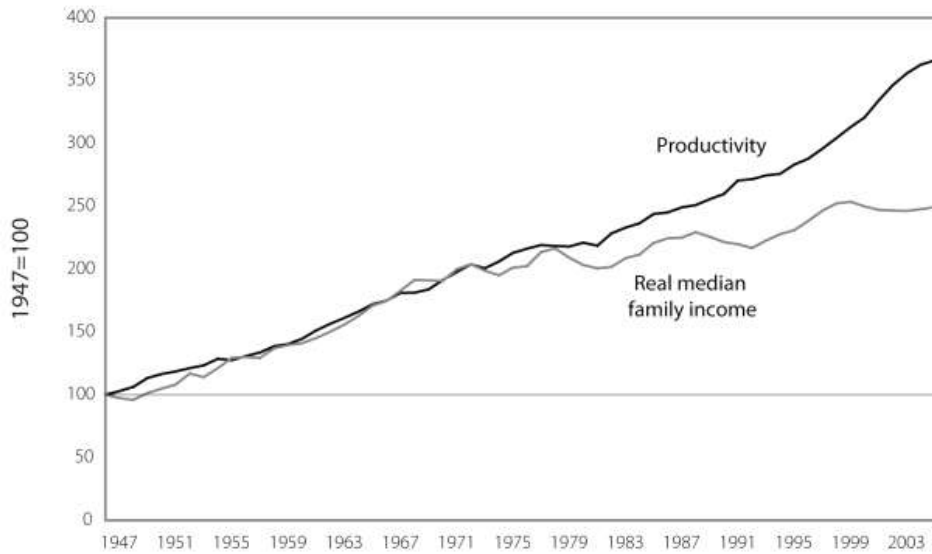
Shares of Market Income, 1979 and 2007

(Percent)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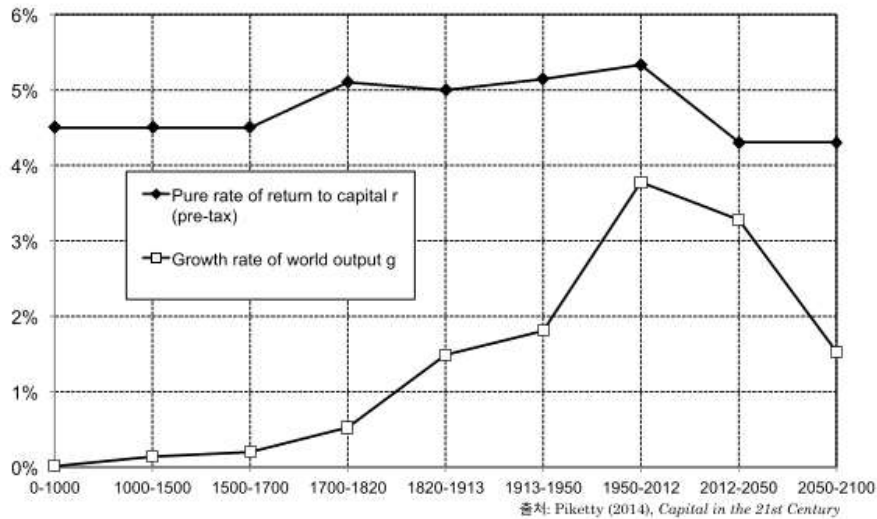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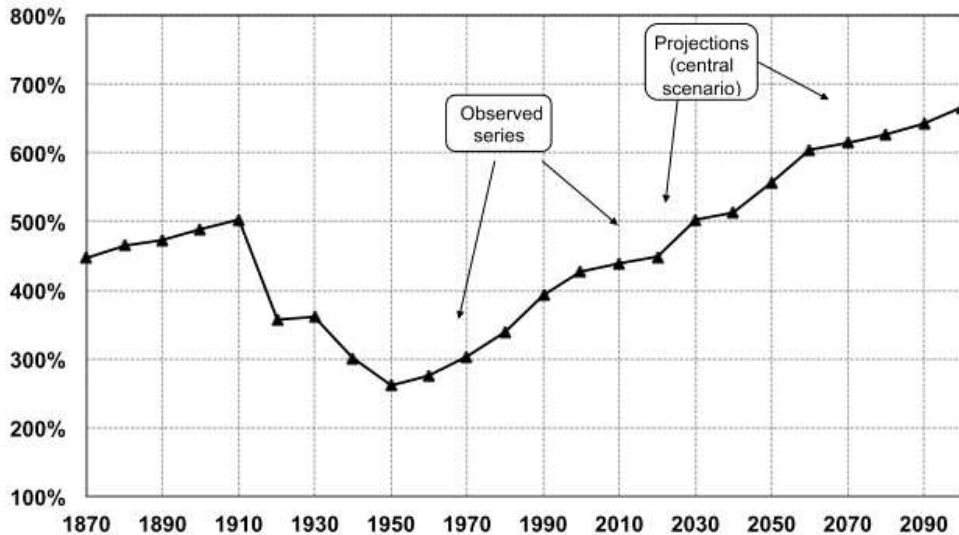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약

(2) 이는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관련됨. 즉 소득불평등 심화 원인은 자산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크기 때문으로, $r > g$ 이면 경제성장에 따라 GDP중 자산소유자가 가져가는 몫이 점점 커질 것이며, 자산의 상대적 규모도 점차 증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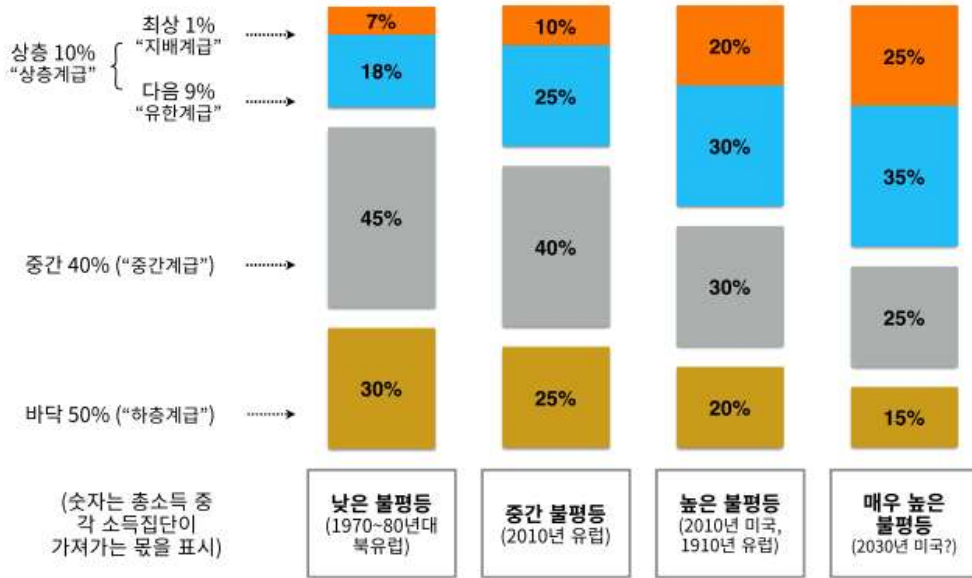
7

국민소득 대비 민간자본의 크기(세계; 1870-2100)



8

합산소득(근로+자본소득)의 불평등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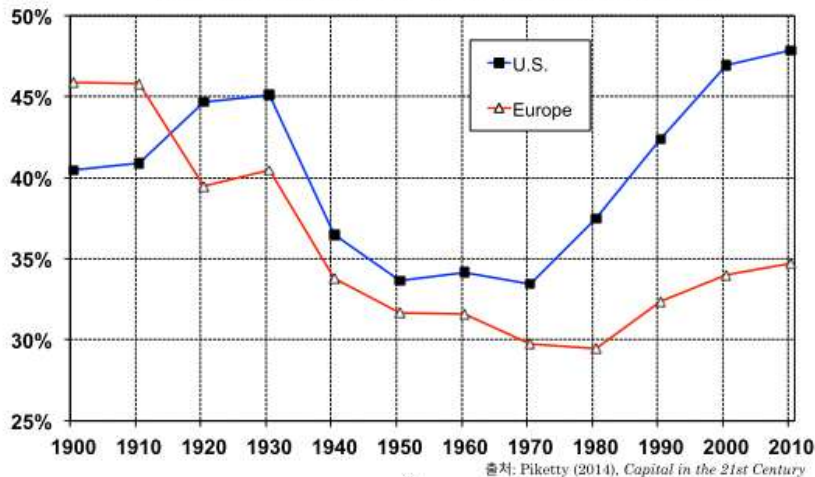
출처: Piketty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재구성

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약

(3) 피케티는 장기시계열 자료를 이용, 70년대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게 아니라 20세기 중반이 불평등이 완화된 예외적 시기였음을 보임. 즉 현재 우리는 정상으로부터 이탈하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회귀중인 것임

국민소득 중 상위10%가 가져가는 몫(미국, 유럽; 194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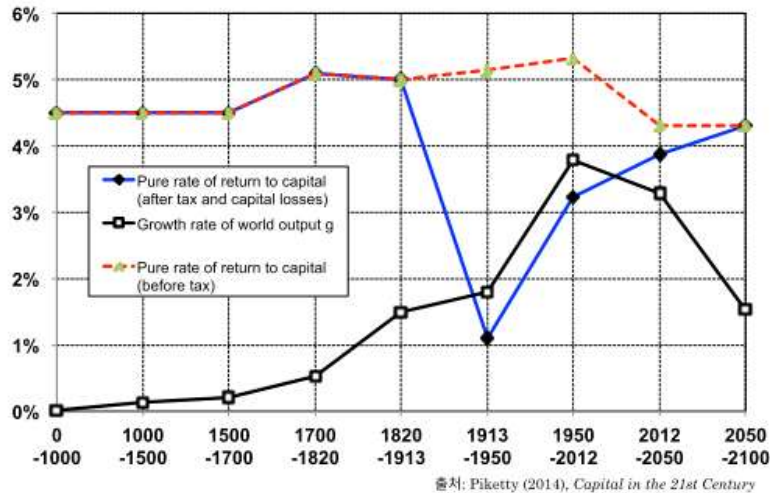


10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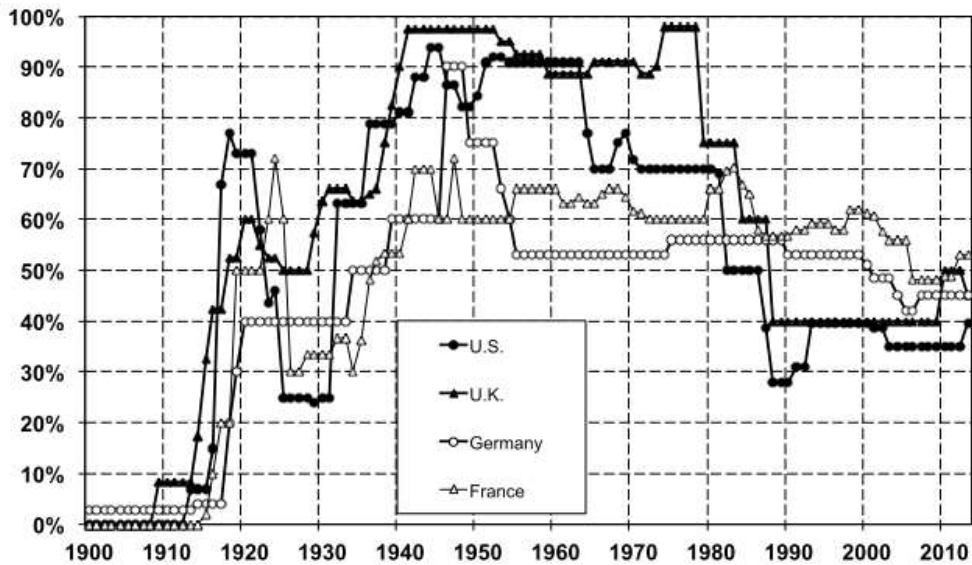
(4) 즉 피케티는 자본주의 자체가 불평등을 내장한 체제라고 간주하면서, $r > g$ 를 '자본주의의 핵심모순'이라 칭함. 한편 20세기 중반의 불평등 완화는 선진국 정부들이 세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r 을 g 미만으로 낮춘 덕분임

세전 및 세후 자본수익률 vs 경제성장률 (고대~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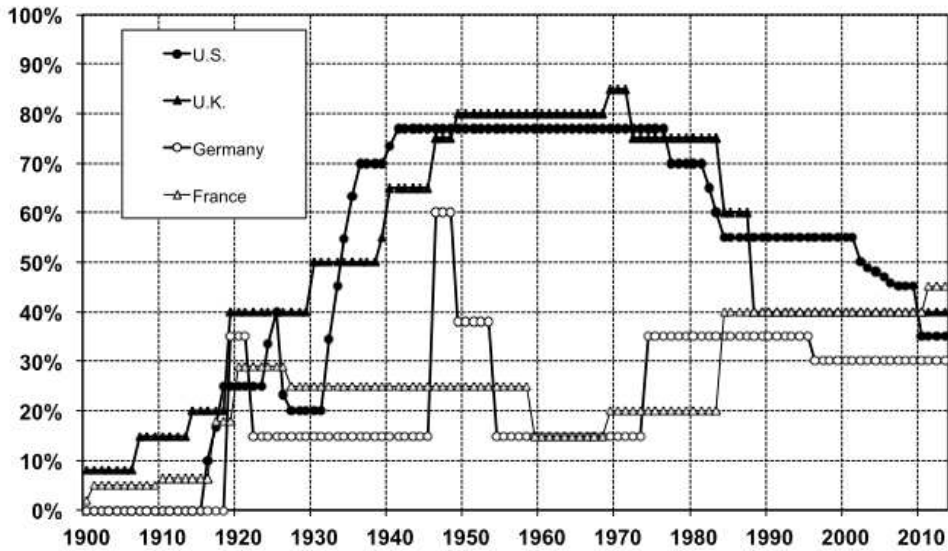
11

주요국의 최고소득세율: 1900~2013년



12

주요국의 최고상속세율: 1900~2013년



출처: Piketty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13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약

(5)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 조세(인하)경쟁과 경제성장 둔화로 $r > g$ 가 회복되고 있음. 즉 우리는 현재 새로 생산되는 국민소득 대부분을 극소수의 자산가가 취득하는 19세기 식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회귀중인 것임. 이런 추세대로라면 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할수도 있으므로, 20세기의 경험을 교훈삼아 강력한 세제개혁을 통한 조치가 필요함

-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 특히 최고 소득세율을 80%까지 높이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
- 자산소득세제 강화 : 현재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탈세가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임

14

피케티의 불평등 논의의 특징과 타 불평등 논자들과의 차별점

- 개인과세자료를 적극 이용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짐
 - 보통의 불평등 논의들은 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국민계정, 각종 가계단위 자료나 개인입금자료 등을 이용함
 - 이에 반해 피케티는 각종 재산세제 자료를 이용해 자산분포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었음
- 특히 그러한 자료가 방대하게 존재하는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는 300여 년에 걸친 장기적인 불평등 추세를 관찰함
 - 이를 통해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장기발달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 → 그 결과가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19세기 식의 세습자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주장임
- 이를 통해 불평등을 ‘경제이론적 논의 대상’으로 격상시킴
 - 피케티는 불평등의 원인을 ‘경제’ 자체의 내적 메커니즘($r>g$)에서 찾는 데 반해,
 - 보통의 불평등 논자들은 1970년대 이후 두드러진 불평등의 원인을 당대 특유의 상황(=신자유주의, ‘나쁜 정치’)에 돌림으로써, 그 해결도 ‘좋은 정치’에서 찾음 → ‘경제’가 아니라 ‘정치’ 강조. ‘경제이론’이라기보단 ‘담론’ 수준에 머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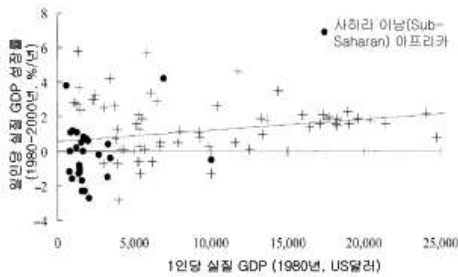
불평등을 보는 주요 입장들 비교

	신고전파 주류경제학	최근의 불평등 논자들	피케티
기본시각	- 경제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상 불가피한 것
원인	- 개인적 능력의 부족 - 경제의 저성장 - 후진정부의 부정부패	- 시장 실패 - 나쁜 정치	- 자본주의 자체 - 자산수익률>경제성장률
처방	- 경제성장 - 교육 - 선별적 복지 - 범지구화/개방	- 좋은 정치 - 보편적 복지	- 자산수익률 낮추기 위한 제도(자산세, 누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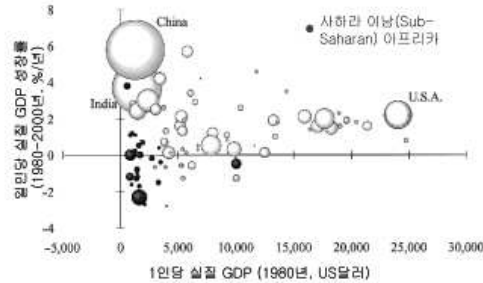
16

불평등 부정론?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피케티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
미국 내에서 양극화가 일시적으로 커졌을지 몰라도
지난 30년간 범지구화 덕분에 전세계 중산층은 크게 늘어났다.”



<그림 1> 1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
자료 : Fischer(2003), p. 11.



<그림 2> 1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 (1980년 인구수에 가중치)
자료 : Fischer(2003), p. 12.

17

피케티 비판 (1) 이론적 이슈들

- 피케티가 내놓는 자본수익률(r)은 거시지표인가?
 - 피케티는 r 을 거시지표로 간주. 즉 하나의 국민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대하여 r 을 계산하고, 이를 경제성장률(g)과 대비시킴
 - 그러나 실상 그가 관심을 갖는 불평등은 일차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문제이며, 여기서 하나의 거시지표로서의 r 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즉 $r > g$ 라는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산 소유자들이 더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소유자는 이득을 보겠지만 다른 자산소유자는 g 보다 낮은 수익률에 만족할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 망하기도 하는 것임
 -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동학을 $r > g$ 로 요약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공허한 추상’)이며, 따라서 $r > g$ 를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음. 그것은 이미 벌어진 불평등을 거시적 차원에서 확인해줄 수만 있을 뿐임
 - ✓ 피케티가 $r > g$ 를 자료에서 관찰만 할 뿐 증명 못하는 것도 바로 이래서임

18

피케티 비판 (1) 이론적 이슈들

- 경쟁을 배제하고 자본주의 동학을 논할 수 있는가?
 - 앞서 말한 개별적 r 들 간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포착하는 개념이 경쟁임 → 경쟁은 상이한 자본수익률 간의 차이를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할뿐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본을 몰락시키기도 함
 - 이런 과정에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의 집중과 분산이 생길 것이며, 이러한 **분배경쟁**은 사회 전체적 불평등의 한 계기를 이룰 것임
 - 피케티가 ‘소수에 의한 부의 점증하는 독점’을 곧장 ‘세습사회로의 회귀’로 해석한 것은 이러한 경쟁을 무시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임
 - ✓ 실제로 부는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을지언정, 그 ‘소수’는 결코 고정적이지 않음 (예) {포브스} 지의 ‘Global Wealth Rankings’
 - ✓ 만약 그러한 고정성이 없다면, 피케티의 주요 결론인 ‘세습자본주의로의 회귀’는 성립하지 않음

19

피케티 비판 (1) 이론적 이슈들

- 생산을 배제하고 자본주의 동학을 논할 수 있는가?
 - 피케티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논의를 분배영역에 한정하지만, 피케티의 논의 주제(불평등)를 규명한다는 목적에서만 보더라도 생산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됨
 - 첫째, 앞서 분배영역에서 자산소유자들 간의 투쟁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원리상 분배란 생산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음
 - ✓ 직접적 생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산소유계급들을 구조적으로 위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위계가 자산소유자들 간의 분배투쟁을 규정할 것임
 - 둘째, 대다수가 노동자인 비자산가들과 자산가들 간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생산영역에서 맺어질 것이므로, 생산은 양자간의 분배를 일차적으로 규정할 것임
 - ✓ 피케티가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거시적 총량자료로 파악하는 양자간 분배(그가 정의한 알파값으로 포착됨)는, 사실상 생산영역에서의 노자간 투쟁의 산물이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산의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불평등은 노자간 계급관계에 의해 규정됨

20

피케티 비판 (1) 이론적 이슈들

- 결국 피케티는 하나의 ‘분배이론’을 내놓고자 자신의 논의를 분배영역에만 한정시켰으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분배이론조차 되지 못함
 - 경제란 생산과 분배가 하나로 결합된 유기적 전체 → 피케티 논의는 적절한 경제이론이 되지 못함
 - 불평등 심화의 근본적 메커니즘으로 피케티는 $r > g$ 라는 부등식을 꼽고 있으나, 만약 그가 자신의 논의를 생산영역도 포괄하도록 구성했다면, 분배상의 불평등 심화원인을 좀 더 복합적으로 찾았을 수도 있음

21

피케티 비판 (2) 불평등 논의의 퇴행

- 피케티는 그간 연구자들에게 거의 ‘성역’으로 간주되다시피 하던 최상위 부자들을 논란의 핵심으로 끌어들이
 -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해 최상층 1%, 심지어 0.1%나 0.01%가 가진 부의 규모와 형태 및 그 변화양상을 실제에 가깝게 추적할 수 있게 됨
 - 이로써 그의 논의는 최근 세계적으로 일어난 바 있는 ‘1 대 99 사회’ 논의에 중요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제공한 것처럼 보임
- 이러한 강조점의 이동은 기존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사항들로부터 일정 정도 멀어짐을 의미함
 - 피케티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지만, 사실 불평등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고, 현대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해왔음
 - ✓ 마르크스(주의)에 있어 불평등은 언제나 계급적 문제였고, 그것은 빈곤, 도농격차, 제국주의 등의 사항들과 필연적인 고리로 맺어져 있다고 여겨졌음
 - 결국 피케티는 이러한 불평등 논의를 (거시적 소득분배 문제로) 단순화한 셈임

22

피케티 비판 (3) 피케티 대안의 적실성

- 자본주의의 불평등 심화 경향에 대한 피케티의 처방은 세제임
 -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최고소득세율을 80%까지 올리자!
 - 부유세 도입/강화: 각종의 자산세를 강화하고, 특히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하자!
 - 재정위기 겪는 선진국정부 입장에서선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 있음
- 이런 대안은 피케티의 급진적인 불평등 원인진단과 어울리지 않음
 - 피케티는 불평등의 원인이 자본주의 및 자산소유제도 자체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해결도 그러한 제도의 폐지에서 찾는 것이 순리일 것
 - 그러나 결론부분에 가서 피케티는, 원인진단 부분에서 그가 확보했던 독특성과 급진성을 모두 잃고, 일반적인 불평등론자들과 차별성을 발휘하지 못함
 - ✓ 이는 그가 '교육 vs 세습/특권'이라는 기존의 논쟁구도에 지나치게 매몰된 때문으로 해석 가능 → 교육을 통해 배양된 능력을 가지고 부를 쌓는 것은 괜찮지만, 상속재산 등 특권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23

피케티 비판 (3) 피케티 대안의 적실성

- 위와 같은 처방은 20세기 역사에 대한 피케티의 독특한 이해방식과도 관련됨
 - 피케티는 1915~70년 기간의 불평등 완화를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고율의 세금 덕분이라고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노동운동이 융성하던 기간이기도 함
 - 이런 질문 가능: **자본수익률을 낮추는 데 (1) 세금과 (2)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 중 어느쪽이 더 결정적이었는가?**
 - ✓ 쉽게 답할 질문 아니나, 피케티에겐 이런 사항을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 ✓ 그러나 이제껏 많은 설명들이 후자를 강조해왔음(Krugman조차도)
 - 왜 그러한가? 왜 피케티는 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가?
 - ✓ 하나의 설명은, 피케티의 처방은 그가 불평등을 파악하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즉 불평등을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그는 과세자료를 통한 방식을 택했고, 자연스럽게 그는 세제에 과도한 의의를 부여했을 수 있음

24

피케티 비판 (3) 피케티 대안의 적실성

- 그러나 피케티는 20세기 세제사(史)도 지나치게 단순히 이해함
 - 보편적인 소득세제 및 고율의 최고소득세율 도입은 기본적으로 전쟁 때문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또한 전쟁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노동자계급 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특히 영국에서 고율의 소득세제는 산업의 국유화/사회화라는 기획과 한 묶음으로 진행된 것이었음
 - ✓ 고율의 소득세제를 통해 불로소득을 수거하고,
 - ✓ 기업이 거두는 이윤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을 방지해 한편으론 불평등 심화를 막고 다른 한편으론 기업의 투자를 유도
 - ✓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업들을 국유화/사회화함으로써 사회적 부에 대한 공공적 통제를 급진적으로 강화함
- 요컨대 피케티의 대안은 그 실현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 속에서 제공되어야 함

25

결론: 피케티, 수용인가 폐기인가?

- 피케티의 내적 모순
 - 원인진단의 급진성과 처방의 미온함 → 이 둘은 화해가 가능한가? 수용인가, 폐기인가?
- 피케티의 처방이 아무리 미온적이라 해도 진보적인 것 아닌가?
 - 피케티가 대자산가인 최상위 1%를 문제삼는 것은 분명함
 - 그러나 이 1%를 나머지 99%에 대항하여 문제삼느냐, 또는 그들을 바로 잇는 9%의 부자들에 대항하여 문제삼느냐는 별개 문제
 - 피케티는 '교육 vs 세습/특권'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을 받아들임으로써 후자의 방향으로 경도됨 → '9%를 위한 경제학'으로 전략? 남은 90%는 둘러리? 불평등은 그대로?
- 피케티의 급진화?
 - 99%를 위한 문제제기가 되도록!
 - ✓ 불평등의 계급적 성격과 복잡성 복원 = 마르크스주의적 시각 복원!
 - ✓ 피케티의 미온적 처방조차도 계급적 기반 갖춰져야 실현가능함을 인식
 - ✓ 오늘날 상황에서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고 혁명적으로 전하시킬 사회주의적 비전 구비
 - 결국 피케티의 급진화가 피케티를 살리는 길!

26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서 환 주(한양대)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둘째,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누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왜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Abstract

While experienc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7-2008, we came to recognize that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all rising simultaneously and that these increases are cumulative due t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equalities. This is not only resulting in an economic crisis, but is also leading to a crisis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y such multiple inequalities are developing concurrently. First, we verify whether the inequalities are in fact rising together. Second, we analyze the cumu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simultaneously increasing inequalities.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focusing on welfare systems and labor unions, we examin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Key words: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Inequality of Opportunity, Cumulative Increase

I. 서론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Okun(1975)은 그의 저서인 『평등과 효율의 거대한 트레이드오프』(Equality and Efficiency: Big Trade-off)에서 소득불평등은 경제주체들에게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여, 근로의욕, 자본축적 그리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오쿤의 논의를 빌어 소득불평등 증가를 용인했으며 이의 증가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80년대 노동시장유연화정책 실시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지만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미국이 유럽의 복지제도와 노사관계를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성장이라는 파도가 모든 보트를 떠오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솔로의 균제성장경로나 낙수효과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문제를 자연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하며, 소득불평등심화는 경제안정성을 위협하여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Ostry et al., 2014; Tridico, 2012; Stockhammer, 2012). 둘째, 시민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들어주는 이상적인 정부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자들의 목소리에 정치권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Stiglitz, 2012; Acemoglu and Robinson, 2008; Acemoglu et al., 2013). 경제학은 오랫동안 Meltzer and Richard(1981)의 설명에 따라 민주주의국가는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자기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다. 소득이 불평등해지면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투표로 소득재분배정책시행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책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자기자정현상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04년 『불평등 증가시대의 미국 민주주의』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미국정치학회는 모든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의견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하여 정부정책에 더욱 잘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Bonica et al., (2013)는 부유층들이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려는 정부정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규제 실패가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월가를 개혁하고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Dodd-Frank법을 승인하였으나 월가는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10억 달러의 로비자금을 지출하였고 406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였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398개 법안 중에서 단지 148개만이 의회심의를 마쳤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물림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회의 균등은 사회정의 실현의 기본이다(Rawls, 1999). 개인의 성취와 소득은 인종, 성 그리고 가족배경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아야 되며 유사한 재능을 소유한 개인들은 유사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롤스는 정의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Stiglitz, 2012; Corak, 2013)는 소득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가족의 배경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불평등(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평등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의 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양한 불평등(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누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득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누적적인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소득의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왜 북구는 모두 낮게 나타나는 반면 영미권 국가는 왜 이러한 불평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단서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일차적 목표는 다양한 불평등간의 누적적 인과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의 동반증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다양한 불평등의 동시증가를 누적적 증가라는 틀에서 해석하고 이를 모형화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불평등해소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복지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구와 영미국가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V장은 결론이다.

II. 다양한 불평등의 동시증가

1. 소득 불평등의 증가

<그림 1>~<그림 4>는 80년대 이후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 한 것이다. 우선 <그림 1>은 OECD 국가의 세후 Gini계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45°선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할 경우 1985년보다 2008년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터키, 그리스 그리고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45°선 좌측에 위치하고 있어 OECD선진국 대부분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영미권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세후 Gini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구(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였다. 45°선을 기준으로 북서쪽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소득불평등이 1985~2008년 기간에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그림 1>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상위 1%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Piketty의 DB를 이용하여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12개국 모두에서 1980년에 비하여 2000년대 후반에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다. 미국 최상위층의 소득점유율이 2000년말 현재 17.8%, 아일랜드 11.6% 그리고 스위스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이들의 소득점유율이 미국은 117%, 호주 82%, 아일랜드 75%, 스웨덴, 72%, 노르웨이가 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Milanovic(2013)의 연구결과인데, 전 세계 120여개 국가의 가계실태조사를 기초로 전 세계 가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배열하여 분석한 것이다. 비교기간은 1988년과 2008년이다. X축은 소득계층을 Y축은 각 소득계층의 분석기간 동안의 실질소득증가율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20년 동안의 세계화의 최대수혜자는 전 세계 상위 1%(대략 6천만 명)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2억의 중국인, 9천만 인도인 그리고 3천만 인도네시아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손해를 본 계층은 최하위 계층과 상위 75%~90%(선진국의 근로자들)계층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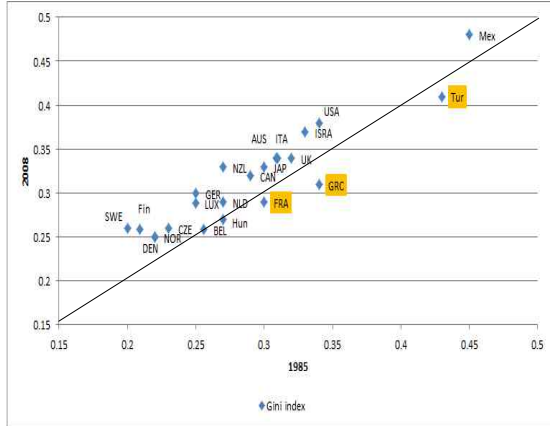
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했지만 90년대 중반이후 중남미는 예외적으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 <그림 2>는 중남미 국가의 1995~2010년 기간의 세후 Gini계수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제외하고는 중남미국가 대부분이 <그림 1>과는 대조적으로 45°선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1995년 이후 중남미의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이 급속한 소득개선을 이루었다. 중남미의 소득불평등 개선의 성공배경으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복지제도의 설계(물가변동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된 최저임금, 인적자본축적과 복지를 연계한 볼사파밀리알(Bolsa Família)프로그램)와 이로 인한 중산층의 확대를 들 수 있다¹⁾.

소득불평등이 80년대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영미권의 국가보다는 북구국가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 계층이 개발도상국의 중산층과 더불어 세계화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 근로자계층과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가장 손해를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소득불평등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는 예외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고 있으며 이의 바탕에는 독창적인 사회복지제도설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기초로 다양

1) 최저임금수준을 포디즘의 관리된 조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상황보다는 경제성장률에 연동하여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볼사파밀리알라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보조프로그램은 현금보조를 자녀들의 교육, 예방접종과 산후조리에만 지출하도록 한정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복지제도를 통하여 성장의 성과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골고루 전파되도록 설계하였으며 그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1995년 20.9%에서 2010년 40.7%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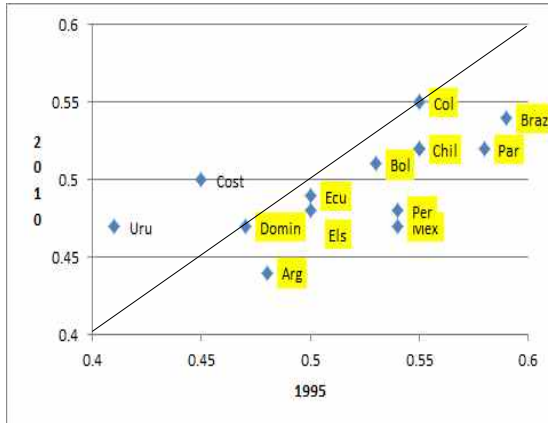
한 계층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1> OECD국가들의 세후 Gini계수 변화(198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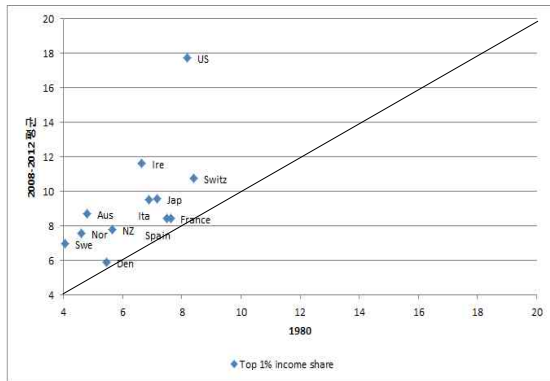
자료: OECD DB.

<그림 2> 중남미 국가들의 세후 Gini계수 변화(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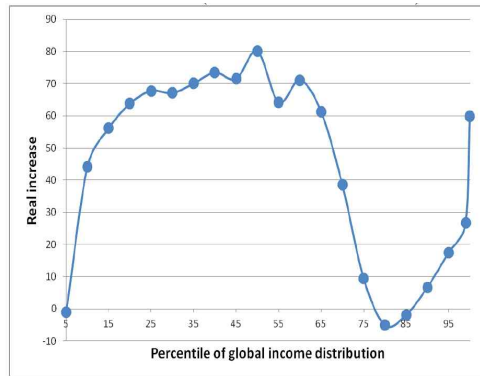
자료: Lustig et al., (2013), p. 3.

<그림 3> 최상위 1% 부유층의 소득점유율 변화 (1988-2008)



자료: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Database>:
 자료: Milanovic (2013), p. 202.

<그림 4> 세계화의 소득계층별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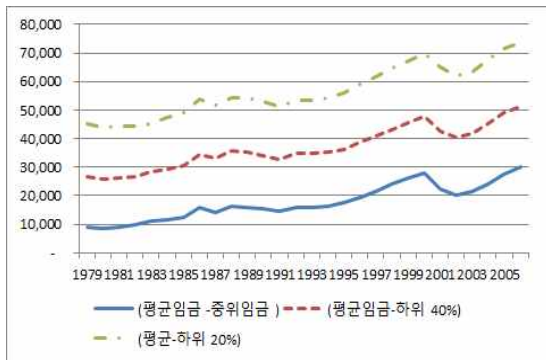
2. 정치적 불평등 확대

2.1 투표에 의한 자기조절

Meltzer and Richard(1981)는 참정권의 확대, 소득재분배욕구증가 그리고 정부규모 확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참정권이 점차 빈곤층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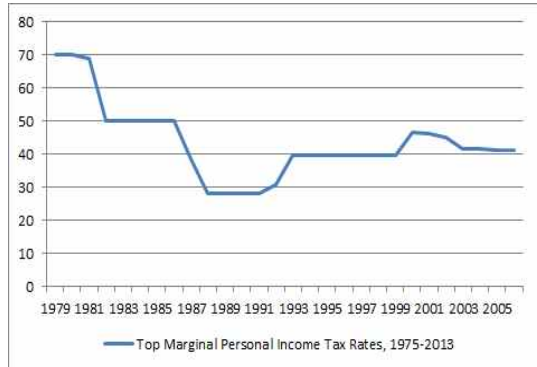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강조되고 재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규모도 점차 대형화된다는 것이다. Meltzer and Richard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민주주의의 균등화효과(equalizing effects)를 설명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다수를 차지하는 중위투표자(즉 중산층)의 의사에 달려 있다. 중위투표자들보다 낮은 소득의 투표자(저소득층)는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반대로 중위투표자들보다 높은 소득의 투표자(부유층)들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이 때 중위소득자들의 소득 즉 중위 소득(median income)이 경제전체의 평균소득(mean income)보다 낮을 경우 이들은 소득재분배를 선호하여 소득재분배정책에 투표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정책을 반대하는데 투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중산층 유권자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 노력할 것이고 또한 투표라는 자기조절장치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균등화효과에 의하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불평등의 급속한 증가와 부의 과도한 집중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Meltzer and Richard의 예측을 현실과 비교하여 보면 예측과는 달리 민주주의의 균등화효과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1979~2006년 기간의 미국가계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 추이, 평균소득과 하위40%계층소득간의 격차추이 그리고 평균소득과 하위20%계층소득간의 격차추이를 나타낸다. 모두 세전소득이며 2006년 기준 불변 값이다. <그림 5>를 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eltzer and Richard의 예측에 따르면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중산층이 투표를 통하여 부유층에 대한 증세정책을 채택할 것이고 이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게 된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듯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예상과는 달리 평균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90년대 초반까지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후 40%수준에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7>은 세후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격차 추이를 보여준다.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최상위층의 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보듯이 최상위층의 소득과 중위소득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5> 세전 미국가계의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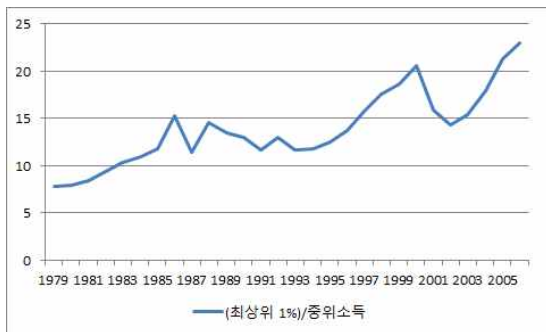
주: 세전소득이고 2006년 불편기준.
 자료: US Congress Budget Office,
<http://www.cbo.gov>

<그림 6> 미국 최상위층의 소득세율 추이



자료: OECD DB.

<그림 7> 세후 및 이전소득 포함한 가계소득추이: 최상위 1%와 중위소득간의 소득격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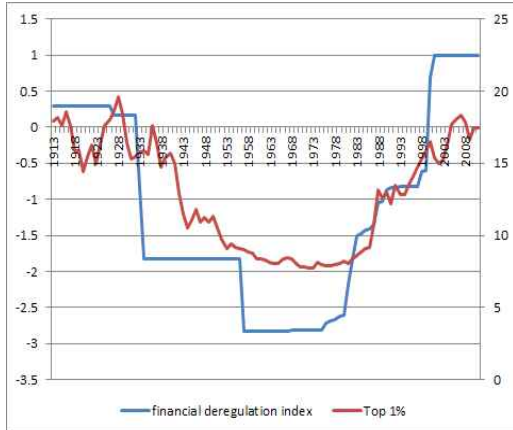


주: 세후 및 이전소득포함 그리고 2006년 불편기준.
 자료: US Congress Budget Office,
<http://www.cbo.gov>

2.2 포획된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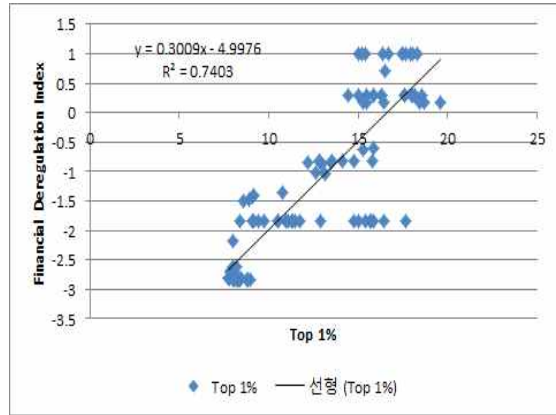
Melzer and Richard의 가설과는 달리 7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빈곤층은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힘 (투표권)을 이용하여 부유층에 증세를 시도하지도 못했고 소득재분배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소수의 부유층이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책과 시장의 룰을 변경했으며 시장의 기회를 독점하였다(Stiglitz, 2012).

최상위 1%의 소득비중과
 <그림 8> 금융자유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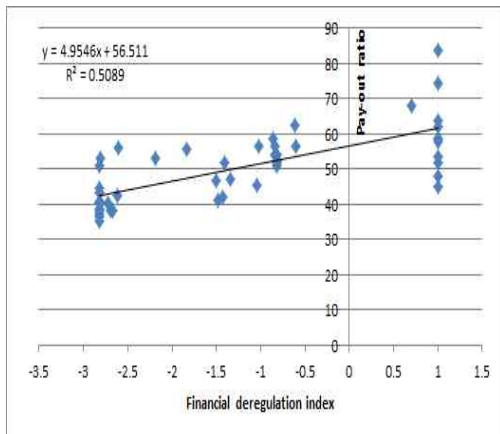


자료: Financial Deregulation: <http://pages.stern.nyu.edu/~tphilipp/research.htm>
 Income share: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Database:>

<그림 9>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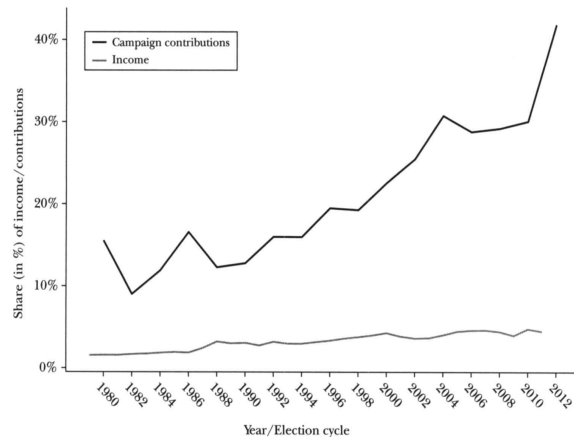


<그림 10>
 금융자유화지수와 배당성향(1964~2011)
 도



자료: 배당성향은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2012).

<그림 11>
 미국상위 0.01%의 캠페인 후원금 집중
 도



자료: Bonica et al., (2013), p.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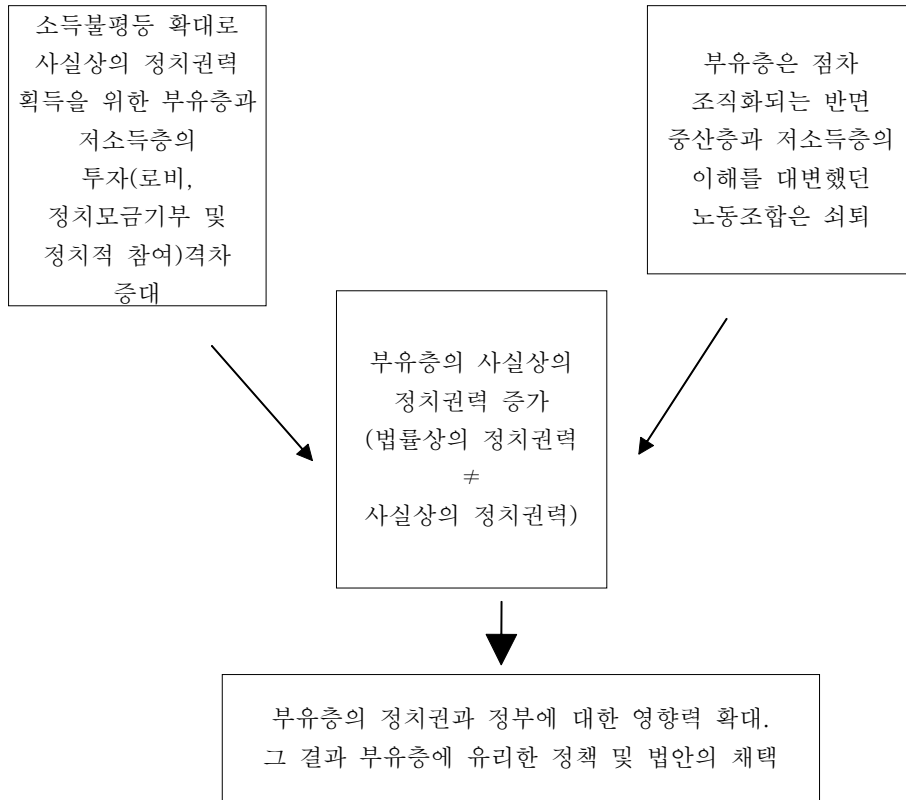
<그림 8>~<그림 10>은 정부정책의 변화(금융자유화)가 소득불평등확대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8>은 지난 100년 동안의 미국금융자유화지수와 최상위 1%의 소득비중 변화추이를 제시한 것인데, 미국의 금융자유화지수와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보면 대공황이후 금융부분에 대한 규제가 7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로비와 이에 따른 정책변화로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금융규제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 1%의 소득비중도 금융규제완화와 더불어 70년대 말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금융자유화지수와 최상위 1%의 소득비중 그리고 금융자유화지수와 배당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그림 9>에 따르면 최상위 1%의 소득비중과 금융자유화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R^2 가 0.74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당성향증가와 금융자유화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R^2 도 0.50으로 높게 나타났다.

Acemoglu and Robinson(2008)는 Melzer and Richard의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 12>와 같이 법률상으로 보장되는 1인 1표의 법률상(de jure)의 정치권력과 각 소득계층이 실제로 소유하는 사실상(de facto)의 정치권력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 둘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현상을 포획된 민주주의(captured democracy)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부유층들은 다양한 수단(정치권에 대한 로비, 선거자금기부,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혹은 자본해외이전위험)을 동원하여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들은 소득불평등 확대와 기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노동조합의 약화와 더불어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Melzer와 Richard예측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연구팀을 조직하여 불평등증가시대의 미국민주주의라는 보고서를 2004년에 발표한 미국정치학회도 Acemoglu and Robinson(2008)와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발표 내용은 미국민주주의는 소득불평등증가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정치적 불평등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정치학회는 소득불평등증가, 소득계층별 정치적 참여율차이 그리고 조직화의 차이가 정치권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정책에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계층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소득 계층별로 정치적 참여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부유층들이 빈곤층에 비하여 투표와 정치참여에 적극적임이 발견되었다. 가계 소득 \$75,000이상 계층과 \$15,000이하 계층의 투표참여와 정치활동참여를 비교한 결과 부유층은 열 명중 아홉 명이 대통령선거에 투표하는 반면 빈곤층의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타 정치적 참여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캠페인후원금을 보면 부자들은 56%가 참여한 반면 저소득층은 6%에 불과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2012년에 소득계층 최상위 0.01%의 기부금이 캠페인 전체기부금의 4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관련 조직참여에도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부유한 계층의 3/4이 다양한 정치활동관련 조직에 참여하는 반면 빈곤층은 13%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포획된 민주주의와 정치적 불평등의 증가



자료: Acemoglu and Robinson(2008)과 Hacker and Pierson (2010)에 기초하여 필자가 작성

다음으로 소득그룹별로 조직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빈곤이 정치적 불평등 확대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미국정치학회의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왔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70년대 이후 미국의 노조가입률이 절반이하로 줄어 2012년 현재 11%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치와 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조원과 그 가족들의 투표를 중용하는 등 노조원과 일반시민의 정치참여 증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민주당정치후원금의 마르지 않는 젖줄이었다. 1968년에는 노동조합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후원금이 7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노동조합의 쇠퇴로 민주당에 대한 정치후원금규모가 감소하자 민주당도 점차 기업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게 되었다(Hacker and Pierson, 2010). 이로 인하여 민주당조차도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해보다는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적극적이게 되었다²⁾. 반면에 70년대 이후 부유층 특히 기업들은 조직화를 서두르게

2) 노조의 공백을 메우리라고 예상되었던 진보적인 단체(환경문제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특정사안에 만 관심을 집중할 뿐 노동자계층과 중산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된다. Hacker and Pierson의 연구에 따르면 1971년에 로비스트를 고용한 기업이 175개였다면 1982년에는 2,500개로 증가하였고 특정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정치활동위원회가 1976년 300개 미만에서 1980년 중반에 12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1972년에는 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조직되어 정부와 의회에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수주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전파하는 데 앞장선 헤리티지 재단이 1973년 창설되었다. 이처럼 부유층들은 더욱 조직화되는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은 원자화됨에 따라 자신들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Bartel, 2008). 미국정치학회의 보고서가 표현하고 있듯이 부유층은 정부에 고품을 지르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소곤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확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프리스턴 대학의 Bartel(2008)와 같은 대학의 Gilens(2005)는 잘 보여주고 있다. Bartels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원의원들이 특별사안(최저임금, 공민권, 정부지출)에 대해서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치권은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빈곤층의 이익대변에는 소홀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부유층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고소득유권자에게 더욱 호의적임이 밝혀졌다. Gilens는 의회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유층이 지지하는 정책이 다른 계층이 지지하는 정책에 비하여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층과 부유층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빈곤층의 의견보다는 부유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 및 빈곤층 다수가 어떤 정책변화를 지지한다고 해서 소수가 지지할 때 보다 정책이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았으나 부유층다수가 지지하는 경우 정책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치적 평등이 가장 잘 보장된다는 미국에서조차 Meltzer and Richard가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중산층과 빈곤층의 의견이 투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회의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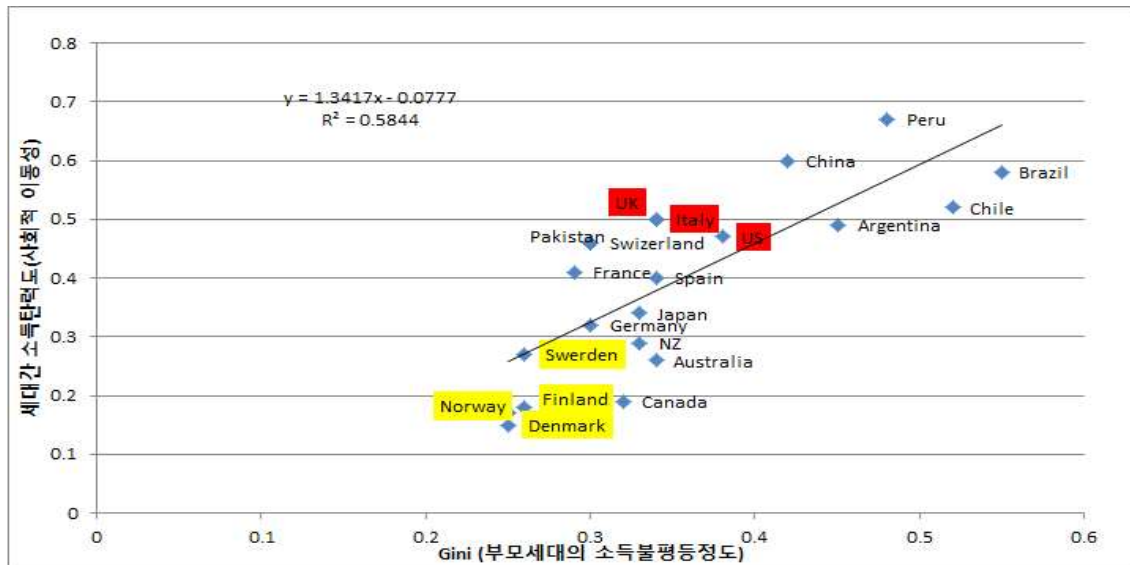
가족배경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비슷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유사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또한 관련된 자질과 노력에 근거해서 직책과 직위를 모든 이에게 개방시켜주는 것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롤스는 정의하고 있다. 또한 롤스는 부의 불평등이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정의의 기초인 기회의 평등도 위협받게 된다고 경고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도 롤스의 경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소득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

않았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동원에 기반 하기보다는 전문직, 고학력 그리고 부유층등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과거 노조가 수행했던 중산층과 빈곤층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이동성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orak(2013)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예상소득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가족의 배경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OECD(2011)도 소득불평등증가가 사회의 이동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이태리,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반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북구의 경우는 자녀의 소득이 가족배경에 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이동도 활발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Corak(2013)은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세대 간 소득계층 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위대한 개츠비곡선(Great Gatsby curve)이라 불리는데, X축은 한 세대 전(즉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이고 Y축은 부모의 소득에 대한 자녀소득의 탄력도 이다. 따라서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Y축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부모세대의 소득분배가 더욱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2011)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태리의 경우는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서 부모소득에 대한 자녀소득의 탄력도가 0.5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구 국가들은 0.2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들의 예상소득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림 13>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간의 상관관계



주: X축은 우측으로 갈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Y축은 상향으로 이동할수록 사회적 이동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냄.

자료: 세대 간 소득 탄력도는 Corak (2013); Gini계수는 World Bank DB와 OECD DB.

Corak(2013)은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국가 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가족, 노동시장 그리고 정부정책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설명하고 있다. 첫째, Romer(2004)가 이야기하는 가족이 제공하는 ‘상이한 환경’이 자녀들의 소득계층이동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자녀들의 직장선택이나 인적자본축적에 영향을 주며, 부모가 물려주는 유전적 능력과 건강이 또한 자녀들의 소득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들에 대한 인적자본투자수준과 투자동기에도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많은 실증연구(Bailey and Dynaski, 2011)들은, 인지능력을 통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 세대인 80년대 출생자들의 경우 소득평등의 세대인 60년대 출생자에 비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이 대학진학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로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떤 계층을 위주로 설계되느냐의 여부도 위의 개츠비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교육재정지출이 초중고 공립학교에 집중될 경우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반면, 정부지출이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사립대학이나 사립중고등학교에 집중될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는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GDP 대비 1.6%를 교육과 사회이동성 촉진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중 1/4만이 중하위소득그룹이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부재정지출이 사회이동성 제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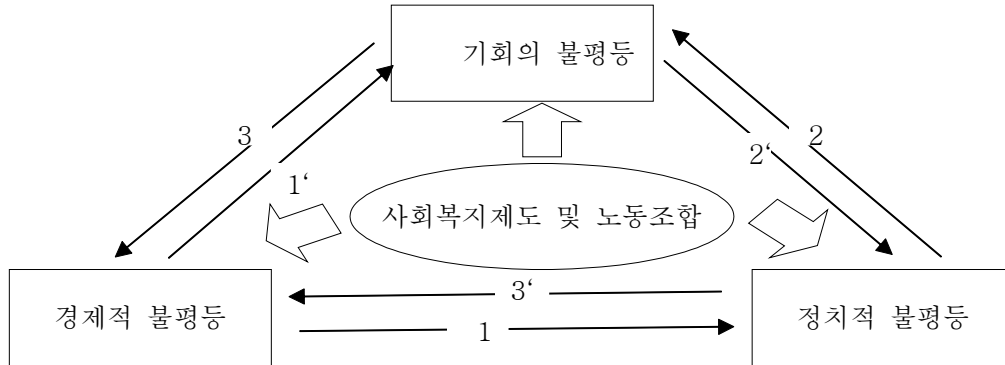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인정되는 학력프리미엄(즉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세대 간 소득계층의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rak의 분석결과 학력프리미엄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모소득이 자녀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투자할 동기가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자녀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

Estebez-Abe et al., (2001)은 기술축적메커니즘과 학력프리미엄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범용기술(general skill)이 강조되는 미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학력프리미엄이 높은 반면 기업특수적(firm-specific)기술이나 산업특수적(industry-specific)기술이 강조되는 북구의 경우는 학력프리미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통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은 다양한 영역과 산업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개츠비곡선과 결합하여 볼 때 보편적인 기술이 강조되는 국가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 학력프리미엄이 높아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이 높은 반면 기업특수적 혹은 산업특수적 기술의 중요성이 높은 북구의 경우 학력프리미엄이 낮아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다양한 불평등의 동반증가 및 누적적 증가

1. 다양한 불평등간에 존재하는 누적적 관계

<그림 14> 불평등간의 누적적 관계



자료: 필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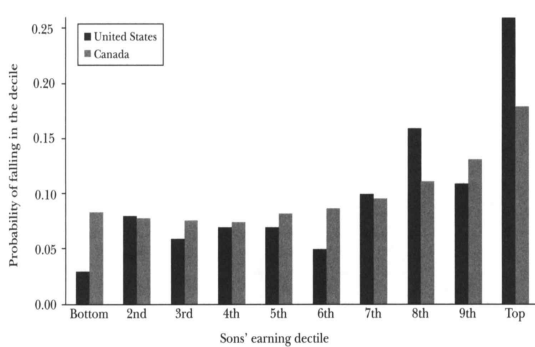
정치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기존연구는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동반증가 혹은 누적적 증가를 <그림 14>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부유층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하여 사실상의 정치권력확대를 도모하며 (<그림 14>의 경로 1) 이를 통하여 정치권과 정부의 의사결정(주로 기회의 평등에 관련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³⁾. Corak(2013)이 예로 든 부유층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교육단체에 공공재원을 분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서민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보다는 부유층 출신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그랑제콜(Grandes écoles)에 교육재원을 집중하는 것도 유사한 경우다(Piketty, 2014). 또 다른 예로 부자들이 다양한 로비와 유리한 사회여론형성 혹은 자본의 해외이전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속세나 증여세관련 제도의 개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Piketty and Saez (2007)에 따르면 197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 중반에 상위 1%의 평균연방세율이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까지 70%대에 다다랐던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부시는 낮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활하였지만 실제로 상속세가 부시정부시절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재벌들이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상속세 및 증여세폐지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 불평등의 결과인 상속세관련 제도변화는 몰스가 강조하는 출발선상의 공정한 기회부여를

3) Meltzer and Richard(1981)는 법률상의 정치권력과 사실상의 정치권력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14>의 경로 1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어렵게 한다(<그림 14>의 경로 2). 결국 가족배경의 차이가 출발선상의 차이를 결정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 시킨다 (<그림 14>의 경로 3). Corak(2013)에 따르면 아래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배경의 차이가 자녀들의 소득계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빈곤의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최상위소득층일 경우 그 자녀들의 50%이상이 소득계층 상위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반면, 부모가 최하위소득층인 자녀의 경우 50%이상이 하위 30%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도 미국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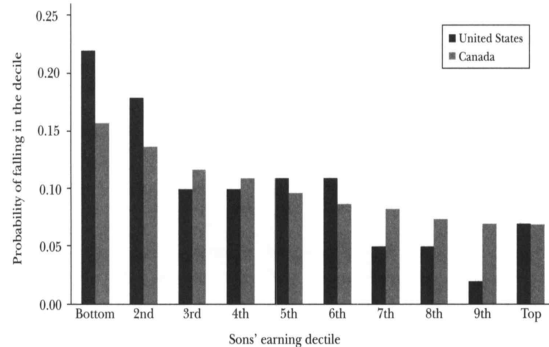
<그림 15>

부모가 최상위소득계층일 경우의 자녀의 소득계층분포: 미국과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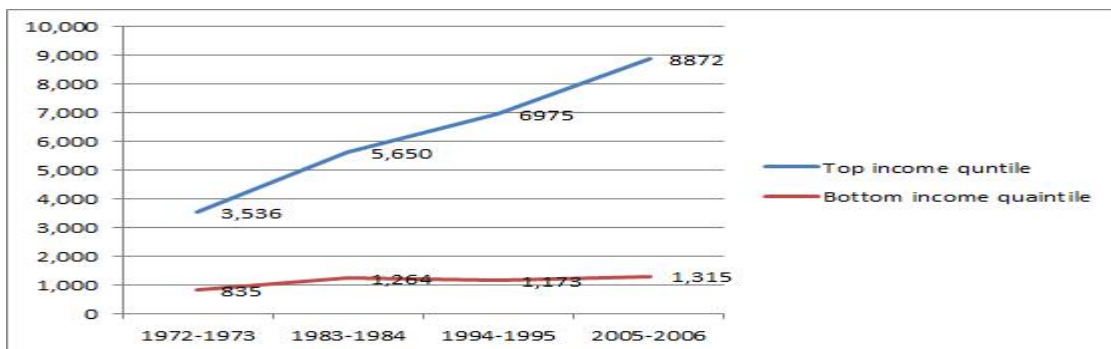
<그림 16>

부모가 최하위 소득계층일 경우의 자녀의 소득계층분포: 미국과 캐나다



자료: Corak(2013), p. 84.

<그림 17> 미국 최상위소득층과 최하위소득층의 교육비지출격차



자료: Corak (2013), p. 91.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빈곤층은 자녀교육에 대한 지출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롤스가 말하는 유사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인생기회와 기대

를 실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그림 14>의 경로 1'). <그림 17>은 미국 상위 20% 소득계층과 하위 20% 소득계층의 자녀교육비(도서구입, 컴퓨터구입, 여름캠프 그리고 과외교습)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하위 20%소득계층의 경우 70년대에는 \$835를 2000년대 중반에는 \$1,300를 지출한 반면 상위계층은 1970중반 기간에 \$3,500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5,500가 증가한 \$9,000를 지출하였다. 하위 20%는 30년 동안 자녀소득비가 \$500증가한 반면 상위층은 이 보다 11배 증가한 \$5,500가 증가하였다⁴⁾. 소득불평등확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층별로 차등이 발생할 경우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워진다(<그림 14>의 경로 2'). 그 결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소유한 부유층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킨다 (<그림 14>의 경로 3').

2. 모형

정치적 불평등의 기회의 불평등 및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Solon(2004)의 모델을 변형하였다. 단순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한 사회의 인구는 일정하며 1로 정규화(normalize)된다고 가정하자.
2. 한 사회에는 두 개의 집단이 있다: 엘리트계급(h)과 일반시민계급(혹은 근로자 계급) (l).

일반시민계급의 구성원수가 엘리트계급의 구성원수보다 많다. 엘리트계급의 인구비중을 ϕ 라 하면 일반시민계급의 인구비중은 $1-\phi$ 가 될 것이며 인구를 1로 정규화 하였기 때문에 인구비중이 각 계급의 구성원 수가 될 것이다. 물론 $\phi < \frac{1}{2}$ 이다.

3. 각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4. 각 가정은 t 세대의 일인 부모와 $t+1$ 세대의 일인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4) Stiglitz(2012)가 지적하듯이 미국명문대학교 재학생의 계층구성을 보면 소득분위 상위 25%계층 출신은 74%에 이르는 반면 하위 50% 계층출신은 9%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혹은 Piketty(2014)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재학생 부모의 평균연봉이 45만 달러로 미국 상위 2%소득수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유사한 맥락이다.

2.1 엘리트 계급

엘리트 대표부모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_{h,t} = (1 - \alpha) \log C_{h,t} + \alpha \log Y_{h,t+1} \quad (1)$$

엘리트부모는 자신의 평생소비($C_{h,t}$)와 자녀의 평생소득수준($Y_{h,t+1}$) 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α 는 부모의 이타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α 가 1에 가까울수록 이타주의적인 부모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식은 대표 엘리트대표 부모의 예산 제약식이다:

$$(1 - \tau) Y_{h,t} = C_{h,t} + I_{h,t} + L_{h,t} \quad (2)$$

여기에서 τ 는 세율이다.

그리고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을 정부는 가계의 교육비보조로만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교육비보조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엘리트 부모는 가처분 소득 $(1 - \tau) Y_{h,t}$ 을 소비($C_{h,t}$),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I_{h,t}$)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룹의 사실상의 정치권력(de facto political power)에 획득($L_{h,t}$)에 지출한다. 사실상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지출은 로비자금과 정치기부금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며 또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근로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유지를 위한 지출을 의미한다.

엘리트그룹 자녀의 $t+1$ 기 소득은 t 기에 투자한 교육투자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엘리트계급 자녀의 $t+1$ 기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log Y_{h,t+1} = \mu + p_s \Pi_{h,t} \quad (3)$$

여기에서 Π 와 p_s 는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학력프리미엄)을 각각 나타낸다.

Estebez-Abe et al., (2001)는 범용기술(general technology)이 지배적인 생산시스템의 경우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p_s) 즉 학력프리미엄이 기업에 특수(firm-specific technology)한 기술이나 산업에 특수한(industry-specific technology)기술에 기반한 생산시스템에 비하여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이 다양한 산업과 영역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특수적 기술이나 산업특수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시스템의 경우는 학력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직무를 통해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범용기술에 기초한 미국의 경우는 학력 프리미엄

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독일과 덴마크처럼 기업특수적 기술이나 산업특수적 기술에 기초한 국가의 경우는 학력프리미엄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력프리미엄을 나타내는 p_s 는 각국의 생산시스템 혹은 기술축적패턴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갖게 된다.

엘리트계급자녀의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수준($I_{h,t}$), 엘리트자녀 1인당 정부공공지출($GV_{h,t}$)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인적자본(\bar{e}_h)에 의해서 결정된다(식 (4)). 그리고 \bar{e}_h 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엘리트 부모는 소득이 높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일반 시민들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I_{h,t} > I_{l,t}$ 라 가정할 수 있다.

$$\Pi_{h,t} = \theta_1(\log I_{h,t} + \log GV_{h,t}) + \bar{e}_h \quad (4)$$

정부의 각 가정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교육비의 직접보조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도 있다. 엘리트 계급과 일반시민계급 모두가 자신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정부가 자신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한국의 경우 엘리트 계급들이 자신의 자녀가 주로 다니는 자립형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에 재원을 유리하게 배분하도록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일반시민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강할 경우 일반시민계급들은 정부재원을 자신들의 자녀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에 할당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Carasso, Reynolds and Steuerle (2008)에 따르면 2006년에 미국정부는 계층이동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교육에 GDP 대비 1.6%를 지출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이 예산의 단지 1/4만이 할당되었다. 즉 계층이동을 위한 정부지출의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다.

엘리트계급 자녀 1인당 정부지출은 엘리트 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의 정치권력은 법률상(de jure)의 정치권력(W_h)과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을 위한 투자($L_{h,t}$)의 함수이다 (식 (5)).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룹의 규모 즉 구성원의 수(ϕ)가 법률상의 정치권력수준을 결정한다 (식 (6)). 따라서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시민계급이 법률상의 정치권력에 있어 엘리트계급보다 우위를 점한다.

$$GV_{h,t} = W_h^\gamma L_{h,t}^{1-\gamma} \quad (5)$$

$$W_h = \phi \text{ and } L_{h,t} = \phi \beta_h (1 - \tau) Y_{h,t} \quad (6)$$

$$0 \leq \beta_h \text{ and } \gamma \leq 1$$

엘리트그룹의 각 가정은 사실상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서 가처분 소득의 일정비율 (β_h)을 지출한다($\beta_h(1-\tau)Y_{h,t}$). 이는 로비자금 및 정치모금에 대한 기부만이 아니라 각 그룹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에 대한 유지비용 지출까지를 포함한다. $L_{h,t} = \phi\beta_h(1-\tau)Y_{h,t}$ 는 엘리트 계급전체의 사실상의 권력획득을 위한 투자를 나타낸다. $\beta_h(1-\tau)Y_{h,t}$ 는 엘리트 계급 부모들의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을 위한 평균 지출을 나타내기 때문에 $\phi\beta_h(1-\tau)Y_{h,t}$ 는 엘리트 계급전체의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을 위한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표 엘리트 부모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수준은 개인의 투자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전체의 사실상의 권력획득을 위한 투자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γ 는 한 사회의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의 정도를 나타낸다. γ 이 1에 가까울수록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법률상의 정치권력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적고 정치적 평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식 (3)~식 (6)이 주어졌고, 예산제약식 (2)하에서 부모의 효용 식 (1)을 극대화하면, 대표부모의 자녀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적정수준(I^*)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U_{h,t} = (1-\alpha)\log(1-\tau)(1-\phi\beta_h)Y_{h,t} - I_{h,t} + \alpha\mu + \alpha\kappa\log I_{h,t} + \alpha\kappa(1-\gamma)\log Y_{h,t} + \alpha p_s \bar{e}_h + \alpha\kappa(\gamma\log\phi + (1-\gamma)\log\phi\beta_h(1-\tau)) \quad (7)$$

여기에서 $\kappa = p_s\theta_1$ 이다.

효용극대화를 위한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U_{h,t}}{\partial I_{h,t}} = \frac{-(1-\alpha)}{(1-\tau)(1-\phi\beta_h)Y_{h,t} - I_{h,t}} + \frac{\alpha\kappa}{I_{h,t}} = 0 \quad (8)$$

식 (8)로부터 식 (9)와 같은 최적투자수준 $I_{h,t}^*$ 가 구해진다:

$$I_{h,t}^* = \frac{\alpha\kappa}{1-\alpha(1-\kappa)}(1-\tau)(1-\phi\beta_h)Y_{h,t} \quad (9)$$

따라서 $I_{h,t}^*$ 는 부모의 이타주의 정도(α)와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κ)즉 학력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위의 식 (3), (4), (5), (6) 그리고 (9)으로부터, 엘리트 계급의 세대 간 소득이전 (income transmission)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 Y_{h,t+1} = \kappa(2-\gamma)\log Y_{h,t} + \kappa \log \frac{\alpha\kappa(1-\tau)(1-\phi\beta_h)}{1-\alpha+\alpha\kappa} + \kappa(\gamma\log\phi + (1-\gamma)\log\phi\beta_h(1-\tau)) + p_s \bar{e}_h + \mu \quad (10)$$

2.2 시민계급

대표 시민계급부모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_{l,t} = (1-\alpha)\log C_{l,t} + \alpha\log Y_{l,t+1} \quad (11)$$

여기에서 $C_{l,t}$ 는 시민계급부모의 평생소비를 $Y_{h,t+1}$ 대표 시민계급자녀의 평생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시민계급부모의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1-\tau)Y_{l,t} = C_{l,t} + I_{l,t} + L_{l,t} \quad (12)$$

시민계급 자녀의 $t+1$ 기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log Y_{l,t+1} = \mu + p_s \Pi_{l,t} \quad (13)$$

시민계급 자녀의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축적은 다음과 같다:

$$\Pi_{l,t} = \theta_1(\log I_{l,t} + \log GV_{l,t}) + \bar{e}_l \quad (14)$$

$$\bar{e}_h > \bar{e}_l \quad (15)$$

시민계급 자녀를 위한 정부지출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사실상의 정치권력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 한다:

$$GV_{l,t} = W_l^\gamma L_{l,t}^{1-\gamma} \quad (16)$$

$$W_l = 1 - \phi \quad \text{그리고} \quad L_{l,t} = (1-\phi)\beta_l(1-\tau)Y_{l,t} \quad (17)$$

$$0 \leq \beta_l \leq 1$$

시민계급도 사실상의 정치권력획득을 위해서 가처분소득의 일부를 투자를 하는데 이는 로비나 정치적 참여를 통한 투자이외에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특히 노동조합의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도 포함된다.

위의 식들로부터 시민 계급의 세대 간 소득이전(income transmission)이 다음과 같이 유도 된다:

$$\log Y_{l,t+1} = \kappa(2-\gamma)\log Y_{l,t} + \kappa \log \frac{\alpha\kappa(1-\tau)(1-(1-\phi)\beta_l)}{1-\alpha+\alpha\kappa} \quad (18)$$

$$+ \kappa(\gamma\log(1-\phi) + (1-\gamma)\log(1-\phi)\beta_l(1-\tau)) + p_s \bar{e}_l + \mu$$

$\log Y_{h,t+1} - \log Y_{l,t+1} = G_{t+1}$ 그리고 $\log Y_{h,t} - \log Y_{l,t} = G_t$ 라 하자. 이 경우 G_{t+1} 은 자녀 세대에서 엘리트계급과 시민계급사이의 소득격차를 그리고 G_t 는 부모세대의 엘리트 계급과 시민계급사이의 소득격차를 나타낸다.

식 (10)에서 식 (18)을 차감하면 다음과 같은 식 (19)가 도출된다:

$$G_{t+1} = \kappa(2-\gamma)G_t + \kappa \left[\gamma \log \frac{\phi}{1-\phi} + (1-\gamma) \log \frac{\phi\beta_h}{(1-\phi)\beta_l} \right] \quad (19)$$

$$+ p_s (\bar{e}_h - \bar{e}_l) + \kappa \log \frac{1-\phi\beta_h}{1-(1-\phi)\beta_l}$$

식 (19)를 보면 자녀세대에 있어서 엘리트계급과 일반시민계급간의 소득격차(G_{t+1})는 부모들 세대의 소득불평등정도(G_t)와 정치적 불평등정도,

$\left[\gamma \log \frac{\phi}{1-\phi} + (1-\gamma) \log \frac{\phi\beta_h}{(1-\phi)\beta_l} \right]$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가족이 제공하는 상이한 배경($\bar{e}_h - \bar{e}_l$)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가처분소득 중 자녀교육 투자로 배분하는 비중 $\left[\log \frac{1-\phi\beta_h}{1-(1-\phi)\beta_l} \right]$ 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자녀들 세대에 있어서 엘리트계급과 일반시민계급간의 소득불평등정도는 세가지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생산시스템(production system), 정치제도 그리고 가족이다. κ 는 생산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교육투자수익률(학력프리미엄)을 나타낸다. 기업특수적 기술이나 산업특수적 기술이 가치를 갖는 생산시스템의 경우, 기술과 지식이 대학교육보다는 기업 내에서 혹은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운영하는 기술학교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학력프리미엄(κ)이 낮다. 반대로 범용기술에 기초한 포디즘의 경우나 혹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산업에 기초한 생산시스템의 경우는 대학을 비롯한 학교에서 축적한 기술이 가치를 갖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다. 따라서 학력프리미엄이 높은 생산시스템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동기도 높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엘리트부모들은 시민계급의 부모들에 비하여 자녀교육투자재원마련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앞의 <그림 22>의 위대한 개츠비 곡선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특수적 혹은 기업특수적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인 북구와 일본 그리고 독일은 범용기술에 기초한 생산시스템

을 가진 영국과 미국에 비하여 부모소득의 자녀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제도는 법률과 정치제도이다. γ 는 정치적 평등의 정도를 나타낸다. 법에 의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 행사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덜 받도록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보정수단(예를 들어 국선번호인 제도나 선거비용지출의 상한선 설정)과 규제(로비와 뇌물)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존재 및 효율성 여부가 정치적 평등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또한 두 계급간의 사실상의 정치권력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법률의 보장정도도 또한 정치적 평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률과 정치제도가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bar{e}_h 는 가족제도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특성인 지적 혹은 신체적 능력과 무형의 유산(가족의 네트워크이나 가족의 평판)이 가족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식 (19)의 양변에서 G_t 를 차감하면 다음과 같다:

$$\Delta G = G_{t+1} - G_t = [\kappa(2-\gamma) - 1]G_t + \kappa\left[\gamma\log\frac{\phi}{1-\phi} + (1-\gamma)\log\frac{\phi\beta_h}{(1-\phi)\beta_l}\right] + p_s(\bar{e}_h - \bar{e}_l) + \kappa\log\frac{1-\phi\beta_h}{1-(1-\phi)\beta_l} \quad (20)$$

$A = [\kappa(2-\gamma) - 1]$ and

$$B = \kappa\left[\gamma\log\frac{\phi}{1-\phi} + (1-\gamma)\log\frac{\phi\beta_h}{(1-\phi)\beta_l}\right] + p_s(\bar{e}_h - \bar{e}_l) + \kappa\log\frac{1-\phi\beta_h}{1-(1-\phi)\beta_l}$$

라 가정한다. 그리고 $\kappa > \frac{1}{(2-\gamma)}$ 이면 $A > 0$ 이고 $\kappa < \frac{1}{(2-\gamma)}$ 이면 $A < 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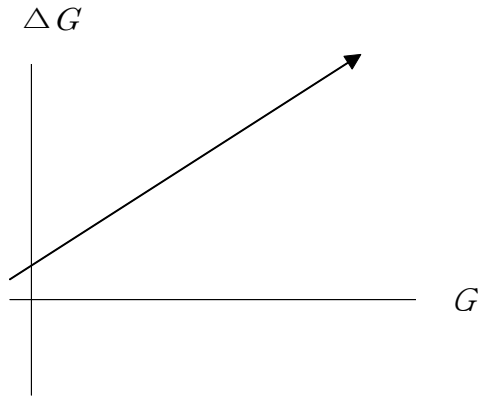
식 (20)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elta G = AG_t + B \quad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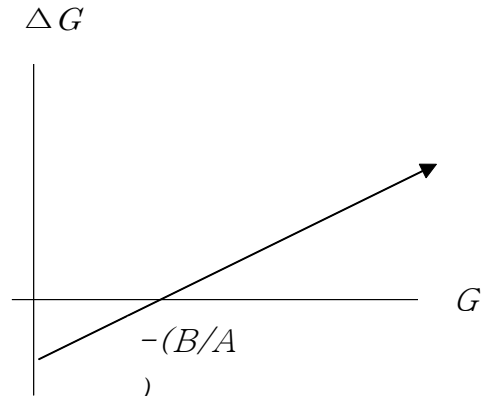
식 (21)이 의미하는 바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하여 엘리트계급과 일반시민계급사이의 소득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여부($\Delta G > < 0$)는 부모들 세대의 소득격차(G_t)수준과 A 와 B 의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18> 다양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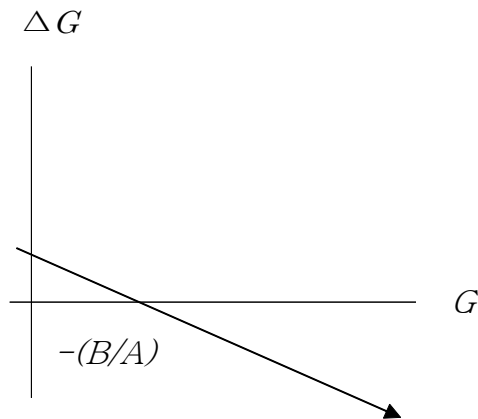
경우 1) $A > 0$ and $B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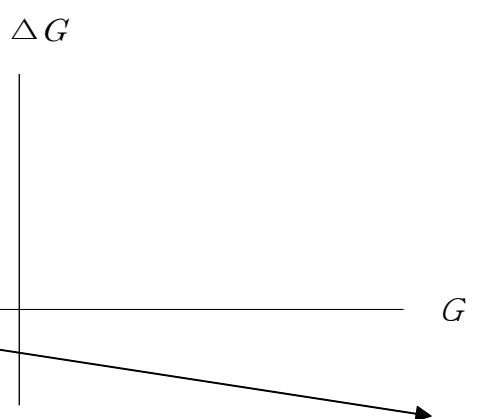
경우 2) $A > 0$ and $B < 0$



경우 3) $A < 0$ and $B > 0$



경우 4) $A < 0$ and $B < 0$



<그림 18>의 경우 1은 $A > 0$ 즉 $\kappa > \frac{1}{(2-\gamma)}$ 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고 정치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이 높아 $B > 0$ 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이 부모세대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우이다.

경우 2는 $A > 0$ 로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높으나 시민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엘리트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보다 충분히 우위에 있어 $B < 0$ 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영향력이 충분히 강한 경우이다. 이 경우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이었느냐에 따라서 부모세대에 비하여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이 감소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frac{B}{A})$ 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 자녀세대의 소

득불평등은 부모의 세대의 소득불평에 비하여 감소하는 반면 부모세대의 소득불평 등 정도가 커서 $(-\frac{B}{A})$ 보다 클 경우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증가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높은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동기가 높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교육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높게 된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작고 $(-\frac{B}{A}$ 의 좌측), 사실상의 정치권력에서 우위에 있는 일반시민계급이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재원을 공교육에 투자확대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여 일반시민 계급 자녀들의 인적자본축적을 돕게 될 경우 부모세대에 비하여 자녀세대에 있어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충분히 큰 경우 $(-\frac{B}{A}$ 의 우측), 엘리트 부모의 사적인 교육투자수준이 시민계급이 공교육투자 확대를 통하여 교육투자수준을 늘리는 것보다 충분히 크다면 자녀세대의 소득격차가 부모세대의 소득격차에 비하여 증가하게 된다.

경우 3은 경우 2와 반대이다. $A < 0$ 이고 $B > 0$ 인 경우다.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낮은 반면 정치적 불평등이 높거나 기회의 불평등이 높은 경우이다.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경우 $(-\frac{B}{A}$ 의 좌측)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증가하는 반면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충분히 클 경우 $(-\frac{B}{A}$ 의 우측)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감소한다.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정도와 정치적 불평등정도가 충분히 높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낮아 엘리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동기도 낮고 이에 따라 자녀세대에는 부모세대에 비하여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frac{B}{A}$ 의 좌측은 투자수익률은 낮지만 정치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이 높아 낮은 투자수익률의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A < 0$ 이고 $B < 0$ 인 경우는 부모세대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세대의 불평등은 부모세대에 비하여 감소한다. 즉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도 낮고 시민계급의 사실상의 정치권력이 엘리트들의 사실상의 정치권력보다 충분히 큰 경우 자녀세대에는 부모세대에 비하여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북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IV. 불평등 해소에서의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역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소득양극화와 불평등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개혁,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교육기회의 균등실현 그리고 사회 안정망 강화 등이 정책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대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이 정치적 불평등 및 기회의 불평등해소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불평등의 누적적 증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북구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이 세 가지 불평등이 뚜렷하게 낮다는 것이다. 반면에 영미권 국가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정도가 여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1>).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영국과 미국이 0.34~0.38인 반면 북구(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는 0.25~0.26이다. 앞의 개츠비 곡선에서 구한 부모소득에 대한 자녀소득의 탄력도를 기회의 불평등정도라 보면 영국과 미국은 0.47~0.50인 반면 북구는 0.15~0.27로 보다 평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평등은 EU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것인데 저소득계층의 투표 및 정치적 참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미국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여타 북구국가들이 영국과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정치적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적 참여율도 북구국가들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구국가들이 영국과 미국 그리고 여타 대륙유럽국가에 비해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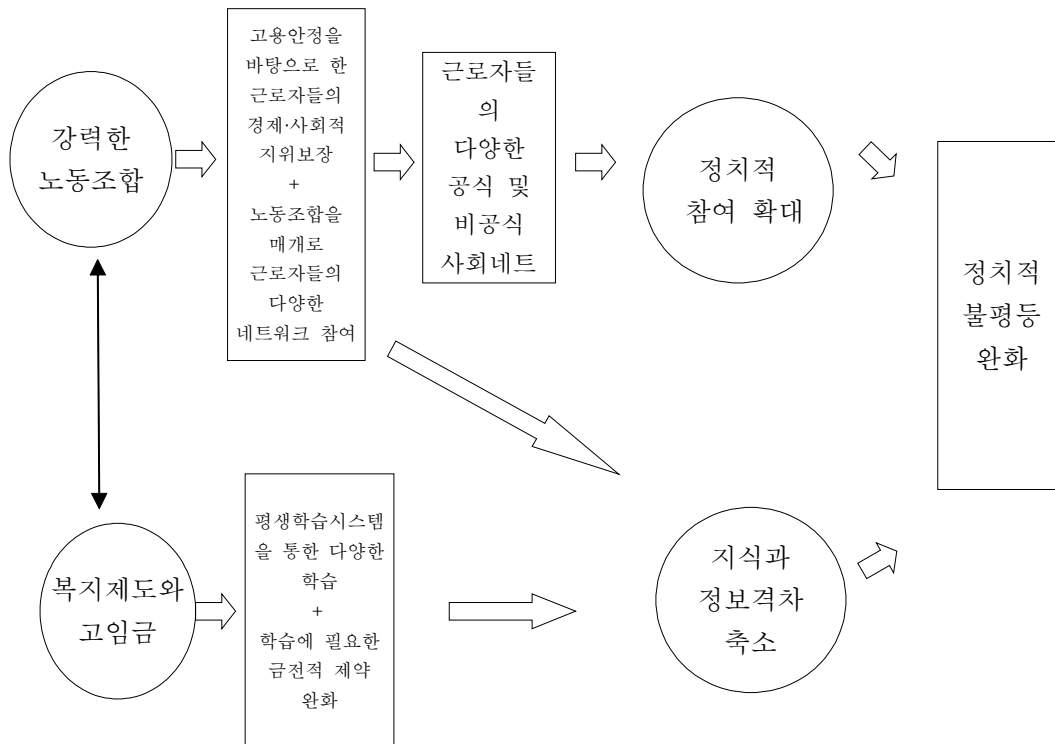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기회의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정치적 참여율 (%)	노조 가입률 (%)	대졸의 고졸대비 임금 프리미엄 (%)
영국	0.34	0.50	-0.17	52.7	28.0	65.2
미국	0.38	0.47	.	.	12.1	91.6
프랑스	0.29	0.41	0.09	56.0	7.6	58.8
독일	0.30	0.32	-0.07	58.5	20.7	46.3
스웨덴	0.26	0.27	-1.44	69.7	75.1	29.6
핀란드	0.26	0.18	-0.02	66.4	71.7	52.6
노르웨이	0.25	0.17	-0.80	68.4	54.8	.
덴마크	0.25	0.15	-2.24	62.6	69.4	47.6

주: 지니계수는 2008년 기준이며 세후지니계수이다; 기회의 불평등은 <그림 13>의 Y축인 부모소득에 대한 자녀소득의 탄력도이다; 정치적 불평등과 정치적 참여는 2008년 기준이며 Dubrow(2010) 참조; 노조 가입률은 2007년 기준임; 정치적 불평등과 정치참여는 EU자료를 기초하고 있어 미국에 관한 자료가 없

음; 임금 프리미엄 관련 자료는 2001년 기준이며 출처는 Strauss and de la Maisonneuve (2009), p. 21.

국가 간 불평등 정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림 19>와 같이 복지제도 및 노동조합의 역할이다(Hacker and Pierson, 2010; Schneider and Makszin, 2014). 노동조합과 복지제도는 소득불평등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학자들(Bartel, 2008; Hacker and Pierson, 2010)은 미국에서 정치적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로, 저소득계층의 이해를 대변해왔던 노동조합의 약화와 저소득계층의 낮은 정치적 참여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계층의 정치적 참여정도가 낮은 이유로 정보와 소득의 부족 그리고 사회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을 들고 있다.

<그림 19> 노동조합과 복지제도의 정치적 불평등 완화에서의 역할



자료: Hacker and Pierson (2010)과 Schneider and Makszin (2014)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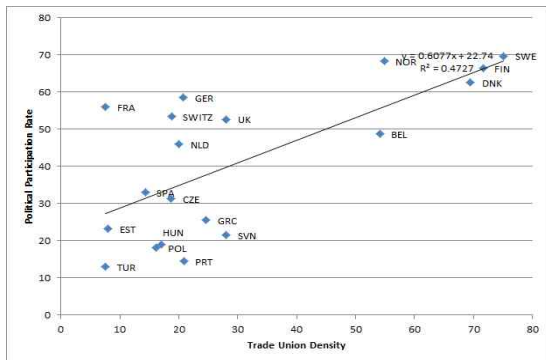
Schneider and Makszin는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Schneider and Makszin는 저소득층의 정치적 참여부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의 경우는 저소득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들도 미국과는 달리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의 경우 저소득층들이 노동조합과 복지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사회네트워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강력한 노동조합과 복지제도는 고 임금과 높은 사회복지혜택을 보장하고 이는 정치참여와 학습에 소요되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 불평등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37개국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 이들은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고용보호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계층 간 지식 및 정보의 격차, 소득격차 그리고 노조참가율 격차가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고용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저소득층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하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20>~<그림 23>은 Schneider and Makszin의 주장을 EU국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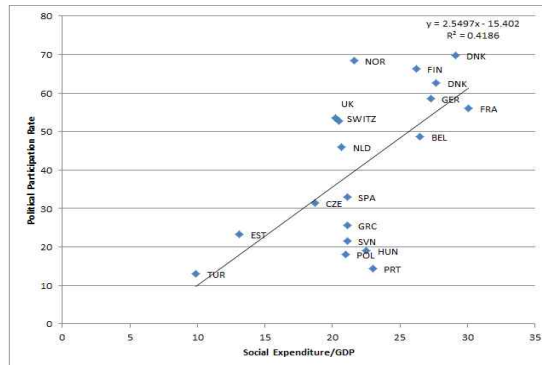
EU국가의 노조가입률과 정치적 참여



자료: 정치적 참여는 Dubrow(2010), p. 109;
노조가입률은 OECD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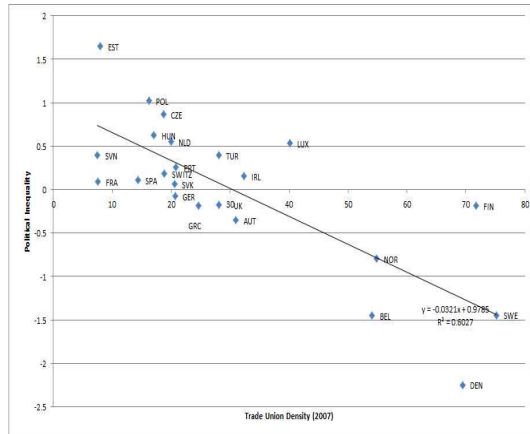
<그림 21>

EU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정치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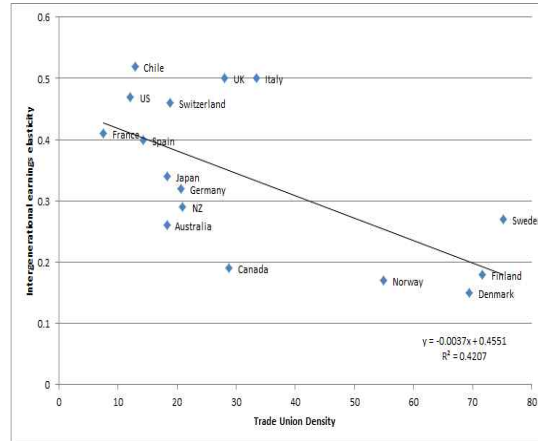
자료: 정치적 참여는 Dubrow(2010), p. 109;
사회복지지출은 OECD DB.

<그림 22> EU 국가의 노조가입률과
정치적 불평등



자료: 정치적 불평등은 Dubrow(2010), p. 109;
노조가입률은 OECD DB.

<그림 23> 노조가입률과 기회의 불평등



자료: 기회의 불평등은 Corak, p. 82.
노조가입률은 OECD DB.

위의 그림들은 EU의 노조가입률 및 사회복지비지출과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도 혹은 기회불평등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노조가입률은 2007년 기준이며 정치적 참여정도는 2008년 기준이다. 정치적 참여정도는 Dubrow (2010)가 EU의 ESS(European Social Survey) 2008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⁵⁾. <그림 20> 및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회귀분석결과 계수가 정의 값을 가지며 R^2 가 0.42~0.47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 지출과 노조 가입률이 높은 북구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여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에서 정치적 불평등정도와 노조가입률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단순회귀분석결과 계수가 음(-)의 부호를 보이며 R^2 도 0.6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조가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치적 불평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23>은 노조가입률과 기회의 불평등간을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계수가 음(-)의 값을 R^2 는 0.42로 나타났다. 노조가입률이 높아 노조의 영향력과 교섭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회의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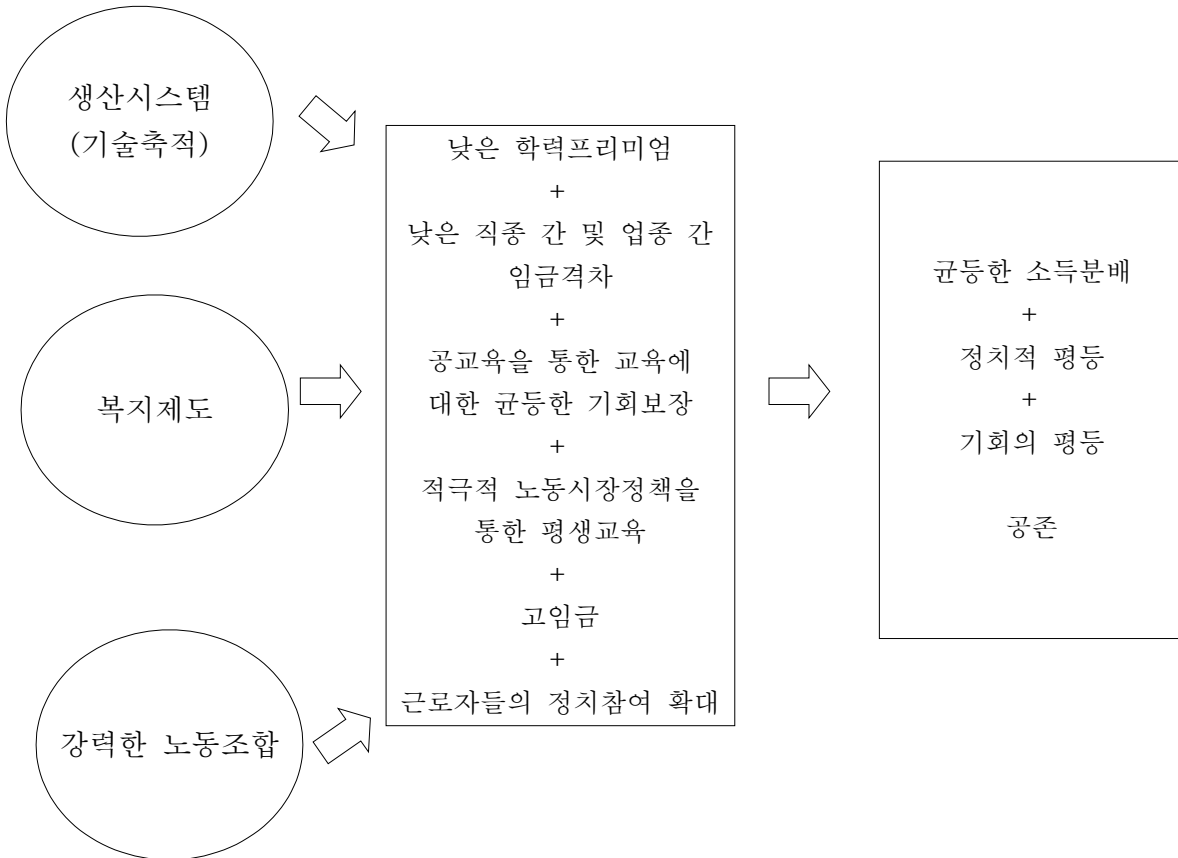
<그림 24>는 북구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균등한 소득분배, 정치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이루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제도가 상호 결합되어 나타난 것인데 첫째는 생산시스템 혹은 기술축적시스템이다. 북구의 경우 영미와 같은 범용적 기술보다는 기업특수적 기술이나 산업특수적 기술에 기초하고 있어 (Estebez-Abe et al., 2001) 영미국가에 비하여 학력프리미엄이 낮다. <표 1>을 보

5) 정치적 참여의 정도는 다음 항목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지난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정치가나 정부 관료를 만난 적이 있는지? 정당이나 시민활동에 참여하였는지? 기타 조직이나 협회에 참여하였는지? 캠페인 배지나 스티커를 착용하였는지? 합법적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탄원서에 서명하였는지? 제품보이콧운동에 참여하였는지? 이다.

면 대졸의 고졸대비 임금프리미엄 정도를 보이는데 미국이 가장 높은 91.6%, 영국이 65.2% 그리고 프랑스가 58.8%이다. 북구와 독일은 이들보다 낮은 수준인데 스웨덴은 가장 낮은 29.6%, 독일 46.3%, 덴마크 47.6% 그리고 핀란드가 52.6%이다. 북구의 낮은 학력프리미엄은 영미 국가에 비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게 된다. 또한 중앙집중식 단체교섭과 동일 직종 동일 임금의 연대임금제도 운영을 통하여 산업 간 혹은 직종 간 임금격차가 작다. 그리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공교육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평생교육시스템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기술확산에 따른 임금격차(소위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의한 임금격차)를 줄여주고 또한 복지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은 근로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보와 지식격차 축소에 기여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강력한 노동조합(<표 1> 참조)은 교섭력을 바탕으로 경제성과의 균등한 배분을 이끌어내고 고임금을 보장하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Miettinen(2013)는 북구국민들이 대륙유럽의 국민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이것이 북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프랑스 국민의 50% 그리고 독일과 벨기에 국민의 29%가 사회단체에 가입한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 국민은 90%가, 노르웨이 국민은 80%이상 그리고 핀란드 국민은 76%가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사회문제의 집단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24>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하여 북구국가들은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에, 영미권 국가는 북구국가와는 달리 범용기술에 기초한 생산시스템, 복지제도의 미발달 그리고 낮은 노조가입률 등에 기초하고 있어 높은 소득불평등, 높은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높은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 북구의 균등한 소득분배, 정치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 공존



자료: 필자가 작성

V. 결론

복지를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될 보편적인 권리로 격상시킨 토마스 마샬(T.H. Marshall)은 시민권(공민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의 역사적 진화를 영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률상의 평등은 현실에 있어서는 계층 간 지식 및 정보의 격차와 소득격차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 국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정제도(국선번호인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비용 보조 그리고 선거비용의 상한선 설정)를 마련하여 왔다. 그리고 토마스 마샬은 시민권의 세 형태인 공민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권리가 서로서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옌과 롤스 그리고 폴라니도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에 대한 권리는 공민권과 참정권이 확립되고서야 나타났지만 또한 공민권과 참정권의 행사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소위 바닥을 향한 근로자간 임금경쟁으로 인하여 공민권의 기초인 공정함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없으며 참정권의 행사도 금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오쿤도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했으며 마샬도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정당성을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정보와 지식 격차해소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률상의 평등실현에 도움이 되는 보정제도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문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평등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은 북구의 소득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정치적 평등과 기회균등 실현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그 결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한 영미권에 비하여 북구 국가들은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이후 소득불평등 축소에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남미의 경우도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이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지만 남미국가들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8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에 대한 이슈가 정치쟁점화 되었으며 시민계급의 시위와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8-2011년 기간에 11개 국가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섰으며 이 좌파정권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Roberts, 2012). 브라질에서 볼 수 있는 제도화된 최저임금형성(물가와 성장률에 연동), 인적자본축적과 복지제도의 연계 그리고 최저임금과 다양한 사회적 부조의 연계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성과를 다양한 계층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형성했으며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기회의 균등을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실험은 미진한 투자와 생산성향상 그리고 세계화의 위협으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한국과 선진국들이 다양한 불평등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북구의 성과나 남미의 성공을 보았을 때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정의실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사례는 오쿤의 주장과는 달리 성장과 평등이 트레이드 오프관계가 아니며 이들을 양립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설계 특히 복지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성장과 평등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복지 그리고 성장간의 새로운 선순환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복지제도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cemoglu, D., S. Restrepo, J. Robinson (2013), “Democracy, redistribution and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 19746.
- Acemoglu, D. and J. Robinson (2008), “Persistence of power, elites, and institu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8(1), pp. 267–93.
-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ask Force (2004), “American democracy in an age of rising inequality”,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2(4), pp. 651–666
- Bailey, M. J. and S. M. Dynarski (2011), “Inequality in post secondary education”, In Greg J. Duncan and Richard J. Murnane (eds), *Whither Opportunity? Rising Inequality, Schools, and Children’s Life Chanc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artel, L.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a new gilded 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Bonica, A., N. McCarty, K. Poole and H. Rosenthal (2013), “Why hasn’t democracy slowed rising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3), pp. 103 - 124.
- Carasso, A., G. Reynolds, and C. E. Steuerle (2008), *How much does the federal government spend to promote economic mobility and for whom?* Washington DC: Economic Mobility Project, Pew Charitable Trusts.
-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pp. 79–102.
- Dubrow, J. (2010), “Cross-National measures of political inequality of voice”, *ASK*, Vol. 19(1), pp. 93–110.
- Estevez-Abe, M., T. Iversen and D. Soskice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A. Hall and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lens M. (2005), “Inequality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9(5), pp. 778–796.
- Hacker, J. and P. Pierson (2010), *Winner-take-all politics: How Washington made the rich richer and turned its back on the middle class*,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 가? 조자현 옮김, 21세기 북스, 2012)
- Lustig, N., L. Lopez-Calva and E. Ortiz-Juarez (2013), “Declining inequality in Latin America in the 2000s: The cases of Argentina, Brazil, and Mexico”, *World Development*, Vol. 44, pp. 129-141.
- Meltzer, A. H. and S. F. Richard(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pp. 914-927.
- Miettinen, R. (2013), *Innovation, human capabilities,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anovic, B. (2013), “Global income inequality in numbers: In history and now”, *Global Policy*, Vol. 4(2), pp. 198-208
- OECD (2011), *Divided we stand : WHY inequality keeps rising*, Paris: OECD.
- Okun, A.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 off*,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Ostry, J., A. Berg and C. 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14/02.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Piketty, T. and E. Saez, (2007), “How progressive is the U.S. federal tax system?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1(1), pp. 3-24.
-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 Roberts, K. M. (2012), “The politics of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in Latin America’s post-adjustment era”, *UN-WIDER Working Paper*, No. 2012/08.
- Roemer, J. E. (2004). “Equal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Going beyo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ition matrices.” In M. Corak (ed), *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neider, C. and K. Makszin (2014), “Forms of welfare capitalism and education-based participatory inequality”, *Socio-Economic Review*, Vol. 12, pp. 437 - 462
- Solon, G. (2004). “A mod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variation over time and place.” In M. Corak (ed), *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iglitz, J.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Stockhammer, E. (2012), "Rising inequality as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PERI Working Paper Series* 282.
- Strauss, H. and C. de la Maisonnette (2009), "The Wage Premium on Tertiary Education: New Estimates for 21 OECD countrie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 2009.
- Tridico, P., 2012, "Financial crisis and global imbalances: its labour market origins and the aftermath,"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36(1), pp. 17-42.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홍장표(부경대)

1. 배경: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2.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한계
3. 대안적 성장모델의 모색
4. 최경환 경제팀 신성장정책의 문제점
5.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1. 배경: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적 양극화

○ 성장둔화

- GDP성장을 둔화: 8.4%(87~97)→5.8%(99~07)→2.9%(08~13)
-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내수위축
 - 민간소비 둔화: 8.1%(87~97)→5.6%(99~07)→2.0%(08~13)
 - 투자 부진: 11.8%(87~97)→4.9%(99~07)→0.7%(08~13)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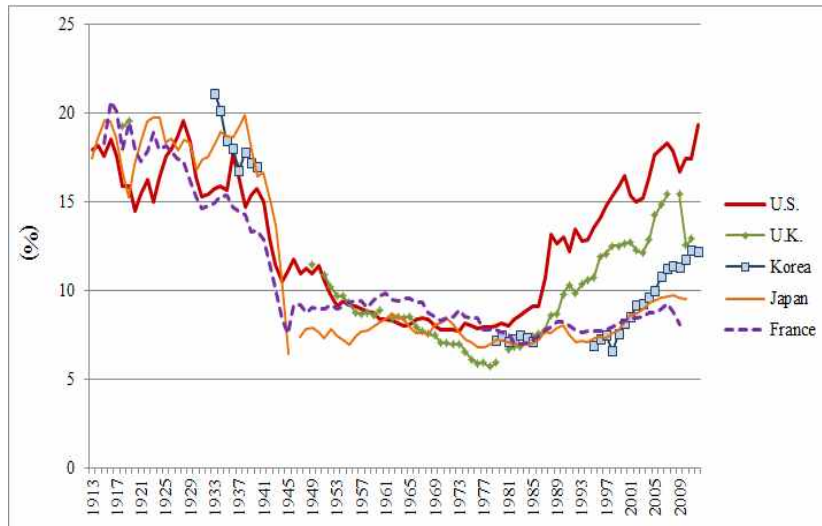
구분	기호	1981~1986	1987~1997	1999~2007	2008~2013
GDP 증가율	\hat{y}	9.6	8.4	5.8	2.9
소비 증가율	\hat{c}	7.6	8.1	5.6	2.0
투자 증가율	\hat{i}	9.0	11.8	4.9	0.7
수출 증가율	\hat{x}	12.9	12.7	11.9	6.3
(세계수입 증가율)	\hat{z}	5.4	7.8	7.7	2.5
수입 증가율	\hat{m}	7.9	14.1	12.4	4.3
고용 증가율	\hat{l}_1	4.5	4.3	3.0	2.1
	\hat{l}_2	3.1	3.5	2.3	1.3

주: l_1 은 임금근로자수, l_2 는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자영업자수)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증가세도 둔화

- 수출 증가: 12.7%(87~97)→11.9%(99~07)→6.3%(08~13)
- 고용둔화
 - 임금근로자수 증가: 4.3%(87~97)→3.0%(99~07)→2.1%(08~13)
- 소득분배 악화
 - 상위 1% 소득집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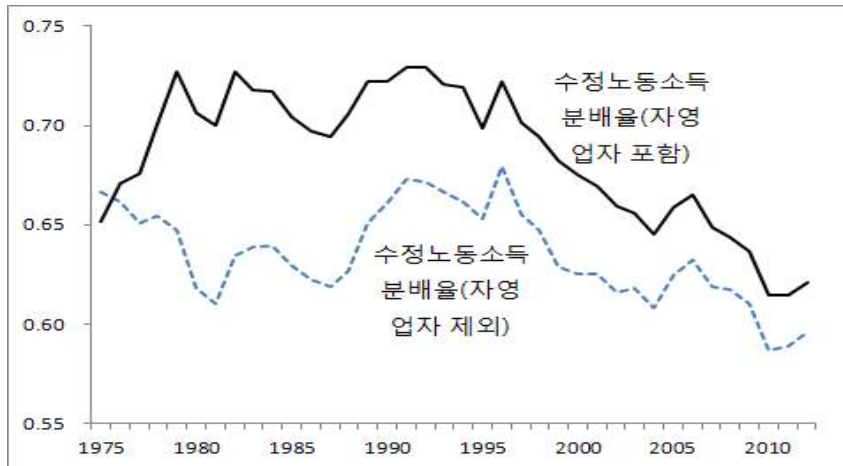
<그림 1> 상위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자료: 김낙년(2014)

- 노동소득분배율(v)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하락 추세

<그림 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임금근로자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부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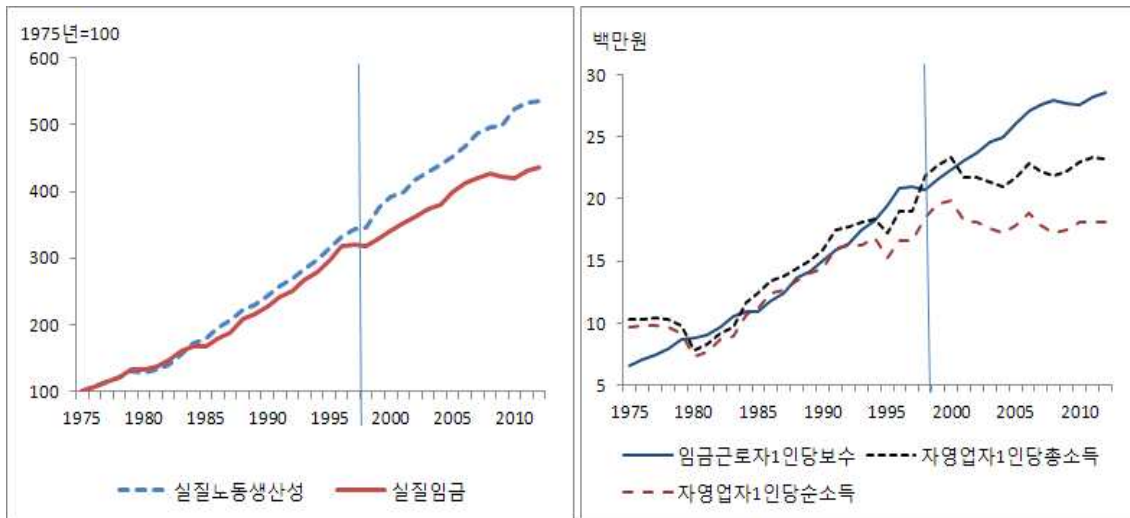
$$v_1 = (\text{피용자보수}) / (\text{총부가가치} - \text{자영업자소득})$$

- 자영업부문을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

$$v_2 = (\text{피용자보수} + \text{자영업자 노동소득}) / \text{총부가가치}$$

- 소득분배 악화 요인: 비정규직 증가, 생산의 세계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 > 실질임금 증가율
-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 정체

<그림 3>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그림 4>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1인당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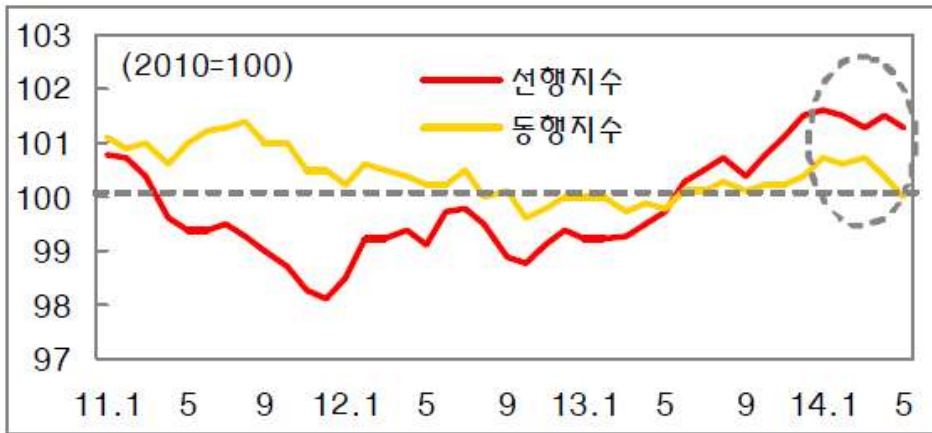


- 주: 1)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 보수=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2) 자영업자 1인당 총소득=(가계부문 영업잉여+가계부문 고정자본소모)/자영업자수
 3) 자영업자 1인당 순소득=(가계부문 영업잉여)/자영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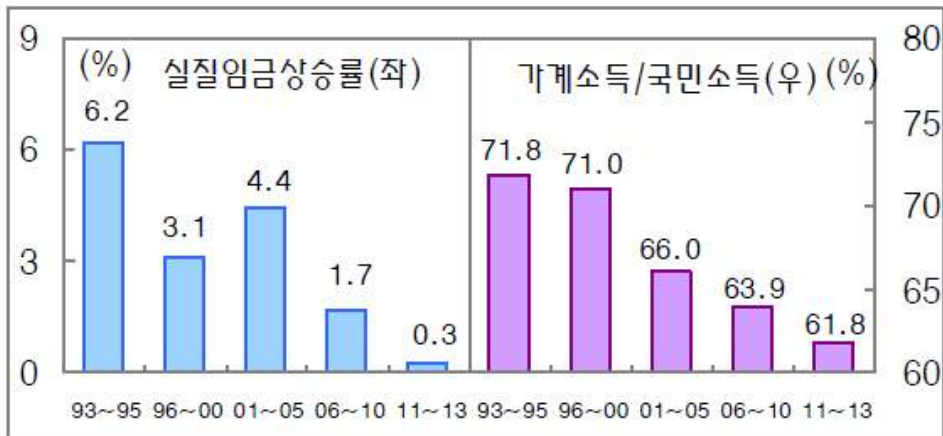
□ 최근 거시경제 현황: 일본식 장기불황 경로 진입?

- 불안정한 경기회복
 - 경기순환상 회복국면 진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복세가 부진
- 경기부진은 내수부진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비롯
 - 노동소득/가계소득 부진 → 내수 위축
 - 과다한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 제약
 - 내수부진으로 투자행태가 보수화

<그림 5> 경기동행 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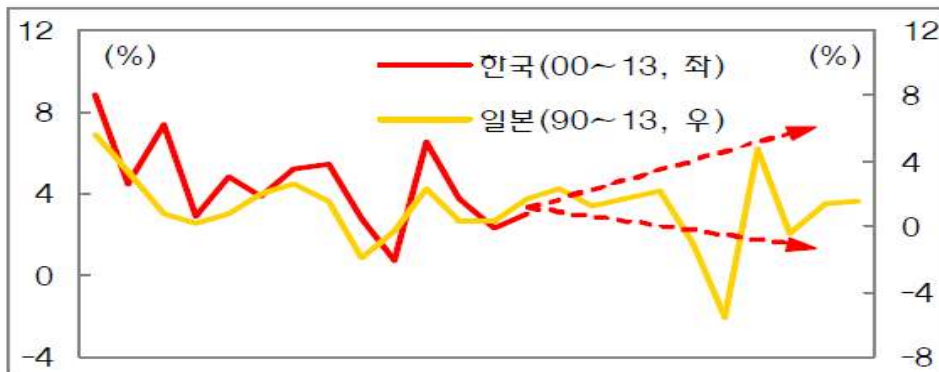
<그림 6> 노동소득과 가계소득 현황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 저성장, 저물가, 자산시장 부진 등

<그림 7>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추이



자료: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7.24.

2.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한계

□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과 한계

○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특징

- 대기업 위주 수출주도 성장(export-led growth):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으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존
- 부채주도 성장(debt-led growth): 노동소득,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소비지출 위축을 부채에 의한 소비지출로 대응

○ 수출주도와 부채주도 성장은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의 쌍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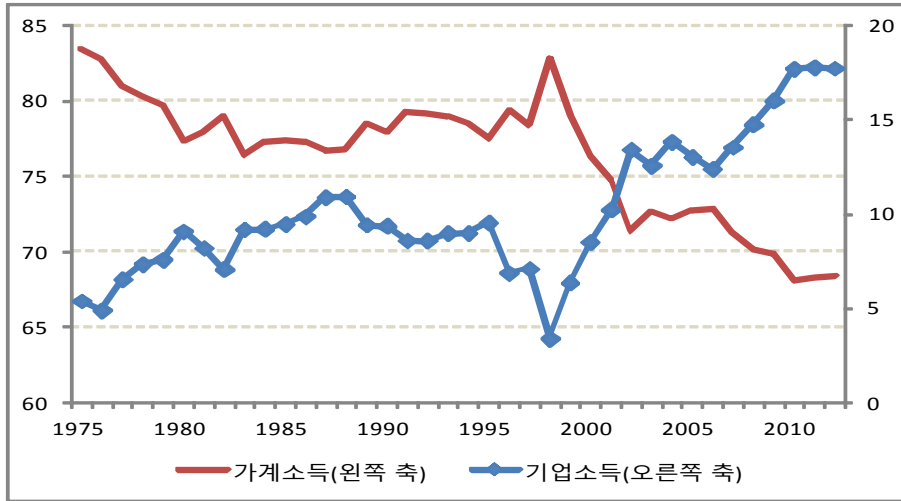
-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성장전략의 목표
 -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로 기업의 수익성 증가→ 투자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화(고용보호의 감축, 분권적 개별적 임금협상, 낮은 최저임금)→ 노동비용 절감→ 수출 촉진
- 이윤주도성장의 함정
 - 가계소득 위축→소비지출 둔화(→투자부진)→ 유효수요 부족(내수부진)
-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두 대응
 - 자본유입국(미국,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금융규제완화로 부채에 의한 소비 유도(=부채주도성장)
 - 자본유출국(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내수부진을 수출로 만회(=수출주도성장)

○ 한국경제 성장전략의 한계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악화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소득불평등 심화
 - 거대 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동반성장 저해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침식과 갈등조정비용 증가
- 세계경제 불황국면의 불안정성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 가계부채 1,000조원 vs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516조원

-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

<그림 8>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주: 1) 기업소득=일반기업소득+금융기업소득
 2) 가계소득=피용자보수+가계부문 영업잉여+재산소득

□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

○ 수출제조업 3개업종 상위 3사의 생산유발효과 분석

- 자료: KED(주) DB의 2011년도 기업자료(54,269개사), 금융감독원, 기업별 감사보고서(2011)
- 대기업 현황: 2011년

업종	대기업명	매출액	수출비	부가가	부가가	(지분보유)자회사수		
		(십억원)	(%)	치	치율	국내	해외	계
전자	삼성전자	120,816	84.2	13,120	10.9	64	75	139
	LG전자	28,097	85.6	1,470	5.2	23	77	100
	SK하이닉스	10,188	96.0	748	7.3	8	15	23
자동차	현대자동차	42,774	61.0	6,614	15.5	40	33	73
	기아자동차	27,742	60.5	3,221	11.6	19	27	46
	한국지엠	15,068	63.0	2,014	13.4			
조선	현대중공업	25,020	62.5	2,905	11.6	62	29	91
	삼성중공업	13,359	86.1	1,272	9.5	14	7	21
	대우조선해양	12,258	98.2	1,082	8.8	3	18	21
계		295,322	77.5	32,446	10.4	233	281	514

- 대기업 9사 매출액/제조업 전체 매출액=19.8%
- 대기업 9사 부가가치액/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액=6.8%

- 대기업 9사 직간접 매입(·비용)거래기업수

(단위: 사)

업종	대기업	매입거래기업수						합계
		거래단계별				계열별		
		1차	2차	3차	4차 이상	계열사	비계열사	
전자	삼성전자	815	2,050	1,881	2,784	23	7,507	7,530
	LG전자	520	1,309	1,182	1,354	22	4,343	4,365
	SK하이닉스	336	251	65	6	3	655	658
자동차	현대자동차	489	1,674	1,544	1,484	20	5,171	5,191
	기아자동차	233	645	281	74	19	1,214	1,233
	한국GM	239	848	698	780	0	2,565	2,565
조선	현대중공업	1,251	1,721	750	2,558	6	6,274	6,280
	삼성중공업	428	940	542	742	0	2,652	2,652
	대우조선해양	293	351	61	8	7	706	713
합계		4,604	9,789	7,004	9,790	100	31,087	31,187
실 기업수(중복제거)		3,806	6,146	2,881	1,580	81	14,332	14,413
표본기업내 비중(%)		7.0	11.3	5.3	2.9	0.1	26.5	26.6

○ ‘기업간 거래연관표’ 작성으로 대기업별 생산유발계수 추계

- 대기업의 최종수요 1단위당 생산유발효과

업종	기업명	대기업	거래단계별 협력사				계열구분		생산유발계수	
			1차	2차	3차	4차 이상	계열사	비계열사	기업단위	업종단위*
전자	삼성전자	1.000	0.267	0.020	0.002	0.000	0.141	0.148	1.289	1.712
	LG전자	1.000	0.266	0.026	0.002	0.000	0.120	0.174	1.294	
	SK하이닉스	1.000	0.231	0.009	0.000	0.000	0.020	0.220	1.240	
자동차	현대자동차	1.000	0.423	0.056	0.003	0.000	0.242	0.240	1.482	2.293
	기아자동차	1.000	0.436	0.028	0.001	0.000	0.289	0.176	1.465	
	한국지엠	1.000	0.410	0.049	0.003	0.000	0.000	0.462	1.462	
조선	현대중공업	1.000	0.329	0.025	0.004	0.000	0.034	0.324	1.358	1.810
	삼성중공업	1.000	0.161	0.023	0.001	0.000	0.000	0.185	1.185	
	대우조선해양	1.000	0.196	0.010	0.000	0.000	0.051	0.155	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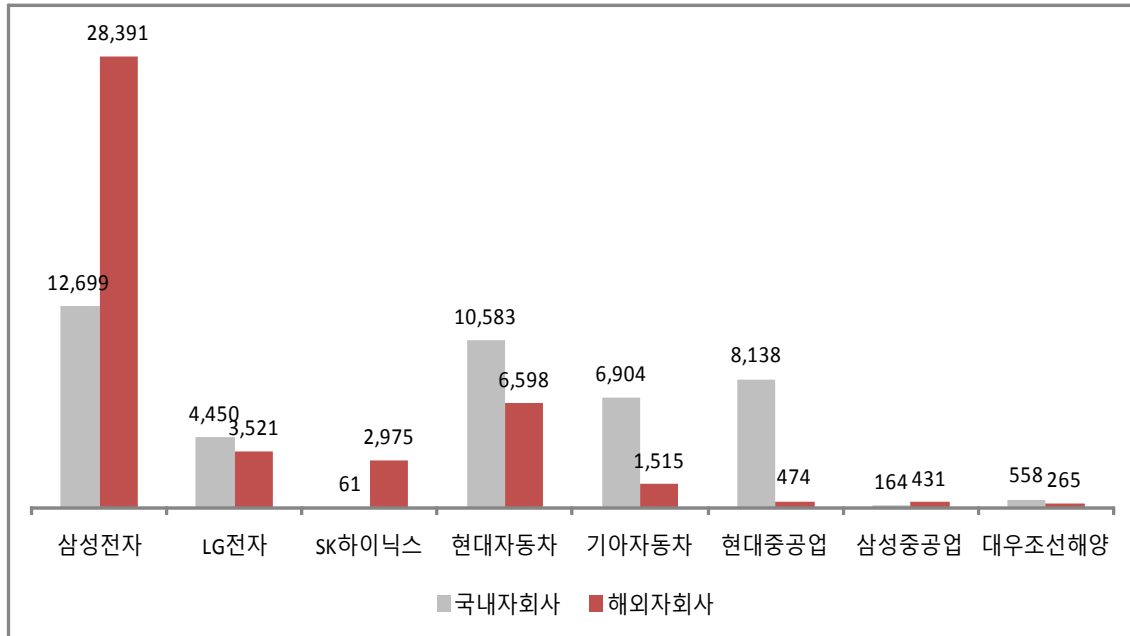
자료: KED(주), 2011년도 DB

주: 업종단위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1)의 해당 업종의 (제조업내) 생산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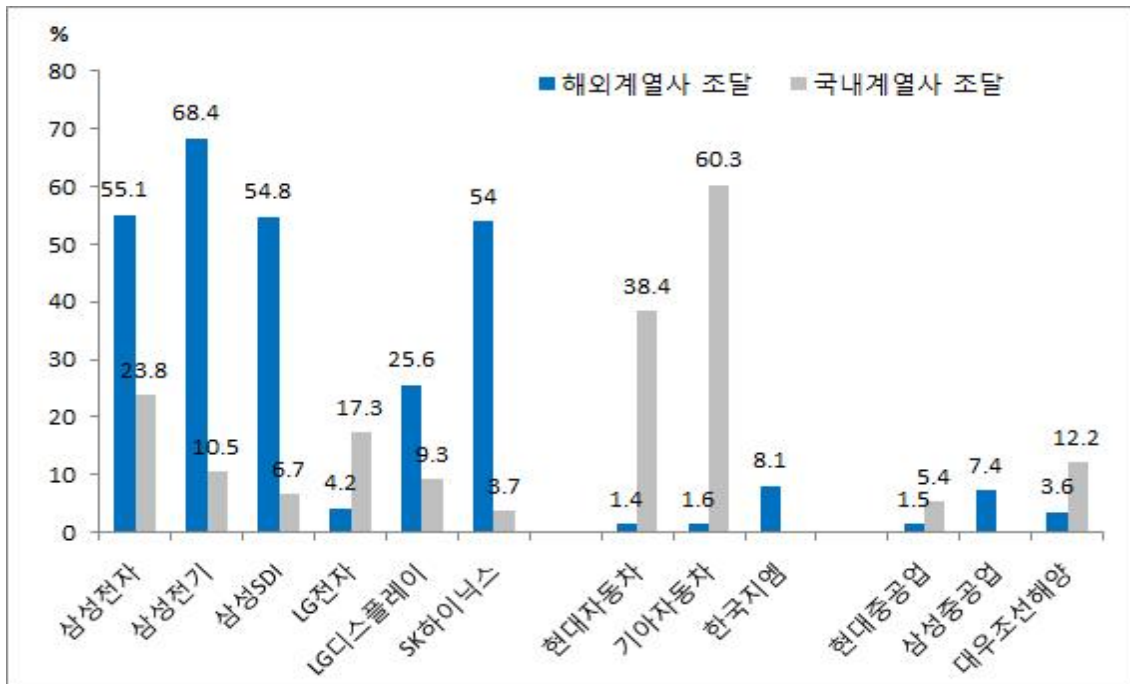
○ 낙수효과 약화 요인: 생산의 세계화와 계열사 위주 조달

- 제조업 주요 대기업의 국내외 자회사 투자액(장부가액 기준)

(단위: 10억원)



- 대기업별 국내외 계열사 조달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2011

3. 대안적 성장모델의 모색: 소득주도성장

□ 국제기구의 대안적 성장모델 제안

-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세계 불황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 성장모델의 대안으로 고용주도,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 제시

<표 2> 고용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고용주도 성장 (1)	임금주도 성장 (2)	소득주도 성장 (3)=(2)+A
기본 방향	• 고용률 증가	• 노동소득증대→노동분배율 개선	• 노동소득과 자영업소득 증대→노동분배율 개선
주요 정책	• 일자리 창출 • 고용의 질 개선	• 최저임금제 강화 • 생산성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 최저임금제 강화 • 생산성임금협약(생산성과 임금 상승의 연계) (A) • 자영업자 소득안정 • 근로빈곤층 생활소득 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수요	• 내수증가(소비증가) • 수출증가	• 내수증가(소비증가)	• 내수증가(소비증가) • 수출증가
공급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임금상승의 생산성 향상효과 • 고부가가치부문의 산업구조개선 효과	•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 투자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고	•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	• 중앙집중적 노사단체 교섭체도가 발달된 국가	•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

자료: Campbell(2011), UNCTAD(2010), Stockhammer & Onaran(2012)

- 고용주도 성장(employment-led growth)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취업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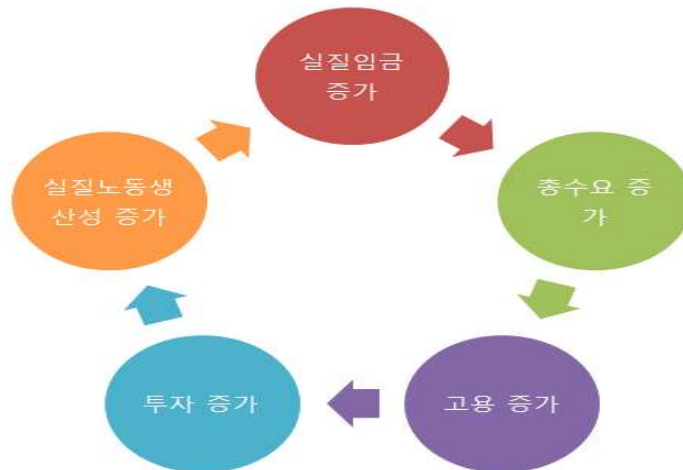
-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 생산성-임금 협약(노동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증가율의 연동)
-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 가계소득 증진, 소득최저선 구성,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 사회복지정책

□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 케인스주의 경제학적 접근: 노동소득과 총수요가 거시경제에서 갖는 긍정적 역할 강조
 - 거시경제에서 노동소득(임금)의 역할
 - 수요측면: 노동소득의 유효수요로서의 역할
 - 공급측면: 노동소득의 생산성 증진과 기술진보 촉매제로서의 역할
 - 소득분배 변화가 총수요뿐 아니라 총공급(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장기 효과 분석 (Naastepad, 2006; Hein & Tarssow, 2010; Storm & Naastepad, 2011)
 -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그림 9>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 거시경제에서의 총수요와 소득분배의 관계
 - 개방경제(정부부문 제외)에서 총산출(Y)은 소비(C) 투자(I), 순수출(X-M)의 총수요에 좌우($Y = C + I + X - M$)
 - 소득분배와 총수요의 관계(Bhaduri & Marglin, 1990)
 - ($v \uparrow \rightarrow C \uparrow$)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시 소비지출이 증가(노동소득의 소비

- 성향이 자본소득보다 높음)
- ($v \uparrow \rightarrow I \downarrow$)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시 투자지출 감소(자본몫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투자 감소)
 - ($v \uparrow \rightarrow NX \downarrow$)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시 순수출은 감소(노동비용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 임금주도 수요체제(wage-led demand regime)와 이윤주도 수요체제(profit-led demand regime)
- 임금주도 수요체제: 공급조건이 일정할 때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시 총수요가 증가($\frac{\partial Y}{\partial v} = \frac{\partial C}{\partial v} + \frac{\partial I}{\partial v} + \frac{\partial NX}{\partial v} > 0$)
 - 이윤주도 수요체제: 공급조건이 일정할 때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시 총수요가 감소($\frac{\partial Y}{\partial v} = \frac{\partial C}{\partial v} + \frac{\partial I}{\partial v} + \frac{\partial NX}{\partial v} < 0$)
- G20 국가의 수요체제 특성

<표 3> 자본몫 1% 포인트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C/Y (A)	I/Y (B)	NX/Y (C)	(C+I+NX)/Y (D=A+B+C)	수요 체제
미국	-0.426	0.000	0.037	-0.388	임금 주도
터키	-0.491	0.000	0.283	-0.208	
이탈리아	-0.356	0.130	0.126	-0.100	
한국	-0.422	0.000	0.359	-0.063	
독일	-0.501	0.376	0.096	-0.029	
영국	-0.303	0.120	0.158	-0.025	
프랑스	-0.305	0.088	0.196	-0.021	
일본	-0.353	0.284	0.055	-0.014	
인도	-0.291	0.000	0.310	0.018	이윤 주도
아르헨티나	-0.153	0.015	0.192	0.054	
멕시코	-0.438	0.153	0.381	0.096	
캐나다	-0.326	0.182	0.266	0.122	
호주	-0.256	0.174	0.272	0.190	
남아공	-0.145	0.129	0.506	0.490	
중국	-0.412	0.000	1.986	1.574	

자료: Onaran & Galanis(2012)

- 소득분배 개선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칼도-버돈 효과(Kaldor-Verdoorn effect): 소득분배 개선에 따른

총수요 증가(설비가동율 증가)가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설비투자 증가로 거시경제의 노동생산성을 높임(Storm & Naastepad, 2009; Hein & Tarassow; Kleinknecht,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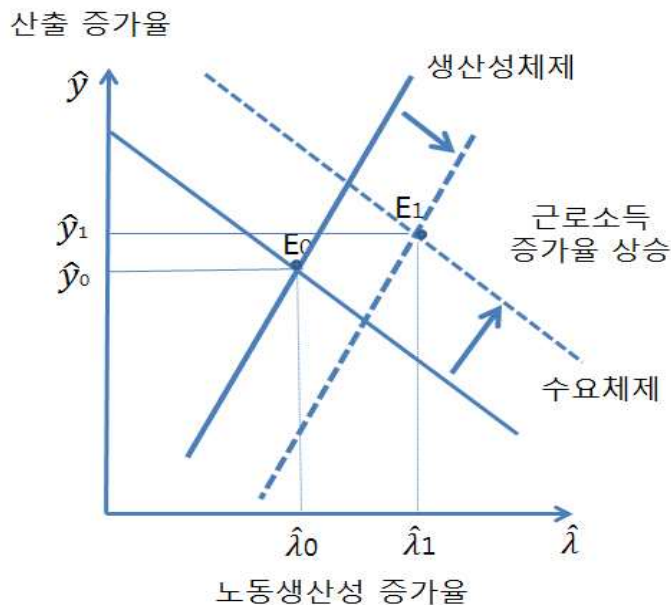
- 기술진보효과(technological progress effect): 노동소득 증가(노동소득분배율 증가)가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킴(Storm & Naastepad, 2009)

○ 소득주도 성장모델: $w \uparrow (v \uparrow) \rightarrow C \uparrow, I \uparrow \rightarrow Productivity \uparrow \rightarrow Y \uparrow$

- 소득분배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

- 수요측면: 노동소득 증가(노동소득분배율 증가) →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
- 공급측면: 노동소득 증가 → (투자 증가) → 노동생산성 증가 → 총공급 증가

<그림 10>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의 균형



□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홍장표, 2014b)

○ 배경: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

- 분배 개선(노동소득 증가)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개방소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시 수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증가로 내수시장 확대의 편익이 타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 분배개선(노동소득 증가)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
 - 노동소득 증가시 비용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 분배개선(노동소득 증가)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 노동소득 증가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어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 분석과제: 소득분배 개선이 성장률을 높이는가?

-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
 - 소상공인, 영세 소기업 종사자 800여만명(사업체 종사자의 57%)
- 임금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성 비교
 - 임금주도 성장: 임금근로자부문(자영업 부문 제외)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 분석모형(v_1 모형)
 - 소득주도 성장: 자영업부문이 포함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 분석모형(v_1 모형)

○ 한국의 수요체제

- 모형: Naastepad(2006), Storm & Naastepad(2011)
 - 소비(C): $\Delta \ln C = \alpha_0 + c_W \Delta \ln W + c_{\Pi} \Delta \ln \Pi$
 - 투자(I): $\hat{i} = \phi_r \hat{r} + \phi_{\pi} \hat{\pi} + \phi_y \hat{y}$
 - 수출(X): $\hat{x} = \chi_e \hat{e} + \chi_z \hat{z} - \chi_v \hat{v}$
 - 수요체제의 특성: $D = \frac{\partial \hat{y}}{\partial \hat{v}} = \frac{\partial \hat{y}}{\partial \hat{w}} = \frac{[\zeta(c_W - c_{\Pi}) + \psi_x \chi_v + \psi_i \phi_{\pi} \theta]}{1 - \psi_i \phi_y}$
 $(\zeta = M/Y, \theta = v/\pi, \psi_i = (I/Y)/\mu, \psi_x = (X/Y)/\mu, \mu = [c_W v - c_{\Pi}(1-v) + \zeta])$
- 분석결과(1999-2012년)
 - 소비: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노동소득의 소비탄력성 증가로 노동소득분배율 1% 증가시 민간소비 0.52~0.71% 증가
 - 투자: 총수요 1% 증가시 투자 1.65-1.69% 증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은 투자증가를 유발하지 못함(투자의 자본몫 탄력성이 음의 부호)
 - 수출: 노동비용 증가시 수출 증가율은 감소하지 않음
 - 수요체제: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 1% 포인트 증가시 총수요는 1.24%~2.19% 포인트 증가

<표 4> 수요체제 분석결과

구분	기호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노동소득의 소비탄력성	c_W	0.35***	0.36***	0.84***	0.94***
자본소득의 소비탄력성	c_Π	0.07*	0.07*	0.32***	0.23***
투자의 산출탄력성	ϕ_y	1.96***	1.98***	1.69***	1.65***
투자의 자본뭉탄력성	ϕ_π	-0.73	-0.27	-0.48	-0.45
수출의 노동비용 탄력성	χ_v	-1.22**	-0.33	0.50	0.46
수요체제	D	-0.05	0.65	1.24	2.19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 OECD국가와의 비교(Storm & Naastepad, 2011)

- 북유럽국(강한 임금주도 수요체제): 1% 포인트 노동소득 증가가 0.8% 포인트 총수요 증가
-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약한 임금주도 수요체제): 1% 포인트 노동소득 증가가 0.25% 포인트 총수요 증가.
- 한국은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강한 임금주도 수요체제’로 전환

○ 한국의 생산성체제

- 모형: Naastepad(2006), Storm & Naastepad(2011)

$$\hat{\lambda} = \beta_0 + \beta_1 \hat{y} + \beta_2 \hat{w}, \quad \beta_0, \beta_2 > 0; 0 < \beta_1 < 1$$

- 분석결과(1999~2012년)

- 총산출(총수요) 1% 증가시 노동생산성 0.46~0.67% 증가
- 노동소득 1% 증가시 노동생산성 0.06~0.11% 증가

<표 5> 생산성체제 분석결과

구분	기호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노동생산성의 산출탄력성	β_1	0.32**	0.44***	0.67***	0.46***
노동생산성의 임금탄력성	β_2	0.35***	0.23**	0.06	0.11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 OECD국가와의 비교(Storm & Naastepad, 2009; Vergeer &

Kleinknecht, 2011)

- OECD 20개국 노동생산성의 산출탄력성(β_1): 0.39~0.46
- OECD 19개국 노동생산성의 임금탄력성(β_2): 0.31~0.39
- 한국은 외환금융위기 이후 산출탄력성이 높고, 임금탄력성이 낮은 편

○ 노동소득 증가가 GDP,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표 6>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구분	계산식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산출량 효과	$\frac{\partial \hat{y}^*}{\partial \hat{w}} = \frac{(1 - \beta_2)D}{1 + \beta_1 D}$	-0.04	0.39	0.68	1.09
노동생산성 효과	$\frac{\partial \hat{\lambda}^*}{\partial \hat{w}} = \frac{\beta_2 + \beta_1 D}{1 + \beta_1 D}$	0.34	0.40	0.45	0.50
고용 효과	$\frac{\partial \hat{l}^*}{\partial \hat{w}} = \frac{\partial \hat{y}^*}{\partial \hat{w}} - \frac{\partial \hat{\lambda}^*}{\partial \hat{w}}$	-0.37	-0.01	0.22	0.58

- 분석결과(1999~2012년)

- 노동소득 1% 증가시 GDP 0.68~1.09% 증가
- 노동소득 1% 증가시 실질노동생산성 0.45~0.50% 증가
- 노동소득 1% 증가시 고용 0.22~0.58% 증가

□ 함의

○ 소득분배 개선이 기업의 투자 촉진

- 한국경제에서 투자는 수익성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총수요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음. 노동소득 증가시 내수시장 회복, 설비가동율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로 투자가 촉진됨

○ 소득분배 개선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음

- 노동소득 상승시 단기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됨.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소득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로 수출경쟁력이 회복

○ 노동소득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킴

-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 소비증가와 (소비증가에 따른 설비가동율 증가가 유발하는) 투자 증가가 기업의 노동수요

- 가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
-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는 “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명제보다는 “임금 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케인스 경제학의 명제가 타당
-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주도성장보다 파급효과가 큼
 - 소득분배개선의 GDP, 생산성, 고용 증진효과는 v_2 모형이 v_1 모형보다 우월

4. 최경환 경제팀 신성장정책의 문제점

□ 최경환 경제팀의 신성장정책

- 주요 내용
 - 내수활성화
 -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축
 - (1) 노동소득 증대세제: 평균임금 상승을 초과분배에 대한 세액공제
 - (2) 기업소득 환류세제: 인건비 투자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3)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배당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
 - 주택시장 정상화: 수도권 LTV, DTI 규제완화
 - 민생안정: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시 임금 일부 지원
 - 경제혁신: 규제개혁

□ 정책의 특징

- 구 성장정책과의 차이점
 - 소득주도성장전략 부분적 채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간다’
 - 기업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해소와 가계소득 증대
 -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을 바탕으로 한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낙수효과)과 차별화
 - 신자유주의적 성장만능주의의 한계 인식
 - 성장의 원천에 대한 인식 수정: ‘선성장-후분배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정책'으로

○ 구 성장정책과의 유사성

- 신자유주의적 성장만능주의 모델 답습
 - 규제완화, 토건사업위주의 재정지출 확장
- 부채주도성장의 지속: 가계소득수지를 악화시키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상반된 두 평가: '포퓰리즘' vs '무늬만 소득주도성장'

○ 인기영합주의

- 사내 유보금 과세는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 불분명
- 일시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 무늬만 소득주도성장: 실효성 없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이익 산출시 임금은 증가분으로 차감되지만, 배당과 투자는 지출총액이 차감됨→과세대상이 일부 대기업에 한정
- 배당소득증대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세제혜택이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에 집중

□ 최경환 경제팀 신성장정책의 문제점

○ 구 신자유주의 성장정책과 신성장정책의 절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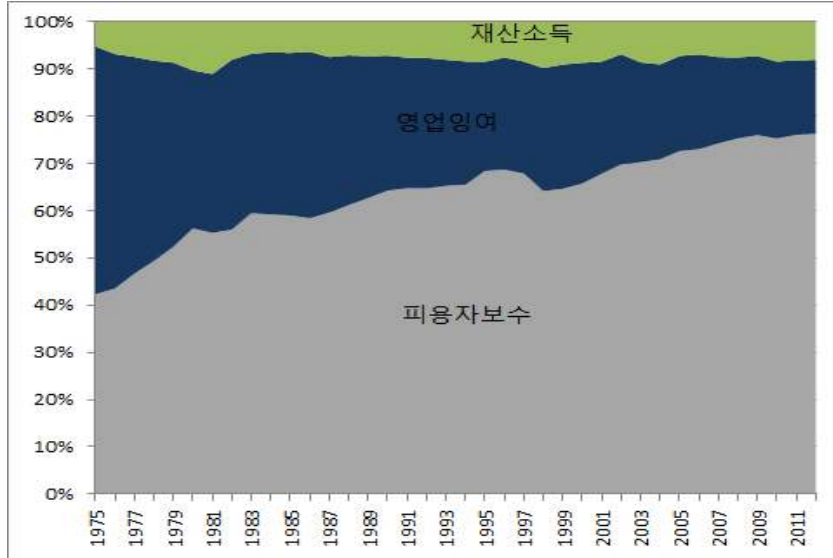
- 구 성장정책(규제완화, 토건사업위주의 재정지출)과 신성장정책(가계소득 증대)의 혼합
- 부적절한 정책조합: 소득주도성과 부채주도성장의 혼합

○ 오조준된 정책타겟

- 한국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이 높아져야 성장률이 상승하는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 문제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성장을 저해
- 따라서 가계소득 증대의 핵심은 배당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

(실질임금 상승과 자영업자 소득증대)

<그림 11> 가계소득 구성비 추이



- 가계소득 구성비(2012년): 피용자보수(76.3%)+영업잉여(15.6%)+재산소득[8.1%(배당금:1.9%)]
-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은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보수조건 개선, 자영업자 경영안정 등 근로소득 증대와 노동소득분배율 회복

5.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과제

□ 소득주도성장전략의 정책방향

○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주도성장의 혼합

- 가계소득 증진: 노동소득분배율 회복→ 내수시장 증진(+노동생산성 증가)→경제성장
- 수출과 내수의 균형: 노동소득, 가계소득 증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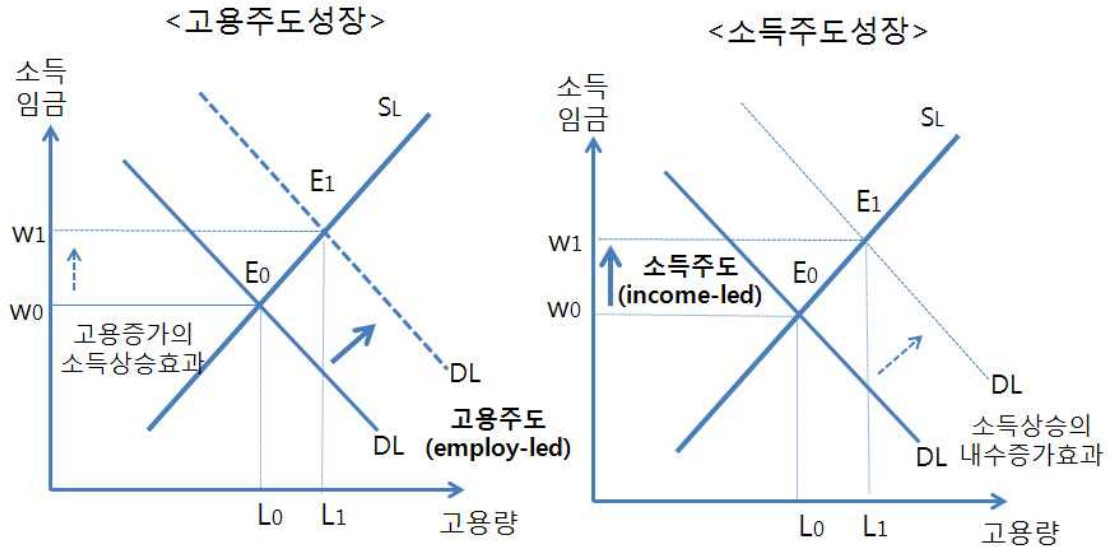
○ 정책관리지표(policy targeting index)

- 고용율, 수정노동소득분배율, 사회보장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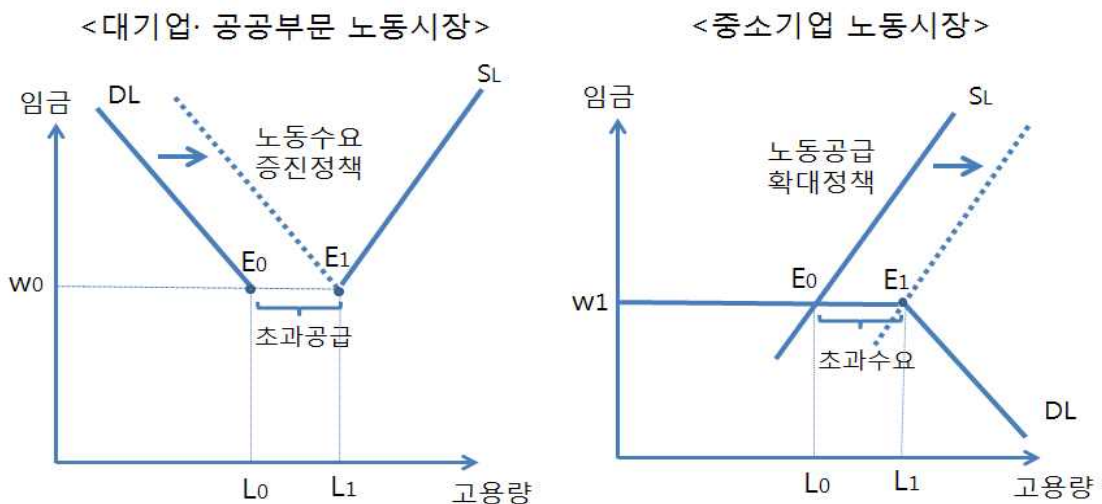
- 수정노동소득분배율(v_2)=(비용자보수+자영업자 노동소득)/총부가가치

○ 정책조합(policy mix)

- 거시 사회경제정책: 고용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혼합



- 고용주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 소득주도: 가계소득 증진, 근로빈곤층과 서민의 기본 생활소득 보장(최저임금 현실화, 소상공인 사업보호와 경영안정, 사회보장 강화 등)
- 미시 노동시장정책: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수요증대와 중소기업 노동공급확대의 혼합



-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수요증진정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업 육성, 법

정노동시간 준수와 실노동시간단축

- 중소기업 노동공급확대정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사회보험·임금보조 등

□ 소득주도 성장: 근로소득 증진

- 소득최저선(income floor)의 구성과 사회보장
 - 소득최저선의 구성
 - 최저임금 현실화
 - 지방자치단체의 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 보장
 - 기본소득
 - 사회보장
 - 청년구직자, 장기실업자 및 폐업 자영업자에 구직촉진 급여 지급,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노사정 사회협약
 -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생산성임금제
 - 전국과 지역단위에서의 노사민정 협약으로 생산성연동 임금제, 상생 임금교섭(임금격차 해소)
- 조세정책: 자본소득세 강화
 -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포착률 제고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중소기업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업보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과 골목 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 권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SSM 신규 입점 신고제를 인가제(지역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후 허가여부 결정)로 전환

□ 고용주도성장: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 대기업 실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 청년고용촉진법: 2014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년 동안 매년 3% 이상 청년 채용 의무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지자체단위 중소기업 인재양성센터 운영: 센터가 청년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희망 중소기업 취업 유도(센터가 중소기업 지원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10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전액 감면시 고용규모 5.5%증가 예상(장지연 외, 2010)

<참고문헌>

- 김병권, 2012, 『2013년 체제의 성장전략, 소득주도 성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진일, 2013,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사회경제평론』, 제42호, 한국사회경제학회, pp. 119-136
- 이상헌 2014,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43호, 한국사회경제학회, pp. 67-99
- 주상영, 2013,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경제발전학회, pp. 151-182
- 주상영 · 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제43호, 한국사회경제학회, pp. 31-65
- 홍장표 2013,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 분석”,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19(1), pp.1-34
- 홍장표 2014a,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모델의 적용 가능성”, 『사회경제평론』, 제43호, 한국사회경제학회, pp. 101-138
- 홍장표 2014b,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소 working paper
- 홍태희 2009, “한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 바두리 마글린 모형을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제12권 3호, 한국질서경제학회, pp.43-61
- 황선웅 2009,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 『동향과전망』, 제77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p. 169-201
- Bhaduri, A., & S. Marglin, 1990,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4, pp. 375-93
- Carlin, W., A. Glyn & J. van Reenen, 2001, “Export Market Performance of OECD Countri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Cost Competitiveness”, *The Economic Journal*, 111(468), pp.128-162,
- Foley, D.K. & T. R. Michl, 1999, *Growth and Distribu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unk, P. 2002. “Induced innovation revisited”, *Economica*, 69(273), pp. 155 - 171.
- Gollin, D. 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pp.458-74.
- Hein, E. & A. Tarassow, 2010, “Distribution, aggregate demand and productivity

- growth: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for six OECD countries based on a post-Kaleckian model",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4(4), pp.727-754
- ILO, 2011, "Towards a Sustainable Recovery: The Case for Wage-led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3(2), pp.161-257.
- Marquetti, A.A. 2004. "Do rising real wages increase the rate of labor-saving technical change? Some Econometric Evidence", *Metroeconomica*, 55 (4), pp. 432 - 441.
- Naastepad C.W.M. 2006, "Demand and Distribution: A Cumulative Growth Model with an Application to the Dutch Productivity Growth Slow Dow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0(3), pp. 403-434
- Onaran, Ö. & G. Galanis, 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ILO Working Paper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0
- Shapiro C. & J. E. Stiglitz, 1984, "Equilibrium Unemployment as Worker 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74, pp.433-444
- Stockhammer E. & O. Onaran, 2012, "Wage-Led Growth: Theory, Evidence, Policy",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MASS, Working Paper Series No. 300 pp.1-26
- Stockhammer, E., 2011, "Wage-led Growth: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r Research*, 3(2), pp.167-188
- Storm S. & C. Naastepad, 2011, "The productivity and investment effects of wage-led growth",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r Research*, 3(2), pp.197-217
- Storm, S. & C. Naastepad, 2009,"Labour market regulation and labour productivity growth: Evidence for 20 OECD countries 1984 - 2004", *Industrial Relations*, 48(4), pp. 629-654.
- Storm, S. & C. Naastepad, 2009, "The NAIRU, Demand and Technology", *Eastern Economic Journal*, 35, pp. 309-337
- Vergeer, R. & A. Kleinknecht, 2010 - 11. "The impact of labor market deregulation on productivity: A panel data analysis of 19 OECD countries (1960 - 2004)",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33(2), pp. 369 - 405.

<부표 1> 변수의 측정과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기호	측정방법	ADF 단위근 검정	
			1981~1997	1999~2012
노동소득분배율	v_1	임금근로자부문 노동소득분배율 ($v_1 = 1 - \pi_1$)	-5.197***	-4.644***
	v_2	자영업부문을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v_2 = 1 - \pi_2$)	-5.101***	-4.215***
실질노동생산성	$\hat{\lambda}_1$	(총부가가치-자영업자총소득)/(임금 근로자수)	-7.103***	-7.103***
	$\hat{\lambda}_2$	총부가가치/취업자수	-7.103***	-7.103***
실질임금	\hat{w}_1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6.003***	-3.263**
	\hat{w}_2	(피용자보수+ 자영업자 노동소득)/취업자수	-5.537***	-3.805***
총산출	\hat{y}	(GDP 증가율)	-3.979***	-5.753***
자본소득	$\Delta \ln II$	차분 log(자본소득), 십억원(실질)	-4.042***	-5.184***
노동소득	$\Delta \ln W$	차분 log(노동소득), 십억원(실질)	-3.851***	-3.448**
소비	$\Delta \ln C$	차분 log(민간소비), 십억원(실질)	-4.586***	-6.175***
투자	\hat{i}	(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2.841*	-6.211***
수출	\hat{x}	(실질 수출증가율)	-3.428**	-4.369***
수입	\hat{m}	(실질 수입증가율)	-2.865*	-5.437***
세계수입	\hat{m}^W	(실질 세계수입증가율)	-3.811***	-4.022***
실질이자율	\hat{r}	(회사채 3년 실질수익률 증가율)	-4.260***	-4.028***
원-달러환율	\hat{e}^{WD}	(원화/달러화 명목환율 증가율)	-2.705*	-4.060***
엔-달러환율	\hat{e}^{YD}	(엔화/달러화 명목환율 증가율)	-3.197**	-4.258***

주: 1)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수
 2) 회사채 3년 실질수익률은 86년 이전 A+, 87년 이후는 AA-
 3)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부표 2> 소비($\Delta \ln C_t$)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Delta \ln W_t$	0.207(2.39)**	0.252(2.39)**	0.950(5.44)***	1.019(6.47)***
$\Delta \ln W_{t-1}$	0.112(1.44)	0.066(0.70)	0.098(0.47)	0.068(0.34)
$\Delta \ln W_{t-2}$	0.044(0.62)	0.002(0.02)	-0.241(1.05)	-0.163(0.75)
$\Delta \ln W_{t-3}$	-0.017(0.24)	-0.028(0.30)	0.006(0.02)	0.019(0.08)
$\Delta \ln W_{t-4}$	0.026(0.42)	0.108(1.39)	0.033(0.17)	0.036(0.20)
$\Delta \ln \Pi_t$	0.009(0.22)	0.035(1.15)	0.453(6.58)***	0.378(6.27)***
$\Delta \ln \Pi_{t-1}$	0.042(0.92)	0.031(0.87)	-0.063(0.73)	-0.089(1.30)
$\Delta \ln \Pi_{t-2}$	0.026(0.66)	0.010(0.34)	-0.064(0.84)	-0.050(0.82)
$\Delta \ln \Pi_{t-3}$	-0.013(0.31)	-0.015(0.44)	0.022(0.23)	0.005(0.07)
$\Delta \ln \Pi_{t-4}$	-0.014(0.33)	0.014(0.48)	0.051(0.68)	0.050(0.82)
$CONST$	0.040(6.68)***	0.037(5.33)***	-0.016(2.60)**	-0.015(2.59)**
$\overline{R^2}$	0.453	0.383	0.767	0.786
OBS	68	68	56	56
c_W	0.351***	0.356***	0.842***	0.939***
c_Π	0.069*	0.071*	0.321***	0.229***

<부표 3> 투자증가율(\hat{i})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hat{r}_t	-0.017(3.08)***	-0.020(3.41)***	0.000(0.39)	0.000(0.22)
\hat{r}_{t-1}	-0.005(0.86)	-0.005(0.79)	-0.003(2.85)***	-0.003(3.26)***
\hat{r}_{t-2}	0.009(1.89)*	0.009(1.90)*	0.000(0.19)	-0.000(0.01)
\hat{y}_t	1.497(3.25)***	1.652(5.81)***	1.342(5.17)***	1.356(5.38)***
\hat{y}_{t-1}	0.409(0.61)	0.115(0.36)	0.158(0.30)	0.022(0.05)
\hat{y}_{t-2}	0.025(0.05)	0.186(0.17)	0.188(0.54)	0.275(0.92)
$\hat{\pi}_{t-1}$	-0.348(1.63)	-0.104(0.83)	-0.119(0.69)	-0.062(0.46)
$\hat{\pi}_{t-2}$	0.147(0.28)	0.038(0.25)	-0.121(1.25)	-0.137(1.71)*
$\hat{\pi}_{t-3}$	-0.280(1.07)	-0.186(1.20)	0.033(0.40)	-0.034(0.52)
$\hat{\pi}_{t-4}$	-0.131(0.43)	0.091(0.68)	0.036(0.41)	-0.015(0.20)
$CONST$	-0.060(1.84)*	-0.056(1.63)	-0.046(5.64)***	-0.042(5.09)***
$\overline{R^2}$	0.458	0.436	0.782	0.785
OBS	66	66	56	56
ϕ_y	1.930***	1.943***	1.687***	1.652***
ϕ_π	-0.350	-0.161	-0.171	-0.249

주: 1) $\hat{\pi}$ 는 자본소득분배율 증가율($\hat{\pi} = -(v/\pi)\hat{v}$)
 2)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

<부표 4> 수출증가율(\hat{x})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hat{e}_t^{WD}	0.180(0.93)	0.173(0.81)	0.029(0.36)	0.003(0.04)
\hat{e}_{t-1}^{WD}	0.586(2.10)**	0.511(1.75)*	0.305(3.92)***	0.260(3.53)***
\hat{e}_{t-2}^{WD}	-0.441(1.70)	-0.223(0.85)	-0.155(2.48)***	-0.129(2.21)**
\hat{e}_t^{YD}	-0.154(1.08)	-0.133(0.86)	-0.511(4.45)***	-0.501(4.45)***
\hat{e}_{t-1}^{YD}	-0.194(1.03)	-0.222(1.12)	-0.066(0.41)	-0.068(0.43)
\hat{e}_{t-2}^{YD}	-0.017(0.10)	-0.090(0.54)	0.168(1.19)	0.169(1.29)
\hat{z}_t	1.336(2.83)**	1.194(2.43)**	2.227(5.90)***	2.089(5.82)***
\hat{z}_{t-1}	-0.196(0.25)	-0.136(0.16)	-1.133(2.52)**	-1.132(2.65)**
\hat{z}_{t-2}	-0.578(1.04)	-0.453(0.78)	0.274(1.03)	0.331(1.35)
\hat{v}_t	-0.434(1.48)	-0.232(0.68)	-0.619(2.24)**	-0.766(2.85)***
\hat{v}_{t-1}	0.236(0.90)	0.339(1.12)	0.135(0.65)	0.031(0.13)
\hat{v}_{t-2}	-0.533(1.84)*	-0.256(0.74)	0.583(2.99)***	0.574(2.86)***
\hat{v}_{t-3}	-0.323(1.17)	-0.132(0.44)	0.207(1.16)	0.309(1.50)
\hat{v}_{t-4}	-0.165(0.59)	-0.054(0.17)	0.196(1.06)	0.307(1.41)
<i>CONST</i>	0.077(3.38)***	0.057(2.50)**	0.014(1.31)	0.019(2.12)**
$\overline{R^2}$	0.531	0.513	0.887	0.892
<i>OBS</i>	68	68	56	56
χ_v	-1.220(2.03)**	-0.334(0.40)	0.502(1.25)	0.455(1.12)

<부표 5> 노동생산성 증가율($\hat{\lambda}_t$) 추정결과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hat{y}_t	0.829(4.91)***	0.764(4.86)***	0.933(8.21)***	0.713(9.60)***
\hat{y}_{t-1}	0.030(0.16)	-0.069(0.56)	-0.269(1.44)	-0.173(1.59)
\hat{y}_{t-2}	-0.128(0.64)	-0.031(0.22)	0.070(0.33)	-0.014(0.12)
\hat{y}_{t-3}	-0.199(1.03)	-0.077(0.60)	-0.238(1.23)	0.097(0.81)
\hat{y}_{t-4}	-0.213(1.14)	-0.145(0.94)	0.176(1.61)	0.035(0.48)
\hat{w}_{t-1}	0.197(2.04)**	0.124(1.63)*	0.056(0.63)	0.122(1.89)*
\hat{w}_{t-2}	0.126(1.16)	0.101(1.28)	0.063(0.60)	0.058(0.74)
\hat{w}_{t-3}	0.068(0.76)	-0.007(0.11)	-0.007(0.09)	-0.024(0.37)
\hat{w}_{t-4}	-0.044(0.44)	0.007(0.11)	-0.049(0.58)	-0.043(0.57)
<i>CONST</i>	-0.000(0.00)	0.000(0.00)	-0.003(0.75)	0.003(0.96)
$\overline{R^2}$	0.563	0.636	0.792	0.839
<i>OBS</i>	68	68	56	56
β_1	0.318**	0.442***	0.672***	0.464***
β_2	0.347***	0.225**	0.063	0.112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